California 총선거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 ★ ★ ★ 상정된 법안 내용 ★ ★ ★ ★ ★

정확성 확인서

본인 Alex Padilla 는 California 주 국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수록된 법안이 2018년 11월 6일 주 전역에서 열리는 총선거에서 California 주의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것이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2018년 8월 13일 California 주 Sacramento에서 서명 날인했습니다.

Alex Padilla, 주 국무장관

유권자

권리 장전

유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유권자로 등록되었다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투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California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 18세 이상의 성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등록되어 있을 것
   - 현재 주 교도소나 연방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지 않거나, 중범죄 유죄 선고로 가석방 중이 아닐 것
   - 법원으로부터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지 않았을 것

2. **이름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잠정적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해당 투표인에게 투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투표용지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이미 줄을 선 투표자는 투표소가 닫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아무에게도 방해받거나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용지에 실수를 한 경우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항:

   투표 장소에서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장소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또는 **잠정적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 대표를 제외하고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California에 있는 **어떤 투표소에도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8.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9.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선거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귀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에게 귀하를 안내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지장을 줄 경우, 선거 공무원은 답을 제공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 또는 기만적인 선거 행위를**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주 국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웹사이트 **www.sos.ca.gov**
    - 전화 **(866) 575-1558**
    - 이메일 **elections@sos.ca.gov**

이들 중 어떠한 권리라도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주 국무장관의 무료 기밀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발의안 1

California 헌법 제 XVI조의 조항에 따라 2017~2018 정기 의회(365장, 2017년 법령)의 상원 법안 3호로 상정된 이 법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상정 법안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및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3절. 16편(54000절 이하)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31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6편. 2018년 재향 군인 및 임대 주택 채권법 (VETERANS AND AFFORDABLE HOUSING BOND ACT)

1장. 일반 조항

54000. 군사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4부 6장의 5z조(998.600 절 이하)와 함께, 이 편은 2018년 재향 군인 및 서민 주택 채권법(Veterans and Affordable Housing Bond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54002. 이 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위원회"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및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California 주택 금융청(Housing Finance Agency)을 의미한다.

(b) "위원회"란 53524절에 의거하여 창설되고 53548절 및 54014절에 따라 계속 존재하는 주택 금융위원회(Housing Finance Committee)를 의미한다.

(c) "기금"이란 54006절에 의거하여 창설된 2018년의 서민 주택 채권법(Affordable Housing Bond Act)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54004. 이 편은 2018년 11월 6일 주 전체 총선에서 유권자가 채택한 경우에만 운용된다.

2장. 2018년 서민 주택 채권법 신탁 기금 및 프로그램

54006. 이에 주 재무부에서 2018년 서민 주택 채권법 신탁 기금이 창설된다. 입법부는 (54026절에 의거해서 발행된 채권에 기근을 충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채권의 수익금을 기금에 예치해서 본 장에 설명된 주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의 이 부분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된다.

(a) 50661절에 따라 설립된 주택개보수 대부 기금(Housing Rehabilitation Loan Fund)에 15억 달러($1,500,000,000)를 예치한다. 이 기금은 2편의 6.7장(50675절 이하)의 승인을 얻은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Multifamily Housing Program)에 사용되며, 지역 중간 소득(AMI) 기준 최대 60%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을 위한 영구 주택 및 임시 임대 주택의 신축, 복구, 보전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54007절에 따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b) 입법부의 자금 책정에 따라 13편(53560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구현 프로그램(Transit-Oriented Development Implementation Program)에 의거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증가키도록 대중교통 정거장 인근의 고밀도 개발을 발전 또는 촉진시킬 목적으로 도시, 카운티, 도시 및 카운티, 대중교통 기관 및 개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53561절에 따라 설립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구현 기금(Transit-Oriented Development Implementation Fund)에 1억 5,000만 달러($150,000,000)를 예치한다. 이 기금은 본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목적과 부서 내에서 대출 및 보조금을 비롯한 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될 수도 있다. 2028년 11월 6일까지 본 하위 항목의 목적에 저해되지 않은 자금은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판단하기에 수요 감소로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편의 6.7장 (50675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 (Multifamily Housing Program)의 일반 용도로 회수되어야 한다.

(c) 기금 내에서 생성된 3억 달러($300,000,000)가 지역 계획, 주택 및 도시 내부개발 인센티브 계좌로 예치된다. 계정의 자금은 다음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도시 내부개발로 지정된 지역에서 고밀도의 서민형 혼합 소득 주택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의 신축 및 재건에 도움이 되는 도시 내부개발 인센티브 보조금을 위해 53545.13절에 의해 제정된 2007년의 도시 내부개발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Infill Incentive Grant Program)에 따라 입법부가 예산을 책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 도시 내부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공원 조성, 개발 또는 재건.

(2) 도시 내부개발과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기타 공공 인프라 비용.

(3) 도시 내부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운송 개선.

(4) 교통 완화.

이 기금은 본 프로그램의 허가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도 있다. 2028년 11월 6일까지 본 하위 항목의 목적에 저해되지 않은 자금은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판단하기에 수요 감소로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편의 6.7장 (50675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 (Multifamily Housing Program)의 일반 용도로 회수되어야 한다.

(d) 50697.1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조 주택 기금 (Self-Help Housing Fund)으로 전환될 1억 5,000만 달러($150,000,000).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 및 50697.1절에도 불구하고, 본 기금은 회계 연도와 상관 없이 주택 및 공동체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지속적으로 배당되며, 이 자금은 3편의 6.8조(51341절 이하)에 따라 설립된 주택 구매 보조 프로그램을 위해 부서에 의해 California 주택 금융청(Housing Finance Agency)으로 제공된다.

(e) 농업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주택 건설 또는 재건을 위해 또는 기존 노동자 캠프에서 농민 가족의 현재 및 잠재적인 실직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성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동식 주택 단지 또는 기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방 공공 단체, 비영리 법인,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해 보조금 또는 융자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50517.5절에 의거해서 설립된 Joe Serna, Jr. 농업 근로자 주택 보조 기금으로 3억 달러($300,000,000)를 예치한다. 이 기금은 본 프로그램의 허가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도 있다. 이 기금은 54007절에 따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2028년 11월 6일까지 본 하위 항목의 목적에 저해되지 않은 자금은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판단하기에 수요 감소로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편의 6.7장(50675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Multifamily Housing Program)의 일반 용도로 회수되어야 한다.

(f) 53545절 (a)호의 (1)항 (F)목에 따라 설립된 서민 주택 혁신 기금(Affordable Housing Innovation Fund established)에 3억 달러($300,000,000)를 예치한다. 기금은 50842.2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역 주택 신탁 기금 대응 보조금 프로그램(Local Housing Trust Fund Matching Grant Program)에 따라 서민 주택을 개발, 소유, 대여 또는 투자하는 지역 주택 신탁 기금에 대한 경쟁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 서민 주택을 신축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방법을 입증할 시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승인 하에 제공된다. 지역 주택 신탁 기금은 주택 프로그램의 용도로 달리 제한을 받지 않은 사적 기부 또는 정부 보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생된다. 이 기금은 본 프로그램의 허가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도 있다. 2028년 11월 6일까지 본 하위 항목의 목적에 저해되지 않은 자금은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판단하기에 수요 감소로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편의 6.7장 (50675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 (Multifamily Housing Program)의 일반 용도로 회수되어야 한다.

(g) 50697.1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조 주택 기금 (Self-Help Housing Fund)에 3억 달러 ($300,000,000)를 예치한다. 기금은 독신 가족 단위를 포함한 다주택 소유 단위와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자립형 주택 담보 대출 지원 프로그램과 기성 주택에 대해 직접적인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2편의 6장(50650절 이하)에 의거하여 승인된 CalHome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이 기금은 본 프로그램의 허가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도 있다. 자조 주택 기금에 예치된 금액의 최소 3,000만 달러($30,000,000)는 이동식 주택 또는 기성 주택 커뮤니티에 있는 기존 이동식 주택의 재건이나 교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또는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기금은 54007절에 따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2028년 11월 6일까지 본 하위 항목의 목적에 저해되지 않은 자금은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판단하기에 수요 감소로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편의 6.7장 (50675절 이하)에 의해 승인된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 (Multifamily Housing Program)의 일반 용도로 회수되어야 한다.

54007. (a) (1) 이 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다음 프로그램의 대상 주민을 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유자격 카운티 및 유자격 도시, 또는 유자격 카운티 및 유자격 도시 내에서 서민 주택을 개발하는 기술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A)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Multifamily Housing Program)(2편의 6.7조(제 50675절 이하)).

(B) Joe Serna, Jr. 농업 근로자 주택 보조 기금 프로그램(2편의 3.2장(50515.2절 이하)).

(C) CalHome 프로그램(2편의 6장(50650절 이하)).

(2) 본 조항에 따른 기술 지원은 기술 지원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54006절에 의거하여 할당된 채권 수익을 사용해서 제공된다.

(3)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본 절에 의거하여 기술 지원에 총 36만 달러($360,000)를 초과해서 제공하지 않으며, 유자격 카운티 또는 유자격 도시는 매년 기술 지원으로 3만 달러($30,000)를 초과해서 수령하지 않는다.

(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 "유자격 도시"란 카운티 내에서 위치하고 거주 인구가 15만명 이하인 도시를 의미한다.

(2) "유자격 카운티"란 거주 인구가 15만명 이하인 카운티를 의미한다.

(3) "기술 지원"에는 서민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원조 및 환경 검토와 교부금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관리 비용에 대한 상환이 포함된다.

54008. (a) 입법부는 수시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장에 의거하여 기금이 할당되거나 할당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b) 입법부는 본 장에서 이 편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된 채권의 수익금을 본 장에 의거하여 할당될 프로그램에 재할당할 수 있도록 해당 주에서 서민 주택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본 장을 개정할 수 있다.

54009. 채권 수익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재정 지원을 할당할 때 노동법(Labor Code) 2부 7편의 1장 (1720절 이하)의 목적을 위한 "공공 사업"인 프로젝트와 노사 관계 담당관(Director of Industrial

1

Relations)이 결정한 일당 급여의 일반 우세율로 지급을 받는 모든 건설 노동자가 참여하는 기타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제공한다.

3장. 재무 조항

54010. 54026절에 따라 발행된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총 30억 달러($3,000,000,000)에 상당하는 채권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거나 발행된 목적을 수행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 16724.5절에 의거하여 일반 의무 채권 회전 기금(General Obligation Bond Expense Revolving Fund)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발행, 판매 및 인도된 모든 공인 채권은 주정부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일반 의무를 구성하며 주정부는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만기시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모두를 정시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54012. 본 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정부법 *16727* 절의 *(a)* 및 *(b)* 조항을 제외하고 주정부 일반 책임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 (정부법 타이틀 *2, 4*부 *3*편의 *4*장*(16720*절 이하*))*에 규정된 대로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되며, *54028절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해당 법의 모든 조항은 본 채권 및 본 편에 적용되며 본 편에 통합되어 본 편의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간주된다.*

54014. (a)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 의거하여, 이 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본 위원회는 계속 존속한다. 이 편의 목적에 따라 주택 금융 위원회(Housing Finance Committee)는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b)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지침은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일반적인 적용 기준을 구성하지 않으며, 정부법 (Government Code) 타이틀 2, 3부 1편의 3.5장 (11340절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의 목적에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위원회로 지정되며 California 주택 금융청(Housing Finance Agency)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위원회"이다.

54016. 이 편의 목적상 위원회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채권 발행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을 결정해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 발행 및 판매할 채권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채권은 반드시 단일 시점에 판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 연방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4018. 주의 보통 세입 외에, 매년 다른 주 세입 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매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 추가적인 합계 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주 세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책임 있는 공무원의 의무이다.

54020. 정부법 13340절에도 불구하고, 이 호의 목적상 다음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로써 주 재무국의 일반 기금에서 전용된다.

(a)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되어야 함에 따라, 이 편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총액.

(b) 회계 년도와 관계없이 전용된, 54024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총액.

54022. 위원회는 이 편의 목적상 정부법 (Government Code) 16312절에 따라 공동자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 융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결의하여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에서, 54026절에 따라 승인된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이 편의 목적에 따라, 이 절에 따라 대출되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과 54024절에 따른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되어 아직 일반 기금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된 금액은 이 호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54024. 이 편을 실행할 목적으로 재무이사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가 결의하여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에서, 54026절에 따라 승인된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이 편의 목적에 따라, 이 절에 따라 대출되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과 54022절에 따른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되어 아직 일반 기금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이 편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절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자금은 매각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금에 예치되었을 채권 매각으로부터 받은 지금에서 공동자금 투자 계정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54026. 채권은 주 일반채무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타이틀 2의 4부 3편 4장 6조(16780절 이하)에 따라 환불될 수 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본 법안의 승인은 기존 발행된 차환 채권을 포함하여 이 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차환을 위해 발행된 차환 채권의 승인이다. 이 절이 승인한 것과 같이 차환 채권의 수익금으로 차환된 모든 채권은, 법률에 의해 허락된 정도까지 그리고 때때로 수정되는 결의안에 명시된 정도까지, 법률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채권 차환을 승인할 수 있다.

54028.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만기일은 해당 채권 발행일로부터 3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 시리즈의 만기일은 각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54030. 입법부는 이 편에서 승인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은 이 용어가 California 헌법 XIII B조에서 사용된 "세금의 수익금"이 아니므로, 이런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가 부과하는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54032. 정부법 타이틀 2의 4호, 2편 3장 4조 (16470절 이하)에 의거하여 승인된 채권의 매각에서 얻어진 수익과 관련된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은 투자 수익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유지하고, 연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환급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당 수익에 대한 지불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면세 채권의 비과세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 자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따라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수익금의 사용 및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54034. 이 편에 따라 판매된 채권에 대한 액면초과액과 발생 이자에서 생긴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지불을 위한 대금으로 일반 기금에 이체될 수 있어야 한다. 단, 액면초과액에서 생긴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기 전에 채권 비용 지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절. 5z조(998.600절 이하)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Military and Veterans Code) 4부 6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5z조. 2018년 재향 군인 및 서민 주택 채권법 (Veterans and Affordable Housing Bond Act)

998.600.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31부 16편(54000 절 이하)과 함께, 이 조항은 2018년 재향 군인 및 임대 주택 채권법(Veterans and Affordable Housing Bond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998.601. (a)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수시로 개정되는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 (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정부법 타이틀 2, 4부 3편 4장(16720절 이하))은 본 조항에 의해 발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의 목적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채권에 관한 조항을 제공하며, 해당 법의 조항은 본 조항의 본문이었던 것처럼 포함된다. "여기에서" 본 조항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본 조항과 해당 법률을 참조한다.

1

(b)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의 목적상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위원회로 지정됩니다.

998.602.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위원회"는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의미한다.

(b) "채권"은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의 조항을 채택한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재향군인 채권, 주정부 일반 채권 채권을 의미한다.

(c) "채권법"이라 함은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의 발행을 허가하고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을 참고로 채택하는 본 조항을 의미한다.

(d) "위원회"는 991절에 의해 설립된 1943년 재향군인 재정 위원회(Veterans Finance Committee)를 의미한다.

(e) "기금"이라 함은 988절에 의해 설립된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건축 기금(Veterans' Farm and Home Building Fund)을 의미한다.

(f) "지불 기금"이라 함은 988.6절에 따라 설립된 재향군인 채권 지불 기금을 의미한다.

998.603. 1974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매입법(Veterans' Farm and Home Purchase Act)(3.1조(987.50절 이하))에 따라 재향군인에게 농장 및 주택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모든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보충을 위해, 위원회는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본 법안에서 제공된 방식으로 총액 10억 달러($1,0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California 주정부 부채 또는 채무, 책임 또는 채무를 생성할 수 있다.

998.604. (a) 본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발행, 판매 및 인도된 모든 공인 채권은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합법적 구속력 있는 일반 의무를 구성하며 California 주는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모두를 정시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b) 주의 보통 세입 외에, 매년 다른 주 세입 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매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을 징수해야 하며, 주 세입 징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 있는 공무원은 그 추가적인 합계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c) 각 회계 연도의 채권에 대한 부채 청산을 위한 정부법(Government Code) 16676절에 따라 자금이 송금되는 날짜에 지불해야 할 부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에 있는 자금으로 채무 상환을 위한 지불 기금에 송금되어야 한다. 송금일에 송금된 금액이 만기된 채무보다 적을 경우, 미지불 잔액은 반기마다 채권에 부과되는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송금일로부터 지불 날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가능한 빨리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상반되는 다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모든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매입 채권법에 적용된다. 본 조항은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 소유자에게 기금, 지불 기금 또는 이에 포함된 자금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 세목의 목적상 "채무 상환"이라 함은 채권 시리즈와 관련하여 원금(만기, 상환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금액), 액면초과액(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 날짜의 지불 이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세목은 모든 채권 수익금에서 지급되는 채무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98.605. 본 조항의 목적상 일반 기금에서 다음 사항에 모두의 합계에 상응하는 액수의 돈을 충당한다.

(a)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되어야 함에 따라, 이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총액.

(b)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998.606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액.

998.606. 본 조항의 목적상, 재무 이사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로부터 매각을 승인 받은 비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합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 매각에서 얻은 모든 자금은 채권 매각으로부터 받은 지금에서 공동자금 투자 계정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998.607. 위원회는 본 조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법(Government Code) 16312절에 따라 공동자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 융자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본 조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 승인을 받은 위원회의 미결 채권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출된 금액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998.608.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지사가 승인한 계획 및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기준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여부와, 발생하는 경우 발행 및 매각될 채권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계획 및 프로젝트를 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은 반드시 단일 시점에 발행 또는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998.609. (a) 본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채권이 미결된 경우, 보훈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은 회계 연도가 끝날 때마다 농장 및 주택 구입부(Division of Farm and Home Purchases)의 재정 상황에 대한 조사서를 부서 운영 계획서와 함께 요구해서 독립적인 공인 회계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인 회계사는 각 조사 및 예상 결과를 보훈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California 보훈부, 상원 및 하원에서 재향 군인 문제를 다루는 해당 정책위원회,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b) 농장 및 주택 구입부(Division of Farm and Home Purchases)는 재무국장이 예치한 자금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공인 회계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998.610. (a) 위원회는 재무국장이 지정한 시간에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국장이 매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 위원회가 채권의 효과적인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위원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16754절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할인은 액면가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98.611. 본 규정에 명시된 채권 매각으로 실현된 첫 번째 자금 중에서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상 지출된 모든 지출 금액이 정부 16724.5절에 의해 수립된 일반 보증 채권 회전 자금(General Obligation Bond Expense Revolving Fund)에 재예치되며, 이 기금은 추가 채권 매각이 이루어질 때마다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될 수 있다.

998.612. 본 조항에 따라 발행 및 매각된 채권은 주 일반채무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타이틀 2의 4부 3편 4장 6조(16780절 이하)에 따라 재예치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채권 발행에 대한 투표자들의 승인은 원래 발행된 채권이나 이전에 발행된 차환 채권의 환불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 승인을 포함해야 한다.

998.613. 채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총 소득에서 제외 가능하거나, 연방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 자문 의견을 포함하는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지정된 조건에 따라 재무국장은 그런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하여 연방 법률 하의 다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하다면, 투자된 채권 원리금과 그런 원리금에 대한 투자 이익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제정할 수 있고,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그런 원리금이나 수익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지휘하거나 투자와 그런 채권 원리금의 사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98.614. 입법부는 이 편에서 승인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은 이 용어가 California 헌법 XIII B조에서 사용된 "세금의 수익금"이 아니므로, 이런 수익금의 지출은 XIIIB 조가 부과하는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2

발의안 2

California 헌법 제 II조의 10절에 따라 2017–2018 정기 의회(41장, 2018년 법령)의 의회 법안 1827 호로 상정된 이 법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에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제안된 조항은 ~~카로줄~~로 표시되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새로 제안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상정된 법안

1절. 유권자들은 주택이 정신 질환에서 안정과 회복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정신 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한 개선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004년 11월 2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상정된 법안 63으로 유권자들이 발의한 정신건강지침법(Mental Health Services Act)은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심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 또는 만성 노숙자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지원 주택의 취득, 설계, 건축, 재활 또는 보전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5부 3.9조(5849.1절 이하)에 따라 설립된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o Place Like Home)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2절. 본 조항인 1절과 3~7절(포함)은 2018년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법(No Place Like Home Act)으로 알려져야 한다.

3절.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5849.35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5849.35. (a) 기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 5849.11절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가 기관에 제공한 연례 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하여, 위원회 및 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과 상의한다.

(2) 대상 인구에 대한 영구 지원 주택과 관련하여 5849.7, 5849.8 및 5849.9절에 설명된 서비스를 부서가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기관이 자금을 지불하고 *5890절 (f)호 (1)항에 따라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 내에 조성된 보조 주택 프로그램 하위계좌(Supportive Housing Program Subaccount)에 예치한 자금에서 부서로 지불*하는 하나 이상의 *단년 또는 다년* 계약을 체결한다. 이 항에 의거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관의 집행 이사는 계약서 사본을 실질적인 최종 형태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계약을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3) 기관은 매년 6월 15일 및 12월 15일과 그 전에 (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의거하여 5890 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후 6개월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관리자(Controller)에게 증명해야 한다.

(b) 부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 대상 인구에 대한 영구 지원 주택과 관련하여 5849.7, 5849.8 및 5849.9절에 설명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기관이 자금을 지불하고 *5890절 (f)호 (1)항에 따라 보조 주택 프로그램 하위계좌 (Supportive Housing Program Subaccount)에 예치한 자금에서 부서로 지불*하는 하나 이상의 *단년 또는 다년* 계약을 체결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부서가 받은 지불금은 다른 할당 또는 분배가 진행되기 전에 정부법(Government Code) 15463절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정부법(Government Code) 15463절에 따라 기관이 발행한 특정재원채권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 기관과 하나 이상의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 부서는 채권을 교환, 환불 또는 회수하기 위한 차환 대출을 제외하고, 이 대출금의 수익을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대출 약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부서의 의무는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에서만 지불 가능한 제한적 의무이다.

(3) 부서는 (2)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대출 계약에 따른 원금, 보험료 및 이자 지급을 위해 기관 또는 채권 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1)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서비스 계약에 따른 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질권하고 양도할 수 있다.

(c)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선언한다.

(1) (a)호 (2)항 및 (b)호 (1)항에 의해 따라 승인된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기관이 해당 부서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2) (a)호 (2)항 및 (b)호 (1)항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 계약에 의거하여 기관이 해당 부서에 제공한 서비스 계약 및 지불과 (b)호 (2)항에 따라 승인된 대출 계약에 의거하여 부서가 기관에 대해 실행한 대출 계약 및 대출금 상환은 주 또는 정치적 하부 조직의 부채 또는 채무, 또는 신념 및 신용에 대한 질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단, 2018년 11월 6일 주총선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d) 주정부는 정부법 15463절에 의거하여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채권자에게 채권이 미지불 상태로 남아 있는 기간에는 본 절의 조항, 5890절 (f)호 *(1)항*, 또는 5891절 (b)호를 이러한 채권자의 이익에 위배되는 어떤한 방법으로든 변경, 수정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기관은 채권을 관할하는 결의, 증서 또는 기타 문서에 본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e) 본 조항에 의거한 계약은 California 환경 품질 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3부(21000절 이하))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그러한 계약의 집행에 적용되는 다른 법의 요건을 따르지 않으며 준수할 필요가 없다.

(f)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2부 2편 2장(10290절 이하)은 본 조항에 따라 기관과 부서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절.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5849.4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5849.4. (a)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o Place Like Home) 기금은 주 재무국 내에서 생성되며 정부법의 13340절에도 불구하고 본 편의 목적상 부서, 기관 및 재무국장에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필요에 따라 기금 내에 계좌 및 하위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금에 예치된 금액의 최대 5%는 이 편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b) 다음과 같이 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1) 정부법(Government Code) 15463절 (b)호에 따라 기관에 의한 채권 발행으로 인해 부서에서 대출금을 수령한 자금.

(2) 일반 기금 또는 기타 기금에서 기금으로의 책정 또는 이전.

~~(2)~~

(3)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한 기타 연방 또는 주 보조금이나 개인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4) 이자 지급, 대출 상환 또는 기타 자금 회수.

5절. 5849.15절은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5849.15. 유권자들은 다음 모든 조항이 2004년 11월 2일 주총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제정된 발의안 63에 부합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비준하고 California 헌법 XVI조 1절의 목적상 다음 조항을 모두 승인한다.

(a) 5830, 5845, 5847, 5848, 5897 및 5899 절을 개정하고 이 편을 추가한 2016년 법령의 43장.

(b) 정부법(Government Code)에 15463절을 추가한 2016년 법령의 322장과 정부법의 개정된 55849.1, 5849.2, 5849.3, 5849.4, 5849.5, 5849.7, 5849.8, 5849.9, 5849.11, 5849.14, 5890 및 5891절, 추가된 5849.35절, 그리고 법령에서 폐지하고 추가된 5849.13절.

(c) (a) 및 (b)항에서 언급된 조항 중 수정된 2017년 법령의 561장 조항.

2

(d)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에 따라 5849.35, 5849.4 및 5890절에 대한 개정.

(e)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o Place Like Home Program)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구 지원 주택의 자금 지원 목적과 정부법 15463절 (b)호에 명시된 관련 목적상 20억 달러($2,000,000,000)를 초과하지 금액의 California 건강 시설 금융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 채권 발행, 정부법 15463절 (c)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권의 교환, 환불 또는 회수하기 위한 목적의 채권 발행, 그리고 (a)~(d)호에 있는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채권을 발행, 보증 및 상환하는 프로세스.

6절.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5890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5890. (a) 이로써 주 재무국은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을 창설한다. 기금은 주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정부법 13340절에도 불구하고, 5892절 (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의 다른 조항에서 지정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회계년도에 상관 없이 기금의 모든 자금은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1) *요양법(Care Act) 성인 및 고령자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Adult and Older Adult Mental Health System)의 3부(5800절 이하).*

(2) 혁신 프로그램(Innovative Programs) 3.2부(5830절 이하).

(3) 예방 및 조기 중재 프로그램(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3.6부(5840절 이하).

(4)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프로그램(No Place Like Home Program) 3.9부(5849.1절 이하).

(5) 아동 정신 건강 서비스 법(Children's Mental Health Services Act) 4부(5850절 이하).

(b) 이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을 조성하는 다른 조항 또는 기금을 지원 받은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평등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374.72절 및 보험법(Insurance Code) 10144.5절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플랜 및 장애 보험 정책에 대한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이러한 플랜 및 보험 정책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리 건강 부서(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또는 보험 부서(Department of Insurance)의 감독 의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 이 법안은 주 보건 서비스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기존 권한이나 책임을 수정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 주 보건 서비스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연방 기금의 유용성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위한 어린이, 성인 및 노인의 참여 자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해당 연방 Medicaid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e) 본 부의 3편(5800절 이하) 및 4편(5850절 이하)에 따른 서비스 비용 분담금은 다른 공적 자금 지원 정신 건강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지불 능력 확인을 위한 표준 방법(Uniform Method of Determining Ability to Pay)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 이러한 표준 방법이 공동 지불금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지 않는 조건이며 이 경우에는 다른 정신 건강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은 3편(5800절 이하) 및 4편(5850절 이하)에 의거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f) *(1)*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보조 주택 프로그램 보조 계정(Supportive Housing Program Subaccount)이 제정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에도 불구하고, 회계 연도에 상관없이 하위 회계 장부의 모든 자금은 5849.35절에 따라 맺어진 서비스 계약에 의거한 재정적인 책임을 충족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되어 California 건강 시설 금융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에 책정된다. 본 조항의 다른 조항을 포함하여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이전 또는 지출하기 전에, 5849.35절 (a)호 (3)항에 따라 California 건강 시설 금융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이 승인한 금액을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보조 주택 프로그램 보조 계정(Supportive Housing Program Subaccount)으로 이전하되, 총액이 1억 4,000만 달러($140,00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특정 월에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의 금액이 하위 계좌로 이체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하위 계좌의 금액이 California 건강 시설 금융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이 승인한 금액을 완전히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액은 *이전 조항에 요구된 이전 금액과 함께 관리자(Controller)에 의해* 차기 월로 이월된다. 보조 주택 프로그램 보조 계정(Supportive Housing Program Subaccount)에 있는 금액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6310절 또는 16381절에 의거하여 일반 기금에 대출될 수 없다.

(2) 정부법(Government Code) 15463절에 의거하여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입법부는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 기금에서 연간 최대 1억 4,000만 달러($140,000,000)를 보조 주택 프로그램 보조 계정(Supportive Housing Program Subaccount)으로 책정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이전하기 위해 책정되고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o Place Like Home)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California 보건 시설 금융 기관이 정부법(Government Code) 15463절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할 수 있는 승인된 미발행 채권 금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하위 계좌의 모든 자금은 3.9편(5849.1절 이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기금(No Place Like Home Fund)으로 이전하기 위해 회계 연도와 상관없이 보존되고 책정된다. 다음 달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이전 또는 지출하기 전에 (1)호의 목적상 기금에서 이전한 후, 관리자는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에서 책정된 금액을 입법부에 의한 예산 책정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서 다음 12개월간 동등한 금액으로 본 조항에 따라 하위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특정 월에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Mental Health Services Fund)의 금액이 하위 계좌로 이체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하위 계좌의 금액이 본 조항에 따라 이전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을 완전히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액은 이전 조항에 요구된 이전 금액과 함께 관리자에 의해 차기 월로 이월된다.

(3) (1)항 및 (2)항에 기술된 송금의 총액은 1년에 1억 4,000만 달러($14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4) 정부법(Government Code) 15463절에 따라 승인된 채권이 발행되면 (2)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7절. 이 법의 조항은 개정안이 법안의 의도와 충분히 일치하는 한, 주 의회의 2/3 찬성표로 개정될 수 있다.

발의안 3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및 군사 및 수자원법(Water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한다.

1절. 38부(86000절 이하)가 수자원법(Water Code)에 추가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호. 주 급수 인프라, 물 운송, 생태계 및 유역 보호 및 복원, 2018년 식수 보호법

1장. 짧은 제목

86000. 이 부는 공고되어야 하며 2018년 수도 및 수질 개선법(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

2장. 발견 및 선언

86001. 주민들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우리가 거주하는 주는 매우 건조하며, 하이테크, 농업 및 도시 경제는 지속적인 고품질의 물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물 소비를 줄이며, 새롭고 다양한 물 공급처를 제공하고, 상수원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의 주요 환경적 용도를 보호함으로써, 본 발의안은 California의 경제 및 환경 엔진이 물 부족으로 인해 탈선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b) 최근 California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가뭄으로 현재 물 공급의 장기적인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가뭄을 통해 기존의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고, 상수원에서 최종 사용자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물 시스템을 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c) California의 수자원 상황으로 인해 주민, 농업 및 환경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California 수자원 계획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는 폐기물을 줄이고,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의 공급량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것이다. 또한, 이 부는 홍수에 대해 커뮤니티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d) 이 부는 도시 배수 및 강우 유출, 지하수 및 염수 탈염, 지하수 저장, 수자원 재활용, 수자원 보존, 유역 관리, 복원, 개선 및 보호 등을 비롯하여, 변화하는 기후에서 California의 현재 및 미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 및 보전 방법을 구현할 것이다.

(e) 이 부가 제공하는 수도 및 수질의 다양한 투자는 기관 및 보조금 수령자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의 효과를 2배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f) 이 부를 시행하는 기관은 비용 효율적인 프로젝트와 가장 내구성이 높고 가장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다. 기금은 California 수자원 계획의 이행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제공될 것이며, 그 목표는 California 수자원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California 공동체가 가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g)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은 안전하고 청결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접근 가능한 식수를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106.3절을 준수함으로써, 이 부에 의거하여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섹션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h) 이 부는 국가의 모든 지역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금 분배를 제공한다.

(i) 이 부는 최근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및 장기간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며, 커뮤니티가 미래의 가뭄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가뭄으로 인해 주민, 농업 및 환경에 대한 물 공급을 줄어든다. 이 부는 주민, 농업 및 환경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기후에 California가 탄력적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j) 유역의 상태와 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커뮤니티는 물 공급에 대해 자립성을 가질 것이며 지역의 환경 질이 향상될 것이다.

(k) 노란별엉겅퀴, 거대 갈대(물대), 위성류 등과 같은 침입성 식물을 제거함으로써, 물 공급이 증가하고 어류와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개선될 것이다.

(l) 홍수는 커뮤니티와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우리는 물을 확보해서 커뮤니티, 농장, 지하수 유역을 재충전함으로써 홍수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유역과 범람원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홍수 피해 방지, 물고기와 야생 동물 서식지 개선, 상수도에서 오염 물질 제거, 지하수 향상, 대수층 개선 및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범람원의 관리를 개선하면 물 공급 목적으로 상수도원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

(m) 극심한 화재 조건은 심각한 침식, 수질 감소 및 수자원 기반 시설에 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산불이 물 공급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물 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림과 유역을 관리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n) 이 부는 다음과 같이 California의 인적 및 환경적 물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1) 수자원 보전, 지하수 및 기타 내륙 염수의 담수화, 우수 관리, 폐수 재활용, 그리고 유사한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자원 및 수질 개선.

(2) 유출수 및 지하수 재충전의 패턴, 수량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 (Sierra Nevada Watershed Improvement Program)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산림 및 목장 유역 관리의 개선. 토양 상태를 개선하면 지하수를 더 많이 함유하고 물 유출 속도를 조항할 수 있는 토양 능력이 향상된다.

(3)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6부의 2.74편 (10720절 이하))의 신속한 시행을 비롯한 지표수 관리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결에 대한 개선된 인식.

(4) 퍼시픽 플라이웨이(Pacific Flyway)의 복원 및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서식지 관리를 포함한 어류 및 야생 생물을 위한 물 공급.

(5) 물 운반 능력의 증가로 지하수 재충전이 더 빨라지고 가뭄 기간에 용수의 운반 및 이용 개선.

(o) 주 수자원 관리국(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및 기타 여러 기관은 어류 서식지 개선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것이 California 주의 어류 개체 복원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개체군 복원의 흐름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했다. 어류 서식지 개선을 위한 자금 제공은 어류 복원의 적절한 흐름을 위한 필수적인 보완 요소이다.

(p) California에서 역사적인 습지의 95%가 손실되었다. 이러한 습지는 철새와 다른 새, 물고기, 포유동물,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방대한 수의 식물 종에 먹이감, 물, 보호처를 제공한다. 습지가 없다면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날 습지 때문에 더 많은 생물이 생존하고 있다. 이 부는 번성하는 동식물을 도울 수 있도록 California의 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현재 습지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결합한다.

(q) 이 부의 시행을 통해 지방 정부에 실질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정부 운영 비용을 연간 수억 달러 절감시킬 것이다. 이 부는 지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대신하는 기금을 제공하여 다음 분야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1) 안전한 음용수. 주정부의 직접 및 대응 기금은 음용수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것이다.

(2) 폐수 재활용. 주정부 기금은 이러한 플랜트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방 정부를 위한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을 줄인다. 지방 정부의 자본 비용을 줄임으로써 플랜트의 물 비용도 절감된다. 폐수 재활용 플랜트를 구현하면 비싼 대체 수자원 공급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자본 및 운영 비용이 추가로 절감된다.

(3) 지하수 탈염. 주정부 기금은 이러한 플랜트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방 정부를 위한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을 줄인다. 지방 정부의 자본 비용을 줄임으로써 플랜트의 물 비용도 절감된다. 지하수 재활용 플랜트를 구현하면 비싼 대체 수자원 공급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자본 및 운영 비용이 추가로 절감된다.

(4) 수자원 보전. 주정부 기금은 이러한 플랜트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방 정부의 비용을 절감한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한 물 수요 감소를 통해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물 공급에 필요한 고비용 자본 지출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5) 홍수 조절 저수지의 보수. 주정부 기금은 이러한 플랜트를 위해 지방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을 줄인다.

(6)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국 기금(San Francisco Bay Restoration Authority Funds). 샌프란시스코 만 주변의 홍수를 예방하는 습지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투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홍수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것은 다른 홍수 조절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시설 수리를 위해 지방 정부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홍수 피해를 줄일 것이다.

(7) 우수 자금 조달. 주정부 수자원 관리국(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과 여러 지역의 수질 관리 위원회가 적용하는 규정 때문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다양한 자본 지출 프로젝트 건설이 필요하게 된다. 이 방식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면 이러한 플랜트를 위해 지방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8) 어업 복원. 이 부는 어업 복원을 위해 수억 달러를 제공한다. 지역 수자원 기관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는 주정부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또한, 어류 개체군의 증가로 인해 지역 수자원이 개선되어 지방 정부가 수억 또는 심지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체 용수 공급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9) 만 지역의 신뢰성.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수자원 구역은 수자원을 서로 연결하여 가뭄 수자원 신뢰도 및 기타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 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2억 5,000만 달러($250,000,000)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Friant Kern 운하 수리. 지하수 과다 양수로 Friant Kern 운하가 침강했다. 운하의 수리에 주정부 기금이 사용됨으로써 운하를 지방 수역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이 면제되면 해당 지방 수역에서 지불해야 할 연간 수천만 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11) 오로빌 댐 수리. 오로빌 댐 수리 비용은 연방 비상 관리 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또는 미국 육군 공병대(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를 통해 연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연방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 기관인 주정부 수자원 개발 시스템(Stat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계약자가 이러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 이 부는 2억 달러($200,000,000)의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이다. 이자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r) 26.7부(79700절 이하)에 따라 저장 프로젝트에 상당한 기금이 계속 할당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수여하는 California 수자원 위원회(California Water Commission)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본 법안은 특정 저장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3장. 정의

86002. 문맥에 달리 요구되지 않는 이상, 본 절에 명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부의 구성을 관리한다.

(a) "보존"은 회복, 안정화, 복원, 물 절약, 개발, 재건 또는 이런 활동의 조합을 의미한다.

(b) "사유지에서의 보존 조치"는 야생 생물과 그 서식지가 직면한 환경 변화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 자원의 유연한 관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함께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와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열심히 관리하면, 활력 있는 생태계가 복원되고 야생 생물 개체 수가 늘어나는 사유지의 서식지 조건을 조성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c) "삼각지"란 12220절에 정의된 새크라멘토-산 호아킨 삼각지(Sacramento-San Joaquin Delta)를 의미한다.

(d) "부서"는 수자원 관리국(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을 의미한다.

(e) "담수화"란 오염된 지하수 또는 염분을 함유한 기타 내륙 수원(염수 포함)에서 소금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f) "저소득 커뮤니티"란 79505.5절 (a)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개정될 수 있다.

(g) "건기 유출수"는 10561.5절과 같이 정의된다.

(h) "경제적 낙후 지역"은 79702절 (k)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개정될 수 있다.

(i) "재정 위원회"란 86182절에 따라 조직된 급수 신뢰성 및 가뭄 보호 재정 위원회(Water Supply Reliability and Drought Protection Finance Committee)를 의미한다.

(j) "기금"이란 86169절에 따라 조직된 2018년 급수 신뢰성 및 가뭄 보호 기금(Water Supply

Reliability and Drought Protection Fund)을 의미한다.

(k)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이란 10721절 (j)호에 정의된 기관을 의미한다.

(l)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은 6부 2.2편 (10530절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정 지리적 구역에 대한 종합 계획을 의미하며 해당 부분은 수정될 수 있다.

(m) "침입성 식물"이란 토착 식물을 이주시키거나, 토착 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거나, 농업 또는 목장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거나,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화재 위험을 유발하거나, 이주시키는 식물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업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무시할만한 California 외래종 육생 또는 수생 식물을 의미한다.

(n) "다차원 프로젝트"란 홍수 관리, 급수, 수질 개선, 환경 개선, 레크리에이션, 에너지 보존, 기후 변화 가스 방출 감소, 물고기 및 야생 동물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o) "비영리 조직"이란 주정부 및 연방 정부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California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을 갖추고 내국세법의 501(c)(3)절 또는 501(c)(6)절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 조직을 의미한다.

(p) "보호"란 사람, 재산 또는 천연 자원에 대한 위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나 재산 또는 천연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또는 향유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의미하고 취득, 개발, 복원, 보존, 보존을 포함하여, 해석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75005절 (i)호에 정의되어 있다.

(q) "공립 교육 기관"은 주정부 기관 또는 부서, 특별구, 공동 권한 기관, 시, 군, 시 및 군 또는 기타 주정부의 정치적 하부 조직을 의미한다.

(r) "공공 용수 시스템"은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16275절 (h)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10617절에 정의된 개인 소유의 상수도 업체를 포함하여 지역, 자치구 및 지구 상수도 공급 업체를 의미한다.

(s) "복원"은 물리적 구조물이나 시설의 개선을 의미하며, 자연 시스템과 풍경 특징의 경우, 침식 통제, 퇴적물 관리, 침입 종의 통제 및 제거, 계획된 소각, 연료 위험 저감, 기존의 자연 종이나 복원된 자연 종에 대한 위협 방어, 초원, 습지, 강변 및 개울 복원, 및 기타 식물 및 야생 동물 서식지 개선, 토지의 자연 시스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타 식물 및 야생 생물 서식지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목적의 성공적인 실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계획, 모니터링,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

(t)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는 주의 중간 가계 소득이 주 전체 평균의 60% 미만인 커뮤니티를 말한다.

(u)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Sierra Nevada Watershed Improvement Program)"은 시에라 네바다 지역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산림 복구의 속도와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California의 주요 유역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조정되고 통합된 공동 프로그램이다.

(v) "주정부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국(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을 의미한다.

(w)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은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3편 4장(16720절 이하)에 해당하는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을 의미한다.

(x) "우수(Stormwater)"는 10561.5절과 같이 정의된다.

(y) "우수 자원 계획(Stormwater Resource Plans)"은 6부의 2.3편(10560절 이하)에 정의되어 있다.

4장. 책임

86003. (a) (1)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은 3년마다 이 부에 의거한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제공해야 한다.

(2) 2020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은, 6개월마다,

웹 사이트에 지난 6개월동안 이 부와 관련된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보고서를 이 부의 절별로 요약된 정보와 함께 게시해야 한다.

(A) 채무 지출부담.

(B) 자금 지원을 받는 새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

(C) 완료된 프로젝트의 요약.

(D) 86157절에 의거하여 규정된 성공의 척도를 충족시키는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

(E) 주 기관과 수혜 대상이 실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

(F) 주 기관과 수혜 대상이 실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주요 성과 및 성공에 대한 논의.

(3) 이 세목은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부터는 효력이 없다.

(b)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또는 감사관, 또는 California 주 감사관은 주의회의 지시 하에 이 법에 따라 자금을 제공받는 주 기관의 경비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c) 이 부에 의해 승인된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 기관은 그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5장. 상수도 및 수질 개선

1조. 안전한 음용수

86004. 수질을 개선하거나 모든 California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 의회의 경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기금에서 총 7억 5,000만 달러 ($750,000,000)가 책정된다.

86005.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프로젝트는 유익한 용도로 사용될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조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물 또는 오염원에 관계 없이 식수 공급원의 오염 물질을 줄인다.

(b) 음용수가 오염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한다.

(c) 공공 건강 비상 상황을 다루는 프로젝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오염되거나 부적절한 식수 공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우한 농촌 커뮤니티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한다.

(d) 기타 개인, 연방, 주 및 지방의 음용수 및 폐수 처리 기금을 활용한다.

(e) 저소득 커뮤니티에 커뮤니티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하는 공공 식수 인프라를 제공한다.

(f) California 커뮤니티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g) 1차 및 2차 음용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1차 또는 2차 음용수 기준에 해당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86006. 이 조항에 따른 기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오염원은 납 질산염, 과염소산염, MTBE(메틸 3차 부틸 에테르), 비소, 셀레늄, 육가크로뮴, 수은, PCE(퍼클로로에틸렌),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 DCE(다이클로로에틸렌), DCA(디클로로에탄), 1,2,3-TCP(트리클로로프로판),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4-디옥사시클로헥산,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브롬화물, 철, 망간, 전용해 물질, 전도체 및 우라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6007. (a) (1) 86004절에 의해 승인된 기금 중 안전한 식수 기준에 부합하거나, 저렴한 음용수를 확보하거나,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공공 수도 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조치를 위한 지원금 및 대출에 5억 달러($500,0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식수 공급원이 주 위회가 지정한 화학 물질 및 질산염 오염 물질과 기타 건강상의 위해 요소에 의해 훼손된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커뮤니티 수자원 시스템 또는 주정부 소규모 수자원 시스템을 위한 대체 식수원의 접근이나 오염물 처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적격 수혜자는 저소득 커뮤니티이며 공공 수도 시스템 또는 공공 기관이다.

(2) 적격 경비에는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가동되는 시스템의 초기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복수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 해결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지정해야 하며,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안전하고 저렴한 음용수가 부족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수도 시스템, 주정부 소규모 수도 시스템 또는 개인의 우물을 통해 식수를 제공 받는 저소득 커뮤니티이어야 한다. 건설 보조금은 프로젝트 당 500만 달러($5,000,000)로 제한되지만, 주 의회는 예외적으로 최소한 하나가 소규모 커뮤니티가 되어야 하는 두 개 이상의 식수 시스템의 통합을 비롯하여 지역 혜택을 제공하거나 여러 단체 사이에 공유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2,000만 달러($20,000,000) 이하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보조금의 50%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3) 본 세부의 목적상, "초기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란 프로젝트를 적절히 완료할 수 있도록 구축 자금 조달 계약에 따라 구축된 프로젝트의 초기 시동 테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초기, 적격 및 상환 비용을 의미한다. 초기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자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b)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 중에서,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16276절에 의거한 학교 지원금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식수를 학교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최대 1,000만 달러($10,0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86008. 86004절에 의거하여 승인된 기금 중, 폐수 처리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 및 차관을 위해 13477.6절에 의거하여 제정된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 소규모 지역 기금 기금(State Water Pollution Control Revolving Fund Small Community Grant Fund)에 2억 5,000만 달러($250,000,000)를 예치할 수 있다. 저소득 커뮤니티 및 심각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프로젝트와 공중 보건 위험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프로젝트에는 폐수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저렴한 처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메커니즘을 파악, 계획, 설계 및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6009. 86004절에 의해 승인된 기금 중, 개인 부동산에서 식수 인프라 또는 폐수 개선이나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또는 잠정 보충 식수 공급을 위해 최대 6,000만 달러($60,0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a) 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음용수 우물의 수질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2) 흡수거의 설치 및 교체하고, 개인 우물 또는 현장 폐수 시스템을 수리 또는 교체하고, 버려진 우물 및 정화조 시스템 인프라를 적절히 폐쇄하고, 주택을 공공 용수 또는 폐수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3) 납을 함유한 실내 식수 배관 및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

(4) 중간 교체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b) 주 의회는 본 절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전 자금을 지정할 수 있다.

(c) 이동식 주택 소유자 및 취약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가 지정되어야 한다.

86010. (a) 이 조항에 따른 기금 수여를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 중 50% 이상이 현지 분담액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이 분담액 요건은 저소득 커뮤니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구역에 직접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의 경우 포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b) 이 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최소 10%는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c) 이 조항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최대 15%가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기술 지원에 할당될 수 있다. 주 의회는 사회 복지 및 교육, 필요성 평가, 커뮤니티에 안전한 식수 또는 폐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 접근법 검토, 프로젝트 선택 및 설계, 이사회 및

운영자 교육, 그리고 안전한 식수 또는 폐수 처리를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소득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유틸리티에 대한 기타 기술, 관리 및 재정 능력 구축 지원 등을 비롯하여 소규모 및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다제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에이전시는 비영리 단체, 자원 절약 지구 또는 기타 지역 기관과 계약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조. 물 재활용 및 담수화

86020. 폐수 재활용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경쟁을 통해 86166절 (a)호에 정의된 유자격 단체에 보조금 및 차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 4억 달러 ($400,000,000)를 기금에서 주 의회로 책정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보조금은 다음 모든 사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a) 처리, 저장, 운송, 염수 처리, 그리고 음용수 및 비음용수 재활용 프로젝트를 위한 배급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 재활용 프로젝트.

(b)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어류 및 야생 생물 서식지, 그리고 산업 최종 사용자 재조항 프로젝트에 재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배급 기반 시설.

(c) 새로운 음료수 재사용 및 오염물 제거 기술에 대한 시범 사업.

(d) 수질을 향상시키는 다목적 재활용 수 프로젝트.

(e) 습지 및 기타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 보존 및 복원하는 다목적 재활용 수 프로젝트.

(f)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신청 지원.

86021. 염분이 있는 지하수의 담수화와 주 의회의 규정에 따라 California주의 해안 국지, 해안 석호, 또는 해양 수역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담수화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경쟁을 통해 86166 절 (a) 목에 정의된 유자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4억 달러($400,000,000)를 기금에서 주 의회로 책정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보조금은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a) 처리, 보관, 운송 및 배급 시설. 프로젝트는 염분 이외에도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지만, 주로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b)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어류 및 야생 생물 서식지, 그리고 산업 최종 사용자 재조항 프로젝트에 탈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급 기반 시설.

(c) 수질을 향상시키는 다목적 탈염수 프로젝트.

(d)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신청 지원.

(e) 습지 및 기타 야생 동물 서식지에 물을 공급하는 다목적 탈염수 프로젝트.

(f)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신청 지원.

86022. 이 조항에 의거한 어떠한 보조금도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주로 저소득 커뮤니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또는 야생 동물 서식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86023.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다음 기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입찰 경쟁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a) 급수 안정성 향상.

(b) 삼각지(Delta) 또는 지역 하천으로부터 탈피하는 의존도 감소에 의한 수질 및 생태계 편익과 지역 수역에서의 유익한 용도 및 수질 목표 달성과 관련된 이익.

(c) 개선된 음용수의 질 또는 공급에 따른 공중 보건 이익.

(d) 투자된 1 달러당 생산되는 물의 양과 주 의회가 채택한 기타 비용 효율성 기준에 근거한 비용 효율성.

(e) 에너지 효율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

(f)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급수 또는 수질 개선.

(g)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뿐만 아니라 어류 및 야생 동물을 위한 안정적인 물 공급.

3조. 물 절약

86030. 다음과 같은 목적상 기금에서 부서로 총 3억 달러($300,000,000)가 책정된다.

(a) 주 전역의 잔디 제거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은 공공 및 사유지 소유주에게 관개 조경을 물이 적게 드는 적절한 식물을 비롯하여 가뭄에 강한 식목으로 전환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각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조경 수질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 주택 소유자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허용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75% 이상이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에 지출된다. 부서는 물 공급과 관련된 비용 효율성에 근거하여 비주거 지원자에게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각 보조금은 현재 물 사용량과 비교하여 물 소비량을 최소 50% 줄일 수 있어야 한다.

(2) 가장 비용 효율적인 프로젝트와 주정부 투자에 대해 가장 큰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자금 지원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 받는다. 환경적 이익에는 가뭄에 강한 토착 및 기타 식물, 소비성 용수 사용량 감소, 그리고 환경적 이익을 위한 물 공급량 증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 부서는 이전에 잔디 제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해 거주자가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이상 자격을 거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4) 부서는 86166절 (a)호 및 공익사업위원회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정의된 유자격 단체들과 협조하여 조경 전환 프로젝트의 소비자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청구서 지불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b) 누수 탐지.

(1) 급수 시스템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급수 시스템 운영자의 급수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누수 탐지 및 제거가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정한 경우 급수 시스템에 누수를 줄이고 고객의 수도 시스템에서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경쟁적 보조금을 제공하고, 주거, 기관 및 상업 시설에서 누수를 탐지하는 장비를 설치한다. 부서는 물 공급과 관련된 비용 효율성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이 세목에 따라 보조금을 수여 받는 수도 시스템 운영자는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누수 탐지 및 폐수 처리 프로그램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 어떠한 보조금도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비용 분담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다.

(c) 변기 교체. 1회 사용시 3갤런 이상을 사용하는 변기를 1회 사용시 1.28 갤런 이하의 물을 사용하는 새로운 절수형 변기로 교체하기 위해 86166절 (a)호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 또는 적격 업체에 대응 방식으로 경쟁 보조금을 제공한다. 부서는 물 공급과 관련된 비용 효율성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이 세목에 따라 보조금을 수여 받는 단체는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변기 교체 프로그램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d) 수도 계량기. 저소득 커뮤니티에 검침하지 않는 수도 계량기 설치.

(e) 에너지 절약형 절수.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는 수자원 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 수도 시스템에 대응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쟁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의 감소를 문서화해야 한다. 부서는 물 공급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비용 효율성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수여해야 한다.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프로그램에 최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f) 본 절에 따라 책정된 자금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서는 어떤 기술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며 가장 큰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는지

결정하고,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g) 본 절에 의거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모든 단체는 보조금을 이용하여 수자원 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대출할 수 있는 회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이율은 단체가 설정해야 하며, 단체는 대출 기간 동안 대출에 대한 이자와 함께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거한 대출에 대한 지불금은 회전 기금으로 상환되어 수자원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대출에 사용된다. 본 절에 의거한 대출은 최대 15년과 수자원 보전 프로젝트의 유용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86031. 혁신적인 물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배치를 가속화하고 California 생활 방식에 수자원 보존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기금에서 총 1,500만 달러 ($15,000,000)가 수자원 에너지 기술 프로그램을 위한 주정부 에너지 자원 보전 및 개발위원회(State Energy Resource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for the Water Energy Technology Program)에 책정된다.

86032. (a) 이 조항의 목적은 물의 권리 보유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삼각지(Delta)로 향하는 지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보존된 농업용 용수의 운송을 촉진하는 데 있다.

(b) 농업 수자원 보전 사업의 건설 및 시행과 79158절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 기관에 대응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에서 총 5,000만 달러 ($50,000,000)가 부서로 책정된다.

(c) 본 조항에 의거한 보조금을 승인할 목적으로, 부서는 제안된 각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프로젝트가 비용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건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 본 조항에 의거한 프로젝트는 부서의 보조금에서 500만 달러($5,000,000)를 초과해서 수령해서는 안 된다.

(e) 부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배정해야 한다.

(f) 지류에서 삼각지(Delta)로의 흐름을 증가시켜 어류 및 야생 동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금에 우선 순위를 배정해야 한다. 다른 용도 및 운송을 위한 내부 용수 지구 효율성을 개선하는 보조금도 기금 지원 대상이다.

(g) 영향을 심각한 수준 미만으로 완화하지 않는 상태로 어류 또는 야생 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배제된다. 완화 비용은 보조금에 포함될 수 있다.

4조. 향상된 물 공급을 위한 홍수 관리

86040. (a) 기금에서 총 2억 달러($200,000,000)가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 책정된다.

(1) 재건 기회의 제공을 비롯하여,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 관할 구역 내 기존의 홍수로 및 우회로의 확장 및 환경 개선.

(2)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 관할 구역 내 홍수 조절 시설 및 환경 개선.

(b)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제공받을 자격이 되려면 프로젝트가 주정부 기관이나 지역 홍수 통제 구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홍수 위험 감소, 책임 감소 또는 유지 보수 책임 감소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c)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는 다음에 대해 우선권을 제공한다.

(1) 주로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2) 하천 및 범람원이 보다 자연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홍수 위험을 줄이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 서식지를 강화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농장과 목장 보호, 수질 개선, 지하수 재충전

증가 및 공공 재건 기회 제공과 같은 추가적인 공공 이익을 창출한다.

(3) 다른 주 기관의 대응 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응 기금 포함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도까지 대응 기금 요구 사항을 경감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d)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86166절 (a)호에 정의된 유자격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는 1차적 목적이 복원이며 (a) 및 (b)호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는 서식지 복원 및 관련 다목적 범람원 복원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프로그램적 허가권을 개발하기 위해 최대 100만 달러 ($1,000,000)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f) (a)호에서 책정된 금액 중, 새크라멘토 밸리 (Sacramento Valley)의 하천에서 도시 지역에 홍수 방지를 제공하는 기존 댐에 대한 홍수 통제 개선 시설을 건축하도록 공공 기관에 대응 보조금으로 500만 달러 ($50,000,000)가 수여된다. 기금이 이 목적으로 2032년 1월 1일까지 수여되지 않으면, 기금은 본 조항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6041. (a) 주요 목적으로 또는 운영에 의해 간접적으로 홍수 조절을 제공하는 저수지를 수리 또는 재운영할 수 있도록 50% 대응 방식으로 지방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총 1억 달러($100,000,000)를 기금에서 책정한다. 보조금 수혜자는 제안된 수리 또는 재운영을 통해 유익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저수지에 저장된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절에 따라 책정된 기금은 댐의 높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댐의 물마루 높이를 높이지 않는 방수로 변경 프로젝트에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다.

(b) (1) 이 절에 따른 자금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가 하천 수로를 따라가는 산책로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저수지 수로 하류의 하천 및 인근과 안전한 저수지 운영이 보장되는 경우에 저수지 내에서 어류 및 야생 동물 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10%는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서식지 목적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경우 주정부 관리단에 직접 할당되어야 한다. 보수단이 없는 경우,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의 California 리버 파크웨이 프로그램(California River Parkways Program)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86166절 (a)호에 정의된 적격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리되거나 재운영되는 저수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프로젝트의 레크리에이션 및 서식지 요소를 승인해야 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검토, 계획 점검, 허가, 검사 또는 기타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서식지 및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의 영구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86166절 (a)호에 정의된 유자격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함할 수 있다.

(2) 본 세목이 요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지방 기관으로 제공된 자금으로 지불될 수 있으며, 기관에 의해 대응 기금을 제공 받을 필요는 없다.

(c) 본 조항에 의거한 보조금은 내진 보강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d) 본 조항에 의거한 보조금은 (a), (b) 및 (c)호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수지 또는 저수지 상류에서 저수지 유지 보수 또는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 신청자는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된 기금으로 지불된 프로젝트가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될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f)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g) 적격 저수지의 재운영을 돕는 프로젝트는 용수 관리 장비의 구매 및 설치, 정보 시스템의 취득, 그리고 저수지 관리 개선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유익한 용도의 물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h) (1)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야생 생물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야생 동물 서식지의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는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토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야생 동물 서식지에 대한 수익을 얻고 토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야생 동물 서식지에 대한 수익을 다른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는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토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야생 동물 서식지에서 해당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의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

(3)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지방 공공 단체,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조직이 본 세목에 의거하여 신탁 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에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이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인수 또는 개발할 토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또는 야생 생물 서식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토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야생 동물 서식지에 대한 수익이 부적격이거나 토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야생 동물 서식지에 대한 수익이 본 조항에서 확장 제공된 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판단한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책정된다. 기관으로 상환된 자금은 본 조항에 의거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i) 부서는 연계 이용 또는 기타 통합된 지표수/지하수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수를 재충전하기 위한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재운영을 조정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제공해야 한다.

86042. 홍수 관리, 습지 복원, 그리고 정부법 타이틀 7.25의 5장 2조(66704.5절 이하)에 준하는 기타 프로젝트를 위한 대응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총 2억 달러($200,000,000)가 기금에서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국(San Francisco Bay Restoration Authority)으로 책정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대응 기금에는 지방 정부, 지역 정부, 연방 정부, 민간 당사자, 또는 샌프란시스코 만 복원국(San Francisco Bay Restoration Authority)이 모금한 기타 기금이 포함될 수 있다. 어떠한 보조금도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6043. (a) (1) 토지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토지의 해당 수익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는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토지에 대한 수익을 얻고 토지에 대한 수익을 다른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는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토지에서 해당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의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

(3)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b) 본 조항(a)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토지에 대한 수익을 얻고 토지에 대한 수익을 다른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는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토지에서 해당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의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

(c) 토지에 대한 수익이 부적격이거나 토지에 대한 수익이 본 조항에서 확장 제공된 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판단한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책정된다. 기관으로 상환된 자금은 본 장에 의거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5조. 수질 측정 및 정보를 위한 기금

86048. 총 6,000만 달러($60,000,000)는 다음과 같이 수자원 측정 및 정보 시스템 기금에서 책정된다.

(a) 총 2,000만 달러($20,000,000)는 수자원 균형, 수자원 예산, 다변화에 대한 예측과 물 배분, 가뭄 관리, 지하수 관리, 수질 관리 및 물 권리 등을 지원하는 물

사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수질 측정 장비 설치의 개발을 위해 부서로 책정된다.

(b) 수자원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주 의회의 능력을 개선하는 정보 시스템, 기술 및 데이터의 개발을 위해 총 1,000만 달러($10,000,000)가 주 의회에 책정된다. 이 시스템은 주 의회 및 기타 보관소에 있는 수자원 권리에 대한 1,000만 페이지의 문서 기록을 디지털화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고 수자원 다변화 및 사용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보관소를 구축하는 작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 6부의 4.9편(12400절 이하)에 따라, California 주 수자원 정보의 상호 운용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 의회와 협의하여 부서가 사용하도록 12420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수자원 데이터 관리 기금(Water Data Administration Fund)에 총 1,000만 달러($10,000,000)를 책정한다.

(d) 총 2,000천만 달러($20,000,000)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1) 부서 및 주 의회와 협력하여 수자원 정보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개발하도록 California 대학의 복수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수자원 안전 및 지속 가능성 연구 이니셔티브(Wate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Research Initiative)를 위해 총 500만 달러($5,000,000)를 책정한다.

(2) California 주의 수자원 개선 및 보전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 착수하도록 Fresno에 소재한 California 주립 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California 수자원 연구소(California Water Institute)에 500만 달러($5,000,000)를 책정한다.

(3) California 주의 수자원 개선 및 보전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 착수하도록 San Luis Obispo에 소재한 California 농업 근로자 주립 대학교의 관개 훈련 연구 센터(Irrigation Training and Research Center)에 500만 달러($5,000,000)를 책정한다.

(4) California 주의 수자원 개선 및 보전과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 착수하도록 Sacramento에 소재한 California 주립 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수자원국 프로그램(Office of Water Programs)에 500만 달러($5,000,000)를 책정한다.

(5) 본 세목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고등 교육 기관은 그들의 활동이 상충되거나 중첩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6조. 도시 유출수 및 우수의 집수 및 사용

86050. (a) 도시 건기 유출수 및 우수를 집수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에서 주 위원회로 총 4억 달러($400,000,000)가 책정된다. 본 조항에 따라 주 정부가 건설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은 카운티 또는 도시, 시 및 카운티, 또는 홍수 통제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하는 공동 권한 기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 의회는 우수 자원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86166절 (a)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 달러($50,000,000)를 지출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금은 저소득 커뮤니티 및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배분된다. 주 의회는 이 기금을 사용하여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봉사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b) 정부법 타이틀 7.42(66905절 이하)에 따라 레이크 타호 분지(Lake Tahoe Basin)에서 건기 유출수와 우수를 집수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 3,000만 달러($30,000,000)가 기금에서 California 타호 보수단(California Tahoe Conservancy)으로 책정된다.

(c) 86080절의 (d)호 (2)항에 정의된 지역에서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의 23부(33000절 이하)에 따라 건기 유출수와 우수를 집수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에서 총 4,000만 달러($40,000,000)가 산타 모니카 마운틴 보수단(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으로 책정된다.

(d)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의 22.8부(32600절 이하)에 따라 건기 유출수와 우수를

집수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에서 총 4,000만 달러($40,000,000)가 San Gabriel 및 로어 Los Angeles 하천 및 산악 보수단으로 책정된다.

(e)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의 21부 (31000절 이하)에 따라 건기 유출수와 우수를 집수하고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에서 총 4,000만 달러($40,000,000)가 주 해안 보수단 (State Coastal Conservancy)으로 책정된다.

(f) 본 조항에 의거하여 지출된 자금은 개정될 수 있는 6부 2.3편(10560절 이하)에 부합하는 우수 자원 계획에서 확인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다기능 프로젝트를 개발, 실행 또는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유익한 용도를 위한 우수 또는 건기 유출수의 집수 및 처리; 집수되고 처리된 유출수에서 오염 물질의 제거; 환경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최상의 관리 기법을 사용하여 유익한 용도를 위한 우수 또는 건기 유출수를 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서식지 또는 공원의 조성 또는 복원; 집수되고 처리된 유출수에서 오염 물질의 제거; 서식지 또는 공원의 조성 또는 복원; 지역 수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집수되고 처리된 유출수의 저장, 침투 또는 사용; 자연 서식지, 산책로, 공원 또는 기타 자연적인 공간의 건설 또는 복원; 도시 열섬의 감소; 기타 공공 레크레이션 기회 제공 등을 비롯한 이점을 가능한 많이 포함해야 한다. 습지 및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또는 자연 유역 기능을 모방하거나 복원하는 프로젝트 요소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제공해야 한다.

(g) (a)호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에서, (1) 내셔널 에스투아린 리서티 보호구역(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해변, 또는 San Diego 카운티의 해안 인근으로, 또는 (2) 샌디에고 베이(San Diego Bay)로 유입되는 폐기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의 흐름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최소한 4,000만 달러 ($40,000,000)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이나 기타 오염 물질이 주립 공원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장치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제공해야 한다.

86051. (a)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보조금 수령자에게 최소 50%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만, 주로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당 요구 사항을 삭제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다.

(b) 본 조항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주 의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수질 정책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 프로젝트 비용에는 잠재적 우수 집수 및 재사용 프로젝트의 이익과 비용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의사 결정 지원 도구, 데이터 수집, 지리 정보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d) 우수 또는 건기 유출수를 빗물 배수로 또는 수로에서 우회시켜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e)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각 기관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금의 최소 35%를 할당해야 한다.

(f) 본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각 기관은 우수 및 건기 유출수 집수 및 재사용 프로젝트의 서식지, 공원, 열린 공간,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공공 이용 요소에 대한 통합 및 우선 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천연 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과 협의하고 제안된 프로젝트의 검토와 평가에 있어서 천연 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g) 프로젝트는 우수 및 건기 유출수가 빗물 배수구 또는 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86052. 86166절 (a)호에 정의된 단체는 86050절 (b), (c), (d) 및 (e)호에 의거하여 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86053. 본 조항에 따라 할당된 기금은 해당 장의 존재 여부에 상관 없이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의 6.5장(1650절 이하)과 일치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유자격 신청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7조.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86054. 지속적인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IRWM) 계획 및 시행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물 관리에 관한 지역 협력을 위해 IRWM을 통해 상당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승인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IRWM) 지역 수자원 관리 그룹에 직접 자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총 500만 달러($5,000,000)가 부서에 할당된다.

6장. 유역, 육지 및 어업 개선

1조. 급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유역 개선

86080. 수자원 공급 및 수질을 보호 및 개선하고, 산림 상태를 개선하고, 가능한 최선의 과학과 일치하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산불이 수질 및 수자원 공급에 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홍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수층을 정화하며, 수변 또는 수생 자원을 보호 또는 복원할 수 있도록 미국이 소유한 육지를 비롯하여 산림(떡갈나무, 레드우드 및 세쿼이아 포함), 초원, 습지대, 수풀, 강기슭 서식지 및 기타 유역을 포함하는 유역의 상태를 보호, 복원 및 개선하기 위해 총 23억 5,500만 달러($2,355,000,000)를 기금에서 책정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보조금은 (a)호에 따라 필요한 현장 연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수지 또는 저수지 상류에서 저수지 유지 보수 또는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기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a)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3.3부(33300절 이하)에 따라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33320절에 명시된 목적을 포함하여 시에라 네바다 유역의 보호, 복구 및 개선을 위해 시에라 네바다 보수단(Sierra Nevada Conservancy)에 2억 달러($200,000,000). 또한,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이 지출되어야 한다.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장기적인 대기의 질, 수질 및 수량, 온실 가스 배출량, 탄소 보존, 서식지, 레크리에이션 용도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비롯하여 물 공급, 기후 및 기타 이점에 대해 산림 복구 작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 및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다.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는 산림 복구와 관련하여 가장 유용한 과학에 기초해야 하며, 물 공급과 품질을 개선하고,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복원하며, 산불, 기후 변화 및 기타 교란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산림 조건을 증진하도록 착수되어야 한다. 시에라 네바다 보수단(Sierra Nevada Conservancy)은 보조금이 연방 관리 지역에 본 목을 구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방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b)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7.42(66905절 이하)에 따라 타호 호수 분지(Lake Tahoe Basin)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California 타호 보수단(California Tahoe Conservancy)에 6,000만 달러($60,000,000).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5부 1.692장 6조(5096.351절 이하)에 따라, 타호 호수 환경 개선 프로그램(Lake Taho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gram)의 시행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이 지출되어야 한다.

(c)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1부 4.5장(31160절 이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의 유역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의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보존 프로그램(San Francisco Bay Area Conservancy Program)에 1억 달러($100,000,000).

(d) 다음과 같이 Los Angeles, Orange 및 Ventura 카운티의 유역 보호 및 복구를 위한 1억 8,000만 달러($180,000,000):

(1)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2.8부(32600절 이하)에 따라 San Gabriel 및 로어 Los Angeles 강의 유역을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해 San Gabriel 및 로어 Los Angeles 하천 및 산악 보수단(San Gabriel and Lower Los Angeles Rivers and Mountains Conservancy)에 6,000만 달러($60,000,000).

(2)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3부(33000절 이하)에 따라 Santa Monica 만, 로어 Los

Angeles 강 및 Santa Clara 강의 유역과 79570절 (c)호에 정의된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산타 모니카 마운틴 보수단(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에 6,000만 달러($60,000,000).

(3)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1부 4.6장(31170절 이하)에 따라, Santa Ana 강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의 산타 아나 리버 보존 프로그램(Santa Ana River Conservancy Program)에 3,000만 달러 ($30,000,000).

(4) 볼드윈 힐스(Baldwin Hills) 및 바일로나 크릭 (Ballona Creek) 유역의 보호 및 복원과 공공 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22.7부(32550절 이하)에 따라 건기 유출수와 우수를 집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볼드윈 힐스 보수단(Baldwin Hills Conservancy)에 3,000만 달러($30,000,000).

(e)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2.9부 (32630절 이하)에 따라, San Diego 카운티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샌디애고 리버 보수단(San Diego River Conservancy)에 4,000만 달러 ($40,000,000).

(f)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1부 (31000절 이하)에 따라, 해안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억 3,500만 달러($135,000,000).

(g) 새크라멘토(Sacramento) 및 산 호아킨(San Joaquin) 강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1억 5,000만 달러($150,000,000)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2.3부 (32300절 이하)에 따라, 삼각지(Delta)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새크라멘토-산호아킨 삼각지 보수단 (Sacramento-San Joaquin Delta Conservancy)에 1억 달러($100,000,000). 토착종의 복원에 도움을 주고 과도한 염분 침투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에 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16 USC Sec.1531 et seq.) 및 California 멸종 위기종에 관한 법률(어획 및 수렵법 (Fish and Game Code) 3부의 1.5장(2050절 이하)) 에 따라 등록된 종에 중요한 서식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금은 삼각지(Delta)의 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선하고 삼각지의 불우한 도시 커뮤니티를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대한 커뮤니티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역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보수단은 삼각지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다.

(2)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2.5부 (32500절 이하)에 따라, 산 호아킨 리버 파크웨이(San Joaquin River Parkway)를 실현하도록 산 호아킨 리버 보수단(San Joaquin River Conservancy)에 2,000만 달러($20,000,000).

(3)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5845.9 절에 의해 창설된 로어 아메리칸 리버 보존 기금(Lower American River Conservancy Fund)에 3,000만 달러($30,000,000).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5부 10.5장(5845 절 이하)을 이행해야 한다.

(h) 다음과 같이 하천 공원길을 위해 1억 7,000만 달러($170,000,000).

(1) 2004년 California 리버 파크웨이 법(California River Parkways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5부 3.8장(5750절 이하))에 따른 프로젝트를 위해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에 7,000만 달러($70,000,000).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최소 65%의 기금을 할당해야 한다. 장관은 나머지 기금을 사용해서 저소득 커뮤니티로서의 자격이 없는 빈곤한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Guadalupe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000만 달러($10,000,000).

(3) Russian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000만 달러($10,000,000).

(4) Santa Clara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000만 달러($10,000,000).

(5) Tijuana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000만 달러($10,000,000).

(6) Carmel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000만 달러($10,000,000).

(7) Napa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000만 달러($10,000,000).

(8) 샌디애고 만(San Diego Bay) 유역 내 하천 공원길 프로젝트를 위해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500만 달러($15,000,000).

(9) San Diego 카운티의 Santa Margarita 강 공원길 프로젝트를 위해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1,500만 달러($15,000,000).

(10) 어퍼 Truckee 강 길을 따라 서식지 복원,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공원길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California 타호 보수단 (California Tahoe Conservancy)에 1,000 만 달러 ($10,000,000).

(i) Los Angeles 강과 그 지류를 복원, 보호 및 보존하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이 1억 5,000만 달러 ($150,0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2.8부 (32600절 이하)과 이 법의 79508절에 따라 San Gabriel 및 로어 Los Angeles 하천 및 산악 보수단 (San Gabriel and Lower Los Angeles Rivers and Mountains Conservancy)에 7,500만 달러 ($75,000,000).

(2)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3부 (33000절 이하)과 이 법의 79508절에 따라 산타 모니카 마운틴 보수단(Santa Monica Mountains Conservancy)에 7,500만 달러($75,000,000).

(j)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3억 달러 ($300,000,000).

(1)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의 4장(1300절 이하)에 따라 Del Norte, Humboldt, Marin, Mendocino 및 Sonoma 카운티의 Sacramento, Smith, Eel 및 Klamath 강과 기타 강 유역, 그리고 Carrizo Plain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0.4부 (10330절 이하)과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 4 장 3.5조(1360절 이하)에 따라 오크 우드랜드 및 방목장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3)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 4장 (1300절 이하)에 따라 강가 서식지, 철새 서식지, 소하성 어업, 습지 서식지 및 기타 유역을 취득 및 복원하기 위해.

(4) 보조금에는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3부 10장(2800절 이하)에 따라 채택된 자연 지역 보전 계획(Natural Community Conservation Plans)과 연방 연방 멸종 위기종에 관한 법률 (Endangered Species Act)(16 USC Sec.1531 et seq.)에 따라 채택된 대규모 지역 서식지 보전 계획

(Habitat Conservation Plans)을 시행하는 주 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이 포함될 수 있다.

(5) 이 세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 농민들이 농업 활동에 유역 복원 및 야생 동물 보호를 통합할 수 있도록 총 1,000만 달러($10,000,000)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보존 지구와의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6) 이 세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 5,000만 달러($50,000,000)는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1363절에 따라 설립된 오크 우드랜드 보호 기금(Oak Woodlands Conservation Fund)으로 책정되며,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 4장 3.5조(1360절 이하)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7) 이 세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 3,000만 달러($30,000,000)는 California 목장, 초지 및 초원 보호법(California Rangeland, Grazing Land, and Grassland Protection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0.4부(10330절 이하))에 따라 방목지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8) 이 세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중, 6,000만 달러($60,000,000) 이상은 자연 지역 보전 계획(Natural Community Conservation Planning Act)(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3부 10장 (2800절 이하))에 따라 채택된 자연 지역 보전 보전 계획의 보전 목적을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생 생태계 보호가 포함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기금은 달리 요구되는 완화 의무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k)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3.5부 (33500절 이하)에 따라, 코아챌리 밸리(Coachella Valley)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코아챌리 밸리 마운틴 보수단(Coachella Valley Mountains Conservancy)에 2,500만 달러($25,000,000).

(l) 강과 하천의 흐름 및 품질을 보호함에 있어서 중요한 레드 우드와 기타 산림 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립 공원 시스템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에 1억 5,000만 달러 ($150,000,000). 이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다른 목적 외에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는 주립 공원 용수 공급 및 폐수 처리 시스템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을 할당할 수 있다.

(m) 농지, 방목지, 관리 습지 및 삼림 지대의 유역 복원 및 보전 사업을 위해 보전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에 6,000만 달러($60,000,000).

(1)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9084절에 따라 1,300만 달러($13,000,000)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2)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0.2부 (10200절 이하)의 목적상 3,100만 달러 ($31,000,00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유역 코디네이터 보조금 프로그램(Watershed Coordinator Grant Program)에 1,000만 달러 ($10,000,000)를 사용해야 한다.

(n) 해양 보호 협의회(Ocean Protection Council)에 1억 달러($100,000,000)를 책정해서 (1) 해변, 만, 연안 강어귀, 그리고 해안 생태계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고, (2) 근해 해양 서식지의 복원력 증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해양 산성화 및 관련 위험의 영향으로부터 해안 및 근해 자원을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프로젝트에는 해양 보호 구역을 비롯하여 해변, 연안 강어와 유역, 만 및 근해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금액 중, 협의회는 해수면 상승 모델링, 취약성 평가, 도입 계획 및 정책 개발을 포함하여 해수면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연안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지역 연안 프로그램 해수면 상승 보조금 프로그램에 최소 500만 달러 ($5,000,000)를 사용해야 한다.

(o)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의 3부 13장 2조(2940절 이하)의 조항에 따라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의 솔턴호 관리 프로그램(Salton Sea Management Program)을 이행하는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와 2003년 법령 611,

612, 613 및 614장의 조건을 준수하는 California 주 의무의 이행을 위해 총 2억 달러($200,000,000)의 기금이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에 책정된다. 이 법령은 솔턴호의 복구를 포함한 정량화 합의서(Quantification Settlement Agreement)의 집행 및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은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에 생태계 복원, 대기 질 개선 및 경제적 회복이라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본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에서, 2,000만 달러($20,000,000) 이상을 솔턴호 관리 기관이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71103.6절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새로운 강 수질, 공공 건강 및 강 공원로 개발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목적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금액 중에서, 저소득 커뮤니티에 대한 기술 지원, 봉사 활동 및 참여를 제공하는 솔턴호 통합 유역 계획(Salton Sea Integrated Watershed Plan)에 100만 달러($1,000,000)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p) 85280절에 설명된 삼각지 사이언스 프로그램(Delta Science Program)의 삼각지 관리 위원회(Delta Stewardship Council)에 500만 달러($5,000,000).

(q) 7048절에 따라 도시 하천 복원 프로그램(Urban Streams Restoration Program)의 경쟁 보조금으로 부서에 5,000만 달러($50,000,000). 부서는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최소 65%의 기금을 할당해야 한다. 부서는 나머지 기금을 사용해서 저소득 커뮤니티로서의 자격이 없는 빈곤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r) California 주 산림법(California Urban Forestry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4호 파트 2.5의 2장(4799.06절 이하))에 따라 우수를 관리, 집수 및 보존하거나, 지하수를 재충전하거나, 침투, 퇴적물 관리 및 침식 통제 등을 통해 수자원이나 수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삼림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 및 화재 보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에 2,000만 달러($20,000,000).

(s)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32301절 (f)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삼각지(Delta) 레거시 커뮤니티와 삼각지에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폐수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보조금 또는 융자를 제공하도록 삼각지 보호 위원회(Delta Protection Commission)에 1,500만 달러($15,000,000). 삼각지 레거시 커뮤니티 또는 도시, 농경 또는 수산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또는 지표수의 품질을 위협하는 부패한 정화조 시스템을 보유한 삼각지 유산 커뮤니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폐수 개선 프로젝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삼각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폐수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기금을 할당할 수도 있다. 공중 보건 위험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프로젝트는 폐수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저렴한 처리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메커니즘을 파악, 계획, 설계 및 구현할 수 있다.

(t) 이 목적상 86166절 (a)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전동식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강에 대한 접근 및 적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에 2,000만 달러($20,000,000). 비용 분담 여부에 상관 없이 대응 기금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와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비용 분담 여부 포함 여부 포함)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u) (1) 수이선(Suisun) 습지 인근에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가 운영할 퍼시픽 플라이웨이 센터(Pacific Flyway Center)를 건설하기 위해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2,000만 달러($20,000,000).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는 비영리 단체와 계약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센터는 California의 습지, 농경지(벼 포함), 그리고 물새, 도요 물떼새, 토종 식물 및 동물에게 이익을 주는 강기슭 지역,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가스를 흡수함에 있어서 습지 가치, 그리고 유사한 교육 목적 등의 중요성을 대중에 교육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센터의 운영자는 저소득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학생을 교육 목적으로 센터로 데려 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가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불필요한 부분을 (j)부의 목적에 할당할 수 있다.

(2) (A) (1)항에 의해 책정된 금액 중에서,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는 야생 동물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에 최대 400만 달러($4,000,000)의 지원금을 제공해서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이자는 퍼시픽 플라이웨이 센터(Pacific Flyway Center)를 운영하고 저소득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센터로 데려 오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의 승인 하에 비영리 단체는 퍼시픽 플라이웨이 센터(Pacific Flyway Center)의 운영을 다른 비영리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그러한 이관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 기금은 새로운 비영리 단체로 이전되어야 한다.

(3) 2028년 1월 1일까지 이 섹션에서 배정된 자금이 퍼시픽 플라이웨이 센터(Pacific Flyway Center)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잔여 자금은 86123절의 목적상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배정된다.

(v) Matilija 댐 철거, 그리고 관련 제방 및 홍수 조절 개선, 물 공급 개선, 그리고, Matilija 크릭 및 Ventura 강에 대한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Ventura 강을 따라 강 공원길 조성을 위해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에 8,000만 달러($80,000,000). 보수단은 Ventura 카운티에 이러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여할 수 있다. 강 공원길 프로젝트의 최우선 순위는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주 해안 보수단(State Coastal Conservancy)이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불필요한 부분을 (f)호의 목적에 할당할 수 있다.

(w) 수생 생태계, 자연 토지 관리의 개선, California의 야생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연구 시설의 건설 및 개발에 대한 대응 보조금으로 California 대학교 자원 보존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Natural Reserve System)에 총 2,500만 달러($25,000,000). 기후 변화의 영향,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및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자연계 적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가 배정된다.

(x) (1) 86166절 (a)호에 정의된 적격 법인에 대한 보존 관할권 내에서 유역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불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수여할 목적으로 기금에서 시에라 네바다 보수단(Sierra Nevada Conservancy)에 총 5,000만 달러($50,000,000)가 책정된다. 프로젝트는 위험한 연료 감소, 산불 후 유역 재활, 심한 산불, 기후 변화 및 기타 교란에 대한 산림 복원력을 촉진하는 산림 경영 관행, 유역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역 계획 개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대응 기금을 포함하는 지원금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우선 순위는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보조금을 위해 축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2) 86166절 (a)호에 정의된 적격 법인에 대한 시에라 네바다 보수단(Sierra Nevada Conservancy) 관할권 외부에서 유역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불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수여할 목적으로 기금에서 산림 및 화재 보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에 총 5,000만 달러($50,000,000)가 책정된다. 프로젝트는 위험한 연료 감소, 산불 후 유역 재활 및 복원, 심한 산불, 기후 변화 및 기타 교란에 대한 산림 복원력을 촉진하는 산림 경영 관행, 유역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역 계획 개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대응 기금을 포함하는 지원금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우선 순위는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보조금을 위해 축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86083. 이 조항의 다른 요구 사항과 일관성이 있도록, 본 조항에 따라 지출된 자금은 86166절 (a)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법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격 단체에 수여된 기금은 주 또는 연방 기관이 소유한 토지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된 자금을 제외하고, 자금을 수령한 주정부 기관은 본 조항에 부합하는 유역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관은 비용 분담을 포함하는 신청 및 비용 분담 여부에 관계 없이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이익을 주는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86084. (a)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프로젝트는 유역 보호 및 복원, 상수도 또는 수질 혜택, 또는 강, 개울, 삼림, 초원, 습지 또는 기타 수자원과 관련하여 생태계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b) (1) 본 조항에 따라 책정 된 자금은 산림, 초원, 습지, 강기슭 서식지, 연안 자원 및 해상 근해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에 사용되어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도록 토지 및 지역권을 확보하고 유역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개발 방지하고, 및 본 조항에 의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자원 공급의 질 또는 양을 보호하거나 향상시키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한 연료 감소, 산불 후 유역 재건 복구, 적절한 토착 식물을 이용한 산림 관리 및 식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산림 복구 사업은 산림 복구와 관련하여 가장 유용한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산불, 기후 변화 및 기타 교란에 보다 탄력적인 산림 조건을 장려해야 한다.

(2) 시에라 네바다 및 유사한 산림에서 미국 국유림 관리 서비스(United States Forest Service) 토지에 대한 연료 위험 감소 활동은 일반적으로 미국 산림청 일반 기술 보고서(United States Forest Service General Technical Report) PSW-GTW-220의 최신판을 비롯하여 시에라 네바다 유역 개선 프로그램 (Sierra Nevada Watershed Improvement Program) 및 가장 유용한 과학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86085.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사유지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사유지에 대한 합의 또는 이해 관계를 확보해서 프로젝트 유형에 대한 모범 사례에 상응하는 시간 동안 지출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

86086. (a) (1) 본 조항에 따른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 받는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토지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는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을 얻고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을 다른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는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프로젝트에서 해당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의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

(3)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지방 공공 단체,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조직이 (a)호에 의거하여 신탁 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에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이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c) 탁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시하고 본 조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젝트와 상수도 및 수질 개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d)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이 부적격이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이 본 조항에서 확장 제공된 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판단한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책정 및 상환된다. 기관으로 상환된 자금은 본 조항에 의거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86087. 본 조항에 따라 할당된 기금은 해당 장의 존재 여부에 상관 없이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의 6.5장(1650절 이하)과 일치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유자격 신청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86088. 2019년 4월 30일까지 천연 자원 관리청 (Natural Resources Agency)은 가이드 라인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항에 의거한 예산을 받는 각 주정부 기관에 보조금 승인 가이드 라인 조항을 권고해야 한다. 각 기관은 천연 자원 관리국 (Natural Resources Agency)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86089.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받는 기관은 California의 토종 야생 생물, 조류 및 어류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조. 수자원 개선을 위한 토지 및 물 관리

86090. 공공 및 민간 방목장, 황무지, 초원, 습지, 강기슭, 수륙지 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대지에서 생성된 지하수 충전 및 수자원 공급을 증가시키고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복원할 목적으로 86166절 (a)호에 정의된 적격 단체에 경쟁 보조금을 수여할 목적으로 총 1억 달러($100,000,000)가 기금에서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로 책정된다.)

86091. 본 조항에 따라 할당된 기금은 해당 장의 존재 여부에 상관 없이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의 6.5장(1650절 이하)과 일치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유자격 신청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86094.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a) 물 공급이나 수질 개선에 있어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으며 어류와 야생 동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다.

(b) 대응 자금을 포함시킨다.

(c)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이익을 제공한다.

(d) 침입식 식물 통제 및 근절, 강가 서식지, 초원 및 습지의 복원, 그리고 토양에서 물의 흐름을 개선하고 침입성 식물 종에 의한 물 사용을 줄이는 기타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한다.

86096.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는 상수도 또는 수질 혜택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수자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침입 식물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는 신청자가 이러한 식물을 제거할 대지의 유지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86097. (a) (1)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토지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는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프로젝트를 유지할 의향과 능력을 가진 다른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3)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지방 공공 단체,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조직이 (a)호에 의거하여 신탁 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에 해당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c) 본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신탁 기금의 이자는 프로젝트의 이행을 감시하고 본 조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젝트와 상수도 및 수질 개선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d)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이 부적격이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이 본 조항에서 확장 제공된 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판단한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자금을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로 책정 및 상환된다. 상환된

자금은 본 조항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86098. 본 조항을 실행할 때, 야생 생물 보존 위원회는 민간 토지에 대한 보존 조치나 자발적 서식지 크레딧 교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86099. 이 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의 최소 10%는 저소득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혜택에는 다른 이점 중에서 범위 개선이 포함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기술 지원, 봉사 활동 및 참여가 포함될 수 있다.

3조. 보존단

86105. 삼림지, 초원, 습지대, 떡갈나무, 강기슭 서식지 및 기타 유역을 포함한 유역의 상태를 보호, 복원 및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총 4,000만 달러 ($40,000,000)가 기금에서 California 보존단 (California Conservation Corps)으로 책정된다. 프로젝트에는 공공 토지에 대한 지역 및 커뮤니티 연료 위험 감소 프로젝트, 침입종 제거, 하천, 강 및 강변 복원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alifornia 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은 인증된 지역 보전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의 50% 이상을 할당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수질, 수자원 신뢰도, 또는 강가 또는 유역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비영리 단체 또는 공립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조. 센트럴 밸리 어업 복원

86106. (a) California 주민은 California 주의 생태적 및 경제적 상태를 위해 위해 소하성 연어류를 포함하여 센트럴 밸리의 토착 어류 개체군의 보호, 복원 및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 어류는 강과 그 지류에서 적절한 서식지와 시기 적절한 흐름을 필요로 한다.

(c) 주 의회는 센트럴 밸리 고유의 어류 개체군 및 수산업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유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항이 제공한 자금과 그 결과에 따른 어류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d)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삼각지 관리 위원회(Delta Stewardship Council), 삼각지 보수단(Delta Conservancy),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 연방 국토개간국(Bureau of Reclamation),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국(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및 국립 해양 수산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서는 센트럴 밸리의 어류 및 어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정책 및 계획은 전액 지원되지 않는다.

(e) 다양한 주법 및 연방법에서는 센트럴 밸리 토종 어류 개체군 및 어류 서식지의 복원을 요구하지만, 법의 요구 사항을 수행하기에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못했다.

(f) 토착 어류 및 어업 서식지의 센트럴 밸리 개체군 복원을 위해 총 4억 달러($400,000,000)가 기금에서 천연 자원 관리국(Natural Resources Agency)에 책정된다.

(1) (A)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 장관은 상류 유역의 대표를 비롯하여 관련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센트럴 밸리 연어 서식지 파트너십 (Central Valley Salmon Habitat Partnership), 적절한 지방, 주 및 연방 어류 및 수질 관리 및 기타 기관, 비영리 기관, 상업 어업 단체, 대학, 지역 기관 및 인디언 부족의 대표로 구성된 센트럴 밸리 어류 자문 위원회 (Central Valley Fisheries Advisory Committee)를 지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장관에게 본 조항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연간 지출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지시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유역의 조건에 가장 적합하고 본 조항의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수자원 기구, 인디언 부족 및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센트럴 밸리 강 유역 대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C) 프로젝트를 제안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유익한 어류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고 강 유역 내의 각 프로젝트에서 얻는 효과와 다른 하천 유역의 프로젝트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극심한 산불과 광범위한 수목 사망률을 포함하여 유역 상태의 악화로 인한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토착 어류의 자생 개체수를 증가시키거나, 기존 개체수의 미래 자생 능력에 기여하면서 프로젝트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지출을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한다. 어류 부화장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홍수 관리 개선, 수질 개선, 수자원 개선, 지하수 지속성 강화, 대수층 개선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축과 같은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 토착 어류종과 그 서식지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흐름 상태에 통합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다양한 흐름 조건에서 다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토착 California 어종에 대한 복구 계획 및 회복성 전략과 일치하는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지출은 보전 지역권, 프로젝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자원 측정, 범람원 확장과 같이 어류 서식지를 복원 또는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역사적 서식지로의 어류의 재정착, 어류의 통과 기회 개선, 산란 및 양식 서식지의 개척 또는 향상,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 등과 같은 자본 지출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류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지 또는 지역권의 인수는 자발적인 매각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 비용에는 계획, 환경 검토, 프로젝트의 영향 완화 및 허용 비용이 포함된다. 농어촌이나 범람원 서식지에 성어 및 치어를 풀어 놓거나 어도를 만들어서 치어 사육 및 식량 생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5)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 장관은 기관, 부서,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주 의회 및 기타 주정부 기관 간 의사 소통 및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고등 고육 기관을 위한 자본 지출 및 관련 프로그램에 1개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 중 최대 1,000만 달러($10,000,000)를 할당해서 생태계 및 어업 과학 및 관리의 발전이 고등 교육 기관 및 주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배치되고 도입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g)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 또는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대응 기금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서 지방 기관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및 새크라멘토 밸리 연어 회복성 전략(2017년 6월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이 발표한 사항 및 그 개정안에 따라)에서 제안된 조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개정 될 수 있음), 국립 해양 수산국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발행 California 센트럴 밸리 연어 및 무지개송어 복원 계획 (California Central Valley Salmon and Steelhead Recovery Plan) 및 채택된 기타 유사한 전략에 우선 순위를 배정해야 한다.

(h) 본 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금액 중 최소 3,500만 달러($35,000,000)는 강과 범람원의 재연결,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의 California 강변 서식지 보존 프로그램(California Riparian Habitat Conservation Program) 4.1장 (1385절 이하)에 기술된 하안 및 측면 수로 서식지 복원 활동, 어류 및 야생 생물 자원에 중요한 수원림 및 목초지 시스템의 복원 및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업 및 야생 생물을 지원하기 위해 강과 개천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9738절 (f)호는 이 호에 적용된다. 연어와 무지개 송어를 이롭게 하는 지역적 조치의 파악, 설계 및 실행을 지도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접근과 측정가능한 목표를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다중투자자 공공 합작 또는 다중투자자 민간 합작, 또는 양자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두어야 한다.

(i) 이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 센트럴 밸리 연어 파트너십 서식지 이행 계획(Central Valley Salmon Partnership Habitat Implementation Plan)의 개발을 돕기 위해 500만 달러($5,000,000)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j) 장관은 댐 제거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Tuolumne 강에서 덴넷 댐(Dennett Dam)을 제거하기 위해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k)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신탁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의 수익금은 기금을 제공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어야 한다.

(1) 지역 공립 교육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 및 감시 할 수 없는 경우,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 장관의 승인 하에 신탁 기금의 소유권을 다른 공립 교육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에 양도할 수 있다.

(2)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지방 공공 단체,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조직이 (1)항에 의거하여 신탁 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은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 장관에게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이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거나 불능 상태인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에 책정된다. 기관으로 상환된 자금은 본 조항에 의거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l) 본 조항에 따라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에 할당 된 금액 중, 700만 달러 ($7,000,000)는 오로빌 댐(Oroville Dam) 아래의 페더 강(Feather River) 상류 토착 어류 복원 프로젝트, 자갈 복원, 그리고 연어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에 할당된다.

7장. 지하수 지속 가능성 및 저장

86110. (a) 6부의 2.74편(10720절 이하)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을 위해 6억 7,500만 달러($675,000,000)의 자금이 해당 기금에서 부서로 책정된다. 이 기금은 지하수 공급을 보호, 향상 또는 개선하는 지하수 지속 가능성 계획 및 프로젝트의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발전시키는 경쟁 보조금에 사용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지원금 중 최소한 10%는 지하수가 저소득 커뮤니티의 근간을 이루는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b) 소규모 및 저소득 커뮤니티를 위한 종합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과 지하수 지속 가능성 계획의 개발 및 이행에 저소득 커뮤니티의 및 대중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00만 달러 ($10,000,000)가 주 의회 기금으로 책정된다.

86111. (a) 86110절에 의해 승인된 기금 중, 10721절의 (k)호에 따라 지하수 지속 가능성 계획을 실시하는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6억 4,000만 달러($640,000,000)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자발적 판매자로부터의 토지 및 지하수 개발 할당량 취득, 타당성 조사 및 환경 준수와 같은 시설 계획, 분배 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하수 재충전 및 저장 프로젝트. 본 조항에 의거한 어떠한 보조금도 2,000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2) 6부의 2.74편(10720절 이하)에 따라 지하수 지속 가능성 계획을 이행하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는 타당성 조사, 환경 준수, 특정 프로젝트의 지하수 사용 및 지속 가능한 수량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작업, 양호한 용도 측정 및 혁신적인 의사 결정 지원 도구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기후 변화와 관련된 미래 영향을 포함하여 해수 유입을 평가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4) 10721절의 (k)호에 따라 지하수 지속 가능성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에 대한

대응 보조금. 어떤 지원금도 100만 달러($1,0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은 두 개 이상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b) 본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기금 중, 본 조항에 의거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에 총 500만 달러($5,0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연구 활동에는 지구 물리학 조사, 시스템 수준 모델링 및 분석, 지역 의사 결정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 새로운 재충전 방법에 대한 부문간 경제적 및 정책적 분석, 지하수 재충전 및 목적에 맞는 물 처리 및 재사용을 대폭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개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 중, 부서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의 개발을 위해 1,000만 달러($10,000,000)를 할당하여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이 지속 가능한 산출량,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측정 가능한 목표 및 기타 필요한 목표의 개발 및 평가를 비롯하여 식수의 품질 분석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의사 결정 지원 도구는 물 공급이나 오염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커뮤니티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취약성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 이 도구는 가뭄 취약성 평가와 같은 다른 노력에 사용 가능해야 하며 주 의회에 도입된 수자원 권리 지표에 연결되어야 한다.

(d) 부서는 기관, 부서, 주 의회 및 기타 주정부 기관 간 의사 소통 및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고등 고육 기관을 위한 자본 지출 및 관련 프로그램에 1개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 중 최대 500만 달러($5,000,000)를 할당해서 지하수 과학 및 관리의 발전이 고등 교육 기관 및 주정부 기관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도입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e)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관 또는 조직의 수익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는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본 조항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토지에 대한 수익을 얻고 토지에 대한 수익을 얻은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해당 수익을 다른 지역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에서 해당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의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

(2)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지방 공공 단체,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조직이 본 세목에 의거하여 신탁 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에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이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인수할 토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토지에 대한 수익이 부적격이거나 토지에 대한 수익이 본 조항에서 확장 제공된 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역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판단한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충당된다. 기관으로 상환된 자금은 본 장에 의거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86112. (a) 부서는 본 장에 따른 자금 지원에 대해 다음 사항에 동일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1) 부서에 의해 심각하게 채굴된 유역으로 지정된 지하수 유역, 과도하게 채굴될 수 있는 지하수 유역 및 지표와 지하수가 상호 연결된 지하수 유역.

(2) 문서화된 수질 문제, 지표 침강, 지표수 또는 지하수 의존 생태계에 대한 영향, 또는 10721절의 (x)호에 정의된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있는 지하수 유역.

(3) 주립 공원과 야생 생물과 같은 중요 국유 자원을 보호하는 지하수 유역.

(4) 지하수 유역을 재충전하기에 적합한 수질의 범람원의 사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이러한 혁신적인 다중 혜택 개념은 홍수 위험 감소,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 생태계 복원 및 물 공급 안정성을 포함하여 California의 4가지 중요한 물 관리 목표를 통합한다.

(A) 프로젝트는 저수지의 홍수 및 보전 저장 작업의 적응적 수정, 기존 저수지의 방수 시설 수정, 신축 또는

확장된 홍수 우회 또는 임시 홍수 저장 지역의 범람, 휴경 또는 휴면기에 농경지에 홍수를 적용, 또는 기존 지하수 재충전 시설의 사용 증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B) 프로젝트에는 홍수 재해 감소 및 지하수 지속 가능성 혜택과 함께 지하수 프로젝트 재충전을 위한 홍수 수자원 이용이 포함될 수 있다.

(C) 홍수 재해 감소 및 지하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은 생태계 복원 및 수자원 이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86110절에 책정된 금액 중, 다음과 같은 목적상 1,000만 달러($10,000,000)를 사용할 수 있다.

(1) 홍수 재해 감소 및 지하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주에서 근접성 및 수송 연계성 기반으로 재충전을 위한 홍수 사용에 대한 주 전역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홍수 위험 감소 및 지하수 재충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자원 관리 혁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위치에 대한 예비 연구를 완료한다.

(3) 이용 가능한 범람원 개발 및 지하수 유역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도구 및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 기술의 이용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4) 지하수 재충전 이점의 경제적인 수익 창출 기법을 개발한다.

(5) 수자원 및 홍수 관리 분야에 부서의 기후 변화 방법론의 적용을 시연한다.

(6) 주 및 연방 홍수 관리 기관과의 협조 뿐만 아니라, 지하수 지속 가능성 및 지역 홍수 관리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c) 부서는 지원금을 수여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잠재력.

(2) 지하수 저장, 신뢰성, 재충전 또는 연계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잠재력.

(3)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잠재력.

(4)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6부 2.74편 (10720절 이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간 비용 효율성.

(d) 지하수 지속 가능성 기관을 비롯하여 86166절 (a)호에 정의된 적격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을 시행하는 지역 기관에 기금의 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e) 이 장에 따른 기금 수여를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 중 50% 이상이 현지 분담액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이 분담액 요건은 저소득 커뮤니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직접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나 지하수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f)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가 프로젝트의 결과로 어류 또는 야생 동물에 발생하는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고 인증해서 잠재적인 영향이 심각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조금도 제공될 수 없다.

(g) 적격 프로젝트에는 운하 및 침투 능력 향상과 같은 기반 시설 개선이 포함될 수 있다.

86113. (a) 본 조항의 목적상, "지구"는 보레고 수도국(Borrego Water District)을 의미한다.

(b) 86110절에 책정된 금액 중,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3,500만 달러($35,000,000)가 지구 보조금으로 수여된다.

(1) 보레고 밸리(Borrego Valley) 지하수 유역 Borrego Springs 분지의 경계 내에서 지하수 양수량을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6부 2.74편 (10720절 이하))에 의거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자발적 판매자로부터의 토지 및 지하수 개발권 취득. 획득한 토지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 비영리 단체 또는 향후 관리를 위해 다른 공립 교육 기관으로 양도될 수 있다.

(2) 도시 및 농업 수자원 보전을 포함한 수자원 최종 이용 효율성과 골프 코스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수자원 보전.

(3)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복원.

(4) 지하수 유역 재충전 및 재사용을 위한 우수 집수.

(5)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법(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t)을 시행하는 다른 지구 프로젝트.

(c) (1) 본 절을 이행하기 위해 지구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레고 스프링스(Borrego Springs) 커뮤니티는 심각한 저소득 커뮤니티이며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연간 50만명의 방문객으로 이 지역에 연간 약 4,000만 달러($40,000,000)의 수익을 올리고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Anza-Borrego Desert State Park)의 중요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정당하다.

(2) 지구는 (b)호의 (2) 및 (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수혜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d) 이러한 지원금의 조건으로, 지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해야 한다.

(1) 현재 관개되지 않은 토지는 관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관개된 토지에 더욱 집중적으로 관개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한다.

(2) 해당 지구에서 발생하는 물 구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그리고 이러한 개발을 수용하기 위해 지구가 실시하는 모든 수자원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을 요구한다.

(e) (1) 토지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러한 기금 중 최대 20%를 사용하여 토지의 해당 수익에 대한 유지 보수, 모니터링 및 복원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전용되는 신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본 조항에서 지원 받은 자금으로 토지에 대한 수익을 얻고 토지에 대한 수익을 다른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는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는 토지에서 해당 수익을 유지하도록 설립된 신탁 기금의 소유권도 이전해야 한다.

(3) 본 호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가 본 세목에 의거하여 신탁 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 기관 또는 조직은 부서에 기관, 부족 또는 조직이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인수할 토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토지에 대한 수익이 부적격이거나 토지에 대한 수익이 본 조항에서 확장 제공된 자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구 또는 비영리 단체가 판단한 경우, 신탁 기금 및 미지출된 이자는 지구로 책정된다. 지구로 상환된 자금은 본 장에 의거한 프로젝트에만 활용될 수 있다.

(f) 본 조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금은 지구가 공원의 지하수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의 개발 또는 관개를 방지하기 위해 안자-보레고 사막 주립공원(Anza-Borrego Desert State Park) 인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에 부여될 수 있다. 이 토지는 지구의 경계선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지만, 보레고 스프링스(Borrego Springs) 커뮤니티와 공원 방문객을 위한 모든 식수원인 보레고 밸리(Borrego Valley) 지하수 유역의 보레고 스프링스(Borrego Springs) 분지 경계 내에 있어야 한다. 토지는 야생 동물 서식지로 사용될 수 있다.

(g) 지구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8장. 야생 생물을 위한 물, 퍼시픽 플라이웨이 복원, 동적 서식지 관리

86120. 하천, 강, 야생 동물 피난처, 습지 서식지 및 하구에서 어류 및 야생 동물을 위한 조건을 개선하도록 자발적 판매자로부터 수자원을 획득하고 저장 및 인도 권리를 얻기 위해 기금에서 총 3억 달러($300,000,000)가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이 조항에서 이하 "위원회")에 책정된다.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개선법(Central Valley Project Improvement Act)(공법(Public Law) 102-575의 타이틀 34)의 물 전달 목표를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야생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취득, 장기 임대 계약 또는 수자원 권리의 이전을 준비할 수 있다. 판매, 양도 또는 저장이 어류 및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구매한 수자원 또는 저장권을 판매, 이전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어류 및 야생 동물을 위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해에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수자원 또는 전달 권리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 절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물 판매 수익금은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위원회에 직접 책정된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의하여 승인된 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자원 또는 전달 권리의 판매, 임대 또는 이전에서 얻은 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장에 따라 지출된 자금을 사용하여 수자원을 취득하는 것은 어업, 야생 동물 또는 생태계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만 사용해야 한다.

86121. (a) 사유지의 어류 및 야생 동물을 위한 수질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5,000만 달러 ($50,000,000)가 이 기금에서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에 책정된다.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는 민간 토지에 대한 보존 조치나 자발적 서식지 크레딧 교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어류 및 야생 동물에 필요한 매우 다양한 양의 물에 적절히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b)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는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 6.5장(1650절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식지 복원 및 수질 개선 사업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방식의 승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조항에서 제공한 자금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

86122. (a) 연안 및 센트럴 밸리 연어 및 무지개송어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총 3억 달러 ($300,000,000)가 기금에서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 (Wildlife Conservation Board)로 책정된다.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는 California 멸종 위기종에 관한 법률(어획 및 수렵법 (Fish and Game Code) 3부의 1.5장(2050절 이하)) 또는 연방 연방 멸종 위기종에 관한 법률 (Endangered Species Act)(16 USC Sec.1531 et seq.)에 따라 등록된 연어 및 무지개송어의 복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연어 어업을 강화하고 어획 및 수렵법 (Fish and Game Code) 6부 1편 8장(6900절 이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b) 본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금액 중, 강의 주류를 막고 있는 댐이 있는 새크라멘토 밸리(Sacramento Valley)의 강에서 어류 통로를 개선하고 소하성 연어류 서식지, 특히 봄에 방류하는 연어의 치어 사육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자본 지출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 기관에 대응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달러($100,000,000)를 지출한다.

(c) 본 조항에 의해 책정된 금액 중 최소 1억 달러 ($100,000,000)는 새크라멘토(Sacramento) 및 산 호아킨(San Joaquin) 강 및 그 지류와 및 삼각지 (Delta)에 어망을 설치하여 취수에서 소하성 어류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2017년 6월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이 발표한 새크라멘토 밸리 연어 회복성 전략(Sacramento Valley Salmon Resiliency Strategy)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프로젝트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가 배정되며, 추후 수정될 수 있다.

86123. (a) 다음과 같이 향후 수정될 수 있는 센트롤 밸리 합작 구현 계획(Central Valley Joint Venture Implementation Plan)에서 확인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식지 취득, 지역권, 복원을 통해 철새를 보호하는 프로젝트와 야생 동물 피난처 및 야생 동물 서식지에 물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2억 8,000만 달러($280,000,000)의 기금이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책정된다.

(1) 사유지에 대한 보전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2) Sacramento 강 유역 강변 및 습지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

(3) 산 호아킨(San Joaquin) 및 툴레어(Tulare) 유역 강변 및 습지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

3

(b) 본 조항에 의거하여 책정된 금액 중,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4부 1편 2장 7조(3460절 이하)에 따른 California 주 물새 서식지 프로그램(California Waterfowl Habitat Program),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의 California 토지 소유자 인센티브 프로그램(California Landowner Incentive Program),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의 영구 습지 지역권 프로그램(Permanent Wetland Easement Program), 그리고 1018절에 의거하여 승인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휴한지에서 물새 보금자리 및 기타 야생 동물 서식지의 설립 또는 향상을 실시할 목적으로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3467절에 따라 설립된 California 주 수자원 서식지 보전 계좌(California Waterfowl Habitat Preservation Account)에 4,000만 달러($40,000,000)를 예치해야 한다.

(c) 본 조항에 의거하여 책정된 금액 중, 민간 토지 소유자와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수렵 및 야생 생물과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1572절에 따라 설립되고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에 의해 관리되는 레크리에이션 향상을 위한 공유 서식지 연대(Shared Habitat Alliance for Recreational Enhancement, SHARE) 계좌에 1,000만 달러($10,000,000)를 예치해야 한다.

(d) 본 조항에 의거하여 책정된 금액 중, 최소 1억 1,000만 달러($110,000,000)는 연방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개선법(Central Valley Project Improvement Act)(공법(Public Law) 102-575의 타이틀 34)의 3406절 (d)호의 조항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야생 생물 피난처의 취득 및 물 공급, 관련 하부 구조 프로젝트에 지출된다.

8.6장. 새크라멘토 지역 수질 안정성 및 서식지 보호

86124. (a) 워터 포럼 계약(Water Forum Agreement)의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Sacramento Area Water Forum을 대신하여 지역 수자원국(Regional Water Authority) 및 Sacramento 시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기금에서 1,000만 달러($10,000,000)를 부서에 책정한다. 적격 프로젝트로에는 American 강 하류에서 흐름 및 기온 조건과 서식지를 개선하거나, 용수 사용 효율성 및 보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건기 물 공급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 통합을 개선하는 시설, 연구 및 기타 조치가 포함된다.

(b) 지역 수자원국(Regional Water Authority) 및 수자원 포럼(Water Forum)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연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승인해야 한다. American 강 하류의 수온 상태를 개선하고 물 공급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자원 포럼(Water Forum)의 공동 목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한다. 기관은 상수도 및 수자원 효율성 프로젝트의 수여자가 된다. 새크라멘토 시(City of Sacramento)는 수자원 포럼(Water Forum)을 대신하여 환경 보호, 수온 연구 및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c) 프로젝트 패키지에 할당된 총액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이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기금은 새로운 지표수 저장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저수지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출될 수 없다.

9장. 만 지역 지역 수질 신뢰성

86125.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지역 신뢰도 가뭄 비상 계획(San Francisco Bay Area Regional Reliability Drought Contingency Plan)에 포함된

최종 완화 프로젝트 목록(Final Mitigation Project List)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뭄 공급 신뢰성, 음용수 품질,비상 저수지 분야에서 지역 전반의 지표수 저장 혜택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설을 위해 만 지역 신뢰성 파트너십(BARR)으로 알려진 총 8개 수자원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5,000만 달러($250,000,000)가 기금에서 부서로 책정된다. 콘트라 코스타 수자원 지구(Contra Costa Water District)는 BARR 파트너십이 보조금 상환 시점에 직접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관리 구조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지역 신뢰도 가뭄 비상 계획(San Francisco Bay Area Regional Reliability Drought Contingency Plan)에 참여한 수자원 기관은 나열된 프로젝트에 대한 기금을 결정하고 지정할 것이지만,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된 금액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책정된 기금은 새로운 지표수 저장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저수지 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출될 될 수 없다.

10장. 향상된 수질 운송 및 수자원 보존

86126. 가뭄은 완화되었지만 샌 호아킨 밸리 (San Joaquin Valley)를 포함한 주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가뭄의 영향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물 사용자에 대한 가뭄 조건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새크라멘토-산 호아킨 삼각지(Sacramento-San Joaquin Delta)에서의 양수를 제한하는 법적 요건이었다. 가뭄과 양수 제한의 결과 중 하나로는 감소된 지표수 공급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수 양수가 상당히 증가한 사실이었다. 지하수 양수의 증가로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우물이 말라가고 지표면이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히 산 호아킨 밸리 (San Joaquin Valley)의 동쪽면에서 발생했다. 프리란트-컨(Friant-Kern) 운하는 수비 수량 및 지하수 재충전을 위해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의 60%를 상실했다. 운반 능력이 회복되고 증가하지 않는다면, 지반 침강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저소득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업 증가 방지, 지하수 안정화 및 California 주에 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주 투자로 인해 중요한 공공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86127. 마데라(Madera) 및 프리란트-컨(Friant-Kern) 운하의 복원 및 증가된 운송 능력을 포함하여 물 운반 능력의 중요 개선함으로써 지하수 재충전 능력 향상, 홍수 물의 운송 및 이용 개선, 그리고 수자원 보전의 효과를 얻도록 기금에서 총 7억 5,000만 달러($750,000,000)가 프리란트 수자원국(Friant Water Authority)에 승인되었다.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을 통한 개선 사업은 해당 주법 및 연방법과 계약에 의거해서 완료되어야 한다.

86128.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080.2절에 인용된 산 호아킨(San Joaquin) 강을 복원하는 합의서의 11호에 정의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에 총 1억 달러($100,000,000)가 책정된다. 지출이 실행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착수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86129. 바커 슬라우(Barker Slough)에서 노스 베이 수로(North Bay Aqueduct)로 물길을 전환함으로써 나열된 어류종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 공급되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스 베이 수로(North Bay Aqueduct)의 물길을 Sacramento 강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공공 혜택이 있을 것이다.

86130. 명시된 어류종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고 수로의 물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더 높은 품질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Sacramento 강에서 노스 베이 수로(North Bay Aqueduct)로의 물길 전환을 계획하기 위해 총 500만 달러($5,000,000)가 기금에서 부서로 책정된다.

11장. 오로빌 댐 홍수 안전

86131. 오로빌 댐(Oroville Dam)은 새크라멘토 밸리(Sacramento Valley)에 홍수 통제를 제공한다. 오로빌 댐(Oroville Dam)에 홍수 통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로 빌 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공공 수자원 기관의 의무가 아니었다. 오로빌 댐의 홍수 조절 기능은 연방 정부가 부담했다.

86132. 오로빌 댐(Oroville Dam) 방수로의 수리 및 개전을 위해 총 2억 달러($200,000,000)가 기금에서 부서로 책정된다.

86133. 총 2,100만 달러($21,000,000)가 기금에서 부서로 책정된다. 셔터 버터 홍수 조절 기관(Sutter Butte Flood Control Agency)과 협력하여 Live Oak와 Verona 사이의 Feather 강 퇴적물 관리 및 제거를 위해 1,500만 달러($15,000,000)를 지출해야 한다. 이 기금 중 600만 달러($6,000,000)는 대한 셔터 버터 홍수 조절 기관(Sutter Butte Flood Control Agency)에 하류 홍수 통제 및 생태계 복원을 제공하는 오로빌 야생 동물 지구(Oroville Wildlife Area) 홍수 방지 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으로 수여된다.

86134. 응급 서비스부(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의 표준화 응급 관리 시스템(SEMS)에 따른 비상 사태 대비 조정 및 통신을 위한 자본 지출 프로젝트 및 장비를 위해 Butte 카운티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00만 달러($1,000,000)가 기금에서 부서로 책정된다.

12장. 일반 조항

86151. (a) 자발적인 서식지 복원, 수질 개선 및 다원적 범람원 복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이 부의 각 조항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 6.5장(1650절 이하)의 조항(해당 장의 존재 여부에 상관 없음) 및 자발적인 서식지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적 허가를 비롯한 부처 간 조정을 장려하고 효율적 프로젝트 승인 및 허가 메커니즘을 개발 및 활용하여 프로젝트 지연을 피하고 프로젝트 시행에 소비되는 금액을 최대화한다.

(b) 취득, 지역권 확보, 복원 또는 기타 프로젝트를 통해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는 California 일부를 포괄하는 연방 철새 공동 사업(Migratory Bird Joint Venture) 파트너십이 수립한 계획 및 권고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c) 본 호에 의거하여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은 기술 및 보조금 신청 지원을 포함하여 해당 기금의 신청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은 해당 커뮤니티를 돕는 비영리 단체 및 지역 공공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d) 본 호에 따라 기금을 수령한 기관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9003절에 의거하여 자원 보존 지구의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다.

(e) 기관은 비용 분담의 일부로서 총 프로젝트 비용의 25%까지 현물 기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기관은 비용 분담의 일부로서 할인 매각한 토지의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

(f) 토지 취득 제안을 고려하는 기관은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상태로 토지를 유지하고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변 토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토지 최종 소유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g) 이 부에 따라 제정된 신탁 기금은 제도 자금 통일 신중 관리법(Uniform Prudent Management of Institutional Funds Act)(유언검인법(Probate Code) 9부 7편(18501절 이하))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h) 습지, 지역권, 복원 또는 기타 프로젝트를 통해 주로 강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2부의 California 강변 서식지 보존 프로그램(California Riparian Habitat Conservation Program) 4.1장(1385절 이하)에 의해 수립된 계획과 권고안을 고려해야 한다.

(i) 관리 기관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제안자가 86166절 (a)호에 정의된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적격 단체이거나 프로젝트가 저소득 커뮤니티에 이익이 된다.

(2)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이 100만 달러($1,000,000) 미만이다.

(j) 적격 보조금 비용은 연방 관리 및 예산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지침서에 정의된 간접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k) 특정 프로그램이나 수혜자를 위해 지정된 기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현행 주법 및 규정과 본 부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로 기금의 지출 또는 이전을 신속히 해야 한다. 이 부의 목적은 자금의 지출 또는 이전이 효율적, 비용 효과적 및 신속하며 일반적으로 요청된 기금에 대해 수령인의 자격이 입증된 후 90일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86152. 기관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본 목에 따라 제안된 지출로 인해 인적 및 환경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정량화해야 한다. 기관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본 목에 따라 제안된 지출로 인해 인적 및 환경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의 품질 향상을 계량화해야 한다.

86153. 본 부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본 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정부 기관은 북부 및 남부 California, 연안 및 내륙 지역, 시에라(Sierra) 및 캐스케이드(Cascade) 산기슭의 산악 지역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적격 프로젝트에 평등하게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86154. 이 부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는 보조금 제안서가 지역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조건으로 통합된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의 일관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통합된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보조금 제안에 낮은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

86155. (a) 이 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중간 가구 소득이 주 평균 가구 소득의 100% 미만인 지역의 공공 기관은 해당 관할 구역 내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35% 미만의 대응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지방 공공 기관에 지불을 유예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공공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정부 기관은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건설하기 전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b) 본 조항의 어떠한 부분도 주정부 기관이 비용 공유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 커뮤니티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86156. 이 부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상환은 이자 지급 및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대출을 승인한 장 또는 조항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86157. (a) 이 부에서 제공되는 해당 자금을 수령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프로젝트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을 설립하고 주정부의 채권 책임 인터넷 웹 사이트에 프로젝트의 상태와 자금의 모든 사용처를 보고해야 할 책임을 진다.

(b) 이 부에서 제공하는 기금 책정을 받은 각 주정부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이 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한다.

(2) 86003 조항에 따른 기관 보고에 (a)호에 설명된 평가를 포함한다.

(3) 기금의 수혜자가 이 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정시에 지정된 시간 내에 완료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86158. (a) 주정부 기관이 이 부에 따라 수행한 프로젝트의 경우, 이 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각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최대 10%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설계, 선택 및 구현과 혜택의 확인에 필요한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이 부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적격 업체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설계, 선택 및 구현에 필요한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본 지출 프로젝트 또는 보조금 프로젝트를 위해, 이 절은 "예비 계획", "시공도" 및 "건설"을 위해 기관이 보통 사용하는 기금을 달리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b) 건설 관리와 관련된 허가 및 계획 점검 수수료와 합리적인 행정 및 간접 프로젝트 비용은 건설 비용의 일부로 간주된다.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에 할당된 프로젝트 비용과 직접 및 간접 관리 비용은 프로젝트 예산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86159. 정부법(Government Code,) 16727절에도 불구하고, 6장(86080절 이하) 및 8장(86120절 이하)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해당 장의 목적과 일치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법(Government Code) 22064절에 설명된 자금을 상환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에 사용될 수 있다.

86160. 이 부에서 주정부 기관에 할당된 기금의 총 5%를 초과한 금액은 이 부에 명시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비용을 사용될 수 없다.

86161. (a)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는 6부의 4.9편(12400절 이하)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지표 수 모니터링 데이터 시스템 또는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 시스템과 호환 및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집해서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유역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관리하는 주 유역 프로그램과 호환 및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집해서 보고해야 한다.

(b) 주정부 기관은 이 부에 따라 보조금이나 차관을 제공할 때 지역, 주 및 연방 정부의 허가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특정 지출을 포함시킬 수 있다.

(c) 이 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각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최대 1%는 이 부에 대해 제공된 다른 금액에 추가하여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급수, 수자원 관련 서식지 및 수질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

86162. (a) 이 부에 의거한 보조금 또는 대출을 제공하기에 앞서, 이 부에 따라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이 부가 제공하는 자금을 책정 받은 각 주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모집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여할 각 양도인 대출의 달러 단위 금액에 대한 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지방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의 합리적인 간접 비용 또는 간접 비용의 회수에 대한 금지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주 기관이 이 부의 요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권유 및 평가 지침을 이전에 개발하고 채택한 경우, 그런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부담하는 간접비는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이 부에 따른 기금 제안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b) 보조금 또는 대출을 지급하기 전에, 주정부 기관은 지침을 완성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세 차례의 지역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은 공공 회의보다 최소 30일 전에 기관의 인터넷 웹 사이트에 권유 초안과 평가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한 번의 회의는 북부 California의 한 장소에서, 한 번의 회의는 California의 센트럴 밸리의 한 장소에서, 한 번의 회의는 남부 California의 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이 세 지역 중 하나 이상에서 관할권이 없는 기관은 관할권이 없는 지역 또는 지역에서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채택 시, 주정부는 지침의 사본을 주 의회 재무 위원회와 해당 정책 위원회에 제출한다.

(c) 이 부에 따라 프로젝트를 요청하기 최소 45일 전에, 이 부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는 주정부 기관은 웹 사이트에 보조금 신청자를 위한 지침에 관한 전자 양식을 게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모집 및 평가 지침에는 이 부의 해당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한 기준 만이 포함된다.

(d) 이 부의 어떠한 부분도 기존의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86163. 이 부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각 프로젝트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이 부에 따른 공적 기금의 투자는 기금을 분배하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주 전체에서 공적 기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b) 이 부가 승인하는 기금의 배정과 지출에서 우선순위는 민간 기금, 연방 기금 또는 지역 기금을 활용하거나 가장 큰 공공 혜택을 가져오는 프로젝트에 주어질 것이다. 이 부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기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기관은 소규모 공공 기관 및 저소득 커뮤니티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비용 분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c) 자금을 지원 받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제공받은 근거가 되는 장 또는 조항의 목적을 증진해야 한다.

(d) 이 부에 따라 수자원에 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결정을 알린다.

(e)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가 2018년 수도 및 수질 개선법(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Act)의 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f)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목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은 정부법(Government Code) 65041.1절에 따른 주 계획 우선 순위와 정부법(Government Code) 65080절 (b)호 (2)항 (B)목의 조항에 따른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증진해야 한다.

(g)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유역 목표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0.2 (10200절 이하) 및 10.4부(10330절 이하)에 따른 영속 보전 지역의 사용, 자발적 서식지 크레딧 교환 방식, 그리고 사유지의 보전 조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보전 지역권 및 자발적인 토지 소유자 참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86164. 이 부에서 규정된 기금은 삼각지 운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로부터 혜택을 보는 물 관련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86165. (a) 이 부는 출원지, 출원지 유역, 출원지 카운티 또는 법에 따라 1914년 12월 19일 이전에 지정된 수자원 권리를 포함한 기타 수자원 보호를 약화, 훼손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는 2부 2편 1장 1.7조(1215절 이하), 10505, 10505.5, 11128, 11460, 11461, 11462 및 11463절, 그리고 12200절부터 12220절까지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b) 이 부의 목적상, Sacramento 강 수문 지역 또는 삼각지(Delta)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Sacramento 강 수문 지역에서 우회되어 전달된 물을 사용하는 지역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적상 건설된 시설을 통한 해당 물의 우회 및 운송 때문에 인접한 지역에 있다거나 그로부터 물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c) 이 부의 어떠한 사항도 35부 4편 2장(85320절 이하)에 따라 건설되거나 운영되는 새로운 운송과 관련된 청원을 포함하여, 2부 2편 10장(1700절 이하)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는다.

(d)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수자원 권리 우선사항, 106 및 106.5절에 따라 자치 단체의 이익에 제공되는 보호, 그리고 수자원 권리의 변경 등을 포괄하여 주 의회의 물 배분 및 물 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절차적 및 실질적인 기존의 법적 보호를 대체, 약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부의 어떠한 사항도 California 주 수자원 권리에 대한 물 또는 법원의 기존 관할권의 전환 및 사용을 규제하는 주 의회의 기존 권한을 확대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는다.

(e) 이 부의 어떠한 사항도 California 수려한 자연하천 보전법(Wild and Scenic Rivers Act)(공공 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5부 1.4장(5093.50절 이하)) 또는 연방 수려한 자연하천 보전법(Wild and Scenic Rivers Act)(16 U.S.C. Section 1271 et seq.)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부에 따라 승인된 기금은 California 수려한 자연하천 보전법 및 연방 수려한 자연하천 보전법에 따라 야생의 수려한 자연 하천이 받을 수 있는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사용할 수 없다.

(f) 이 세부의 어떠한 사항도 2009년 새크라멘토-산호아킨 삼각지 재건법(Sacramento-San Joaquin Delta Reform Act of 2009)(35 (85000절 이하)) 또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2.3부 (32300절 이하)를 포괄하는 기타 해당 법을 대체, 제한, 또는 달리 변경할 수 없다.

(g)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는 2000년 자연 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Natural Heritage Preservation Tax Credit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8부(37000절 이하))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에 따라 책정된 기금으로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정되지 않은 기금은 2000년 자연 유산 보존 세금 공제법(Natural Heritage Preservation Tax Credit Act)에 따라 일반 기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h) 이 부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과 그러한 기금의 배정이나 이체는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3부 9장(2780절 이하)의 목적을 위한 기금 이체로 간주하면 안 된다.

86166. (a) 이 부에 따라 보조금, 융자 및 계약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공공 기관, 대학 관리 국립 연구소를 포함하는 주립 대학, 자원 절약 지구, 비영리 단체, 공공 시설, 상호 용수 회사,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16275절 (h)호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 수자원법(Water Code) 10617절에 정의된 도시 수도 공급 업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California의 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연방 정부 기관, 그리고 북이 원주민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의 California 원주민 협의 목록(California Tribal Consultation List)에 등록된 주 인디언 부족이다. 이 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 기관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 유형을 계획, 설계 및 개발 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컨설팅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적격 지원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b) (1) 이 부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공익 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 또는 상호 수도 회사가 규제하는 공공 사업 기관이 제안한 사업은 명확한 공적 목적을 가져야하며 프로젝트는 물 시스템의 투자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이 부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도시 수자원 공급자는 도시 수도 관리 계획법(Urban Water Management Planning Act)(6부의 2.6부 (10610절 이하))에 따라 도시 수도 관리 계획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3) 이 부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농업 수자원 공급자는 농업 수도 관리 계획법(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Act)(6부의 2.8편 (10800절 이하))에 따라 농업 수도 관리 계획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4) 10608.56절에 따라 농업 수자원 공급자 또는 도시 수자원 공급자는 6부의 2.55편(10608절 이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이 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5) 이 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 따라 기금을 수여받는 기관은 100만 달러($1,000,000) 미만의 예산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100만 달러 ($1,000,000) 이하의 지원금을 제공할 때 기관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보조금이 본 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경우 비용 분담 요건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86167. 가능한 경우, 이 부에 따라 자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14507.5절에 정의된 바에 따라 California 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또는 공인 커뮤니티 보전 단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 기관은 보존 또는 복원 프로젝트에서 California 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또는 공인된 커뮤니티 보전 단체, 또는 퇴역 군인, 위탁 수혜자, 농장 노동자, 또는 지역 청소년에 대한 직업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 비영리 단체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86168. 이 부가 제공하는 자금을 지원 받는 각 주정부 기관은 주정부의 채권 책임성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성공의 척도, 저소득 커뮤니티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익을 주는 척도, 이러한 척도를 달성 진행 상황, 이 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상태, 그리고 이 부에 따라 주정부 기관이 받는 기금의 모든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천연 자원 관리청(Natural Resources Agency)

장관은 매년 본 목에 따른 입법부 지출과 이러한 지출에서 얻은 이익을 보고해야 한다.

86169. 86192절에 따라 발행된 모든 차환 채권의 수익금을 제외하고 이 부에 따라 발행 및 매각되는 채권의 수익금은 주 재무국이 설립한 2018년 급수 신뢰성 및 가뭄 보호 기금(Water Supply Reliability and Drought Protection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86169.1.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급수 신뢰성 및 가뭄 보호 기금(Water Supply Reliability and Drought Protection Fund)에 예치된 자금은 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본 부의 목적상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본 목에 따라 승인되고 사용 가능한 기금은 본 목에서 제공된 대로만 사용 및 지출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입법부 또는 주지사에 의해 책정 또는 양도될 수 없다.

86170.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3부 1편의 3.5장(11340절 이하)은 본 목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6171. (a) 본 목이 제공하는 기금은 본 목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완화 비용을 제외하고 환경적 완화 비용을 지원하거나 지불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 본 목이 제공하는 기금은 환경 개선 또는 기타 공공 혜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c) (a)와 (b)호에도 불구하고, 본 목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지출이 제한되는 환경적 영향의 완화 비용은 이 부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지불될 수 있다.

(d) 이 부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삼각지 운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6172. 이 부를 이행하는 모든 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효율성, 내구성 및 향상된 환경 품질이 결합된 재정 지원 프로젝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86174. 이 부의 6장(86080절 이하)에 따른 취득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86177. 프로젝트가 비용 효과적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완전한 이익 및 비용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86178. 본 목을 이행하는 기관은 물 공급, 산불 감소, 서식지 개선, 침입형 잡초 방제, 홍수 통제, 토지 이용 및 위생 등을 포괄하여 여러 전략과 관할 구역의 통합을 지원하는 의사 결정 지원 도구를 포함하는 새롭거나 혁신적인 기술 또는 방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86179. 공무원,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와 어류 및 야생 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또는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 사이에서 본 목에 따라 또는 26.7부(79700절 이하)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 1501.5절의 요구 사항에 따르는 계약으로 간주되며 공공 사업 또는 공공 개선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법(Labor Code) 2부 7편 1장(1720절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6179.1. 일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강 어귀 연구소-수산 과학 센터(San Francisco Estuary Institute-Aquatic Science Center)에서에서 2016년에 준비한 보고서 "A Delta Renewed: A Guide to Science-Based Ecological Restoration in the Sacramento-San Joaquin Delta"와 일관성을 가지는 활동으로 삼각지 및 그에 의존하는 종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대한 기금 지출에 우선 순위를 배정해야 한다.

86179.2. 이 법의 시행일 이후 이 법 또는 26.7부(79700절 이하)에 따라 기관이 보조금을 수여함에 있어서, 지방 공공 기관, 인디언 부족 또는 비영리 단체가 부담하는 간접비는 상환 받을 수 있으며 기금 제안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적격 보조금 비용은 연방 관리 및 예산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지침서에 정의된 간접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보조금은 조직의 연방 협상 간접 비용 요율이 존재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 간접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협상된 요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직은 관리 및 예산부(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정한 수정된 총 직접비의 10%에 해당하는 기본 간접비를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86179.3. 본 목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보조금도 홍수 위험에 대한 커뮤니티의 노출 증가를 완화하지 못하거나 공공 홍수 보호 시설의 순수한 홍수 운송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86179.4. 토지 취득을 위한 지원금을 수여함에 있어서,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는 부동산세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13장. 재무 조항

86180. (a) 86192절에 의거하여 발행된 차환 채권의 금액을 제외하고, 총 88억 7,700만 달러 ($8,877,000,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채권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발행된 목적을 수행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 16724.5절에 의거하여 일반 의무 채권 회전 기금(General Obligation Bond Expense Revolving Fund)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매각될 수 있다. 판매, 발행, 양도된 채권은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구속력있는 채무이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때가 되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California 주는 전적으로 보증한다.

(b) 주 재무국장은 86182절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수시로 매각해야 한다. 이 채권은 정부법 (Government Code) 16731절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할 하나 이상의 결의안에 명시될 약관에 따라 판매되어야 한다.

86181. 본 목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주정부 일반 책임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 규정된 대로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되며, 이 법의 모든 조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6727절 (a) 및 (b)호를 제외하면 개정본이 적용된 상태로 본 채권 및 본 부에 적용되며 본 부에 통합되어 본 파트의 부에 명시된 것처럼 간주된다.

86182. (a)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 의거하여 이 부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이에 급수 신뢰성 및 가뭄 보호 재정 위원회(Water Supply Reliability and Drought Protection Finance Committee)를 창설한다. 이 부의 목적상, 급수 신뢰성 및 가뭄 보호 재정 위원회 (Water Supply Reliability and Drought Protection Finance Committee)는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 (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b) 재무 위원회는 재무이사(Director of Finance), 재무국장(Treasurer) 및 관리자(Controller)로 구성된다. 다른 법률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 없이, 모든 회원은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마치 그 회원이 직접 참석한 것처럼 모든 목적에 대해 행동하게 할 수 있다.

(c) 재무국장은 재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d) 재무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의한다.

86183. 재무 위원회는 이 부에 명시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이 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될 채권의 양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채권 전부가 반드시 어떤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6184. 주 일반 채무 채권법의 목적상, "위원회 (board)"는 정부법 16722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연자원국장(Secretary of the Natural Resources Agency)을 의미한다.

86185. 주의 보통 세입 외에, 매년 다른 주 세입 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매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의 총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 추가적인 합계 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세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책임있는 공무원의 의무이다.

86186. 정부법 13340절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 목적상 다음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로써 주 재무국의 일반 기금에서 전용된다.

(a)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되어야 함에 따라, 이 부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총액.

(b) 회계 년도와 관계없이 전용된, 86189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총액.

86187. 위원회는 본 목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부법(Government Code) 16312절에 따라 공동자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 86189절에 따라 인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융자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이 목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86192절에 따라 승인된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위원회가 결의안으로 매각을 승인한 미결 채권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된 금액은 이 부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86188. 이 부 또는 주 일반채무채권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지정된 조건 하에서 연방 세무 목적상 총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연방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 자문 의견을 포함하는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 재무국장은 그런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하여 연방 법률 하의 다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하다면, 투자된 채권 원리금과 그런 원리금에 대한 투자 이익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고,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그런 원리금이나 수익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지휘하거나 투자와 그런 채권 원리금의 사용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6189. 본 목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86187절에 따른 차관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무 이사는 86192절에 따라 승인된 차환 채권을 제외하고 이 파트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매각을 승인 받은 비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합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절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자금은, 이 부를 실행할 목적으로 채권을 판매한 데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공동자금 투자 계정에 있는 자금으로 벌어들인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86190. 이 부에 따라 판매된 채권에 대한 액면초과액과 발생 이자에서 생긴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기금에 남아있어야 하고, 채권 이자 지불을 위한 대금으로 일반 기금에 이체될 수 있어야 한다. 단, 액면초과액에서 생긴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기 전에 채권 비용 지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86191.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 따라, 액면초과액을 포함헌 채권 발행 비용은 채권 수익에서 지급된다. 채권 발행 비용을 채권 판매로부터 받은 액면초과액에서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 이 비용은 이 부를 통해 자금이 조달된 각 프로그램에 해당 채권 판매에 비례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86192. 이 부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은 주 일반채무채권법의 일부인, 정부법 타이틀 2의 4부 3편 4장 6조(16780절 이하)에 따라 상환될 수 있다. 이 부에 따른 채권 발행에 대한 주 투표자들의 승인은 이 부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이나 이전에 발행된 차환 채권의 환불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 승인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절이 승인한 것과 같이 차환 채권의 수익금으로 차환된 모든 채권은, 법률에 의해 허락된 정도까지 그리고 때때로 수정되는 결의안에 명시된 정도까지, 법률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채권 차환을 승인할 수 있다.

86193. 이 부가 승인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은 이 용어가 California 헌법 XIII B조에서 사용된 "세금의 수익금"이 아니므로, 이런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가 부과하는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

2절. 이 법의 1절은 2018년 11월 6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총선에서 2018년 수도 및 수질 개선법(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Act)에 대한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3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수도 공급 안정성 및 가뭄 보호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의 즉각적인 발효가 필요하다.

3절. 상충되는 조항.

(a) 2018년 수도 및 수질 개선법(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Act)의 조항과 의도는 본 조항과 상충되는 주법, 법령, 규정 또는 정책보다 우선하며, 이 법의 정책과 의도는 그러한 상충되는 법률, 법령, 규정 또는 정책보다 우선한다.

(b) 이 부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 투표 조항으로 대체되고, 상충하는 투표 조항이 나중에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이 법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도이다.

(c) 본 법안이 다루는 사항을 규율하는 경쟁 또는 상충 발의안이 더 많은 찬성표를 받는 경우에도 이 법안에서 상충되지 않는 모든 조항은 유효하다.

4절. 이 법의 조항 또는 적용이 무효인 경우, 무효 조항은 법에서 무효 조항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5절. 2799.7절은 어획 및 수렵법(Fish and Game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799.7. 2787절 (f)호는 2795절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의 다른 절과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에도 불구하고, 2795절에 의거하여 이전된 기금은 수자원법(Water Code) 38부 8장(86120절 이하)의 목적상 야생 동물 보호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에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6절. 8조(11860절 이하)는 수자원법(Water Code) 6부 3편 9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8조. 온실 가스 감축 기금

11860. (a)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과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39710-39723절을 비롯한 기타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불한 비용, 취득한 표준 장비 비용, 그리고 보건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25.5부(38500절 이하)을 이행한 결과로 수자원 관리국(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이 구매한 전력의 증가 비용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6428.8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온실 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서에 책정되며, 지불한 비용, 취득한 표준 장비 비용, 그리고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5목을 이행한 결과로 남부 California 수도권 수역 (Metropolitan Water District of Southern California)(개정안에 따라 1969절 209장)이 구매한 전력의 증가 비용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6428.8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온실 가스 감축 기금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구에 책정된다.

(b) 본 조항에 따라 부서에 책정된 기금은 주정부 수자원 개발 시스템(Stat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내에서 지출되고, 주정부 수자원 개발 시스템(Stat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관할권 내에서 수자원 보전 프로그램으로 지출된다.

(c) 본 조항에 따라 지구에 책정된 기금은 지구의 물 저장, 처리, 운송 및 분배 시스템 내에서 지출되고, 해당 지구의 관할권 내에서 소비자 물 절약 프로그램으로 지출된다.

(d) (b) 및 (c)호에 의해 승인 된 소비자 물 절약 프로그램 중에서 79505.5절 (a)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커뮤니티와 79702절 (k)호에 정의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e)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지출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6부 2편 4.1장(39710절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서와 지구는 당해년도 계획과 함께 전년도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주 대기 자원국(State Air Resources Board)에 제공한다.

(f) 이 편에서 규정된 기금은 새로운 삼각지 운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절에서 제공되는 기금은 지표수 저장 시설의 건설 비용을 지불하거나 California 수로 또는 Colorado 강 수로의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로부터 혜택을 보는 물 관련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g) 이 절에 따라 수행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1861. (a) 정부법(Government Code) 13340절과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39710-39723절을 비롯한 기타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불한 비용, 취득한 표준 장비 비용, 그리고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5부(38500절 이하)을 이행한 결과로 콘트라 코스타 수자원 지구(Contra Costa Water District)가 구매한 전력의 증가 비용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6428.8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온실 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구에 책정되며, 지불한 비용, 취득한 표준 장비 비용, 그리고 보건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5부(38500절 이하)을 이행한 결과로 샌 루이스 및 삼각지 멘도타 수도국(San Luis and Delta Mendota Water Authority)이 구매한 전력의 증가 비용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6428.8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온실 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관에 책정된다.

(b) (1) 본 조항에 따라 콘트라 코스타 수자원 지구(Contra Costa Water District)에 책정된 기금은 지구 경계 내에서 확장되고, 해당 지구 내에서 소비자 물 절약 프로그램으로 지출된다.

(2) 본 조항에 따라 샌 루이스 및 삼각지 멘도타 수도국(San Luis and Delta Mendota Water Authority)에 책정된 기금은 기관의 물 저장, 처리, 운송 및 분배 시스템 내에서 지출되고, 해당 지구의 관할권 내에서 물 절약, 수질 개선, 물 처리, 물 공급 및 유사 수자원 프로그램에 지출된다.

(c) (b)세목에 따라 책정된 기금 중에서 79505.5절 (a)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커뮤니티와 79702절 (k)호에 정의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d)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지출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6부 2편 4.1장(39710절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구와 기관은 당해년도 계획과 함께 전년도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주 대기 자원국(State Air Resources Board)에 제공한다.

(e) 이 절에 따라 수행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거나,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발의안 4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1절. 6.3편(1179.81절 이하)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6.3편. 2018년 아동 병원 채권법(Children's Hospital Bond Act)

1장. 일반 조항

1179.81. (a) 이 편은 2018년 아동 병원 채권법(Children's Hospital Bond Act of 2018)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 California의 지역 아동 병원 네트워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어린이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100만건 이상, 아동은 가족의 지불 능력에 상관 없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c) 또한, 아동 병원은 소아 백혈병, 암, 심장 질환, 당뇨병, 겸상 적혈구 빈혈 및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생존율을 증가시킨 전문 치료 및 간호를 제공한다.

(d) 또한, 아동 병원은 소아과 의사, 소아 전문의 및 기타 아동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한 필수 교육을 제공하며, California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중요한 의학 연구를 실시한다.

(e) 그러나, 무상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되는 부담으로 인해 아동 병원 시설을 현대화 및 확장하고 소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신 의료 기술 및 특수 의료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f) 따라서, California 주 아동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 병원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이고 준비된 자금 출처가 필요하다.

1179.82절. 이 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기관"이라 함은 정부법(Government Code) 15431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California 건강 시설 금융국(California Health Facilities Financing Authority)을 의미한다.

(b) "아동 병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아래에 설명된 California 대학 일반 긴급 치료 병원.

(A) California 대학, Davis 어린이 병원.

(B) Mattel 어린이 병원, California 대학, Los Angeles.

(C) University 어린이 병원, California 대학, Irvine.

(D) California 대학, San Francisco 어린이 병원.

(E) California 대학, San Diego 어린이 병원.

(2) 정부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많은 수의 아동 및 California 주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Program) 자격이 있는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아동에게 종합적인 소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6편(1179.10절 이하) 또는 6.1편(1179.50절 이하)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California 비영리 법인 또는 이것의 운영 주체인 일반 긴급 치료 병원.

(c) "위원회"란 1179.91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아동 병원 채권법 재정위원회(Children's Hospital Bond Act Finance Committee)를 의미한다.

(d) "기금"이란 1179.83절에 의거하여 설립된 아동 병원 채원법 기금(Children's Hospital Bond Act Fund)을 의미한다.

(e) "보조금"이란 기관이 기금에서 이 편에 따른 프로젝트를 위해 아동 병원으로 또는 이 편에 따라 적격한 병원으로 분배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f) "프로그램"이란 이 편에 따라 설립된 아동 병원 프로그램(Children's Hospital Program)을 의미한다.

(g) "프로젝트"란 이 편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된 기금으로 재정 지원되거나 재융자되는 아동 병원에 대한 건설, 확장, 리모델링, 개조, 수리, 설비,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의미한다. "프로젝트"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는 아동 병원의 건설, 확장, 리모델링, 개조, 수리, 설비,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비용에 대한 상환이 포함될 수 있다. "프로젝트"에는 이 편의 자격이 되는 2개 이상의 참여 아동 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상기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2장. 아동 병원 프로그램

1179.83. 이 편에 따라 발행되고 매각되는 채권의 수익금은 이에 따라 창설된 아동 병원 채권법 기금 (Children's Hospital Bond Act Fund)에 예치된다.

1179.84. 아동 병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 병원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안정적이고 준비된 자금원을 제공하여 California 아동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공공의 목적을 지원하고 주 시민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증진할 것이다.

1179.85. 기관은 1179.82절 (g)호 또는 1179.86절 (c)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병원에 보조금을 수여할 권한을 가진다.

1179.86. (a)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금의 18%는 1179.82절 (b)호 (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병원에 수여되어야 한다.

(b)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금의 72%는 1179.82절 (b)호 (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 병원에 수여되어야 한다.

(c) 이 편에 따라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금의 10%는 (1) 복지및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14105.98절 (a)호 (25)항에 정의된 공립 병원, 또는 (2) California 비영리 법인이거나 이것의 운영 기관으로서 이 법규의 1250절에 따라 면허가 부여된 일반 긴급 치료 병원으로서 California 주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California Children's Services Program)에 대한 유자격 아동에게 소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은 유자격 병원의 소아과 프로그램을 건설, 확장, 리모델링, 개조, 수리 또는 설비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1179.82절 (b)호에 정의된 아동 병원은 본 목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본 목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이 2033년 6월 30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아동 병원의 신청이 가능하다. 기관은 본 목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채택해야 할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수여해야 한다.

1179.87. (a) 기관은 이 법이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본 편에 의거한 지원금을 수여하기 위해 서면 신청서를 개발해야 한다. 기관은 이 편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이 편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유자격 아동 병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 보조금은 정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아동과 저소득층 무보험 아동의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또는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2) 보조금은 아동 건강 관리 또는 소아 환자 치료 결과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3) 아동 병원은 저소득층 또는 일반 소아 환자에게 무상 또는 부분 유상 치료를 제공한다.

(4) 아동 병원은 취약한 소아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소아 병원은 소아과 교육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6) 프로젝트 준비 및 프로젝트 타당성의 입증.

(b) (1) 기금 신청서는 기관에 제출되어 이 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2) 기관은 60일 이내에 적시에 보조금을 처리하고 수여한다.

(c) 1179.82절 (b)호 (1)항에 명시된 아동 병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관은 해당 아동 병원에 수여되는 보조금 총액이 1179.86절 (a)호에 따라 모든 아동 병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금의 1/5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해당 아동 병원에 수여하지 않는다. 이 보조금 한도에도 불구하고, 1179.86절 (a)호에 따라 제공 가능하며 2033년 6월 30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기금은 1179.82절 (b)호 (1)항에 명시된 아동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d) 1179.82절 (b)호 (2)항에 명시된 아동 병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관은 해당 아동 병원에 수여되는 보조금 총액이 1179.86절 (b)호에 따라 모든 아동 병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서 1억 3,500만 달러($135,000,000)를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해당 아동 병원에 수여하지 않는다. 이 보조금 한도에도 불구하고, 1179.86절 (b)호에 따라 제공 가능하며 2033년 6월 30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기금은 1179.82절 (b)호 (2)항에 파악된 아동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e)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아동 병원이 결정하고 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의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f)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기관이 판단하기에 아동 병원이 보조금 수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관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편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아동 병원은 프로젝트 완료 인증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g) 기관이 기금에서 충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이 판단하기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항의 어떠한 부분도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h) 기관은 이 편의 목적상 사용 가능한 금액을 매년 결정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은 실비용과 1%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79.88. California 주 관리자는 채권 수익이 이 편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적시에 수여되고 채권 수익금의 수령자가 이 편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장하도록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3장. 재무 조항

1179.89. 차환 채권의 금액을 제외하고, 총 15억 달러($1,500,000,000)에 상당하는 채권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발행된 목적을 수행하고 정부법 (Government Code) 16724.5절에 의거하여 일반 의무 채권 회전 기금(General Obligation Bond Expense Revolving Fund)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매각될 수 있다. 판매, 발행, 양도된 채권은 주의 유효하고 구속력있는 채무이며,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때가 되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시에 지불할 것을 주는 전적으로 보증한다.

1179.90. 본 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주정부 일반 책임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 (정부 법령 타이틀 2, 4부 3편 4장(16720절 이하))에 규정된 대로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되며, 해당 법의 모든 조항은 본 채권 및 본 편에 적용되며 본 편에 통합되어 본 편의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간주된다.

1179.91. (a) 주 일반 채무 채권법 타이틀 2, 4부 3편 4장(16720절 이하)에 따른, 이 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 만을 위해, 아동 병원 채권법 재정위원회(Children's Hospital Bond Act Finance Committee)가 이로써 만들어진다. 이 편의 목적에 따라 아동 병원 채권법 재정위원회 (Children's Hospital Bond Act Finance Committee)는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관리자(Controller), 재무이사(Director of Finance), 재무국장(Treasurer) 또는 지정된 대표로 구성된다. 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의한다.

(b) 기관은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4부 3편 4장(16720절 이하))의 목적상 "위원회"로 지명되며, 이 편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1179.92. 위원회는 1179.84절에 명시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이 편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전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은 반드시 단일 시점에 발행 또는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179.93. 주의 보통 세입 외에, 매년 다른 주 세입 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점에, 매년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의 총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 추가적인 합계 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세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책임있는 공무원의 의무이다.

1179.94. 정부법 13340절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 목적상 다음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로써 주 재무국의 일반 기금에서 계속해서 책정된다.

(a) 원금과 이자가 만기가 되어 지불되어야 함에 따라, 이 편에 따라 발행되고 판매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총액.

(b)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1179.95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총액.

1179.95. 본 편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 이사는 이 편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매각을 승인 받은 비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합계

내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편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자금은, 이 편을 실행할 목적으로 채권을 판매한 데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1179.96. 매도한 채권에 대한 액면초과액과 발생 이자에서 파생되어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기금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채권 이자 지불을 위한 대금으로 일반 기금에 이체될 수 있어야 한다.

1179.97.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4부 3편 4장(16720절 이하)에 따라 채권 발행 비용은, 만약 있다면, 채권 수익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본 채권법을 통해 지원되는 각 아동 병원에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1179.98. 정부법(Government Code) 16312절에 따라, "위원회"는 이 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기업 어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승인된 형태의 중간 기금을 포함하는 대출을 공동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으로부터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금액은 이 편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 승인을 받은 위원회의 미결 채권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관은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출된 금액을 이 편에 따라 할당될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1179.99. 채권은 주 일반채무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의 일부인,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4부 3편 4장 6조(16780절 이하)에 따라 환불될 수 있다. 이 편에 따른 채권 발행에 대한 주 투표자들의 승인은 이 편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이나 이전에 발행된 차환 채권의 환불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발행 승인을 포함해야 한다.

1179.100. 이 편 또는 주 일반채무채권법(State General Obligation Bond Law)(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4부 3편 4장(16720절 이하))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한 이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총소득에서 면제된다는 채권 위원회 의견 하에 재무국장이 본 편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지정된 조건에 따라 재무국장은 채권 수익의 투자와 이러한 수익의 투자를 위한 별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재무국장은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환불, 벌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 이러한 수익금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하거나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한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여 그 채권의 비과세 상태를 유지하고 이 주의 기금을 대신하여 연방법에 따라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4장. 일반 조항

1179.101. 이 편에서 승인한 채권 판매의 수익금은 이 용어가 California 헌법 XIII B조에서 사용된 "세금 수익"이 아니므로, 이런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조가 부과하는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1179.102. 이 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이 편의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인 경우,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5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California 헌법의 조항을 개정하고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에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제안된 기존 조항은 가로줄로 표시되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새로운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상정된 법안

1절. 본 법안은 발의안 13 저축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 발의안(People's Initiative to Protect Proposition 13 Savings)으로 알려지고 인용되어야 한다.

2절.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절. (a) *(1)* "완전 현금 가치"란 카운티 평가사가 1975-76년 세금 고지서에 "전체 현금 가치"로 표시한 부동산 감정가, 또는 그 이후에 신규 구입, 신규 건설되거나 1975년 평가 이후에 소유권 변경된 부종산의 감정 가치를 의미한다. 1975–76년도 완전 현금 가치까지 이미 평가되지 않은 모든 부동산은 해당 감정가를 반영하도록 재평가될 수 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신축"은 주지사가 선언한 재해가 발생한 후 재건축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재건축시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재해 발생 이전의 공정 시장 가치와 비교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신축"이라는 용어는 입법부가 정의한 대로 내진보강 기법 부품의 건축 또는 재건축으로 구성되는 기존 구조물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2) 1986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정의와 절차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XIII조 3절 (k)호에 의거한 주택 소유주의 면제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시행 법규는 면제 대상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b)호에 승인된 조정을 통해 동일 카운티에 있으며 원래 부동산의 매각 후 2년 이내에 본인이 기본 주거지로 구입하거나 신축한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가치를 지닌 주거 시설로 이전할 수 있다. ~~다음에 대해~~

(3) (A) 본 조항의 목적상 ~~*"어떠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i) "55 세 이상의 사람"에는 한 사람이 55세 이상인 결혼 부부가 포함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ii) "대체 주거지"란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 또는 그곳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거주지를 구성하는 건물, 구조 또는 기타 보호소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2가구 주택은 2개의 독립된 단일 주택으로 간주된다. 본

(B) 이 조항은 1986년 11월 5일 이후에 구입 또는 신축된 대체 주거지에 적용된다.

~~또한,~~

(4) 1988년 11월 9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는 각 카운티 행정 구역의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전된 주택이 해당 카운티에 위치하고 원래 재산이 주의 다른 카운티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과 관련된 본 세목 조항을 제정하는 조례를 각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채택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지역 영향 기관"은 연간 재산세 수입을 할당받는 도시, 특별구,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의미한다. 본 조항은 카운티가 기본 연도 이전에 관한 본 조항을 채택한 날짜 이후에 구입하거나 신축된 모든 대체 주택에 적용되지만 1988년 11월 9일 이전에 구입 또는 신축된 대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5) 1990년 6월 6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입법부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에 한해 주택 소유자의 원래 재산에서 대체 주택으로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과 관련한 조항을 55세 이상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본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 또는 신축된 주택에 한한다.

(6) (A) 2019 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규정된 해당 절차 및 정의에 따라, XIII조 3절 (k)호에 의거하여 55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소유주 면제 자격이 되는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기존 교통편의 수, 대체 주거지 가치 또는 대체 주거지가 같은 카운티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래 부동산의 매각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기본 주거지로 구입 또는 신축한 대체 주거지로 이전되어야 한다.

(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i) 원래 재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가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주택의 전체 현금 가치의 차액을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에 더해서 환산한다.

(ii) 원래 재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거나 낮은 가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로 나누고, 그 결과를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에 곱해서 환산한다.

(b) 전체 현금 가치 기준은 해당 년도에 2%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이나 과세 관할 구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유사한 데이터로 명시된 감소율을 반영할 수 있으며, 상당한 손상, 파손 또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을 반영하도록 감소될 수 있다.

(c) (a)호의 목적상, 입법부는 "신축"이라는 용어에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한다.

(1) 활성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

(2) 이 절의 발효일 후에 건설되거나 설치되는, 주의회가 정의된 대로,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 기타 소화 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또는 화재 관련 대피 개선 시설의 건설 또는 설치.

(3) 해당 건설, 설치, 또는 변경이,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목적인 경우, 주택 소유자가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단일 가족 또는 복수 가족 주택의 부분 또는 구조적 구성요소에 대한, 이 절의 발효일 및 그 후의 건설, 설치, 제거 또는 변경.

(4) 건설, 설치, 또는 변경이,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목적인 경우, 기존 건물이나 구조물의 일부 또는 구조적 구성요소에 대한, 이 절의 발효일 및 그 후의 건설, 설치, 제거 또는 변경.

(5) 입법부가 정의한 대로, 2019년 1월 1일 및 그 후에 완료된 빗물 포집 시스템의 건설 또는 추가.

(d) 본 조항의 목적상, "소유권 변동"이라는 용어에는 부동산 취득자가 토지 수용권 소송, 공공 기관에 의한 인수 또는 역수용 소용 판결로 이어진 정부 소송으로 인해 대체된 부동산으로부터 쫓겨 나간 경우에 동등한 재산의 대체물로서 부동산의 취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한 부동산은 크기, 효용 및 기능면에서 유사하거나 정부 조치에 의해 쫓겨 나간 거주민의 이전에 관해 입법부가 정한 주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대체된 부동산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세목은 1975년 3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지만, 본 세부의 조항이 발효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시된 평가에만 영향을 준다.

(e) (1) *(A)* 본 절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주지사가 선포한 재해로 의해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해 동일 카운티 내에서 취득 또는 신축된 동등한 재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B) ~~조항 (3),~~ *세목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본 ~~세목~~*조항*은 1985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취득 또는 신축된 대체 부동산에 적용되며 1985–86 회계년도와 ~~이후~~ 2018–19 회계년도까지 기준년도 가치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3)~~

(C) (i) ~~(1)~~*향 (A)목*에서 허용된 동일한 카운티 내의 재산에 대한 기준년도 가치 이전 이외에도, 입법부는 카운티 내의 해당 지역 기관과 상의 하에 주의 다른 카운티 내에 있으며 주지사가 선포한 재해로 의해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동일한 카운티 내에 있으며 원래 재산의 실질적인 손해 또는 파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대체 부동산으로 취득 또는 신축된 동등하거나 낮은 가치의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도입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금액은 (a)호에 의거한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 이전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향~~ *목의* 목적상, "지역 영향 기관"은 연간 증가 재산세 수입을 할당받는 도시, 특별구,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의미한다.

~~본 향~~

(ii) 본 목은 1991년 10월 20일 이후 *및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지사가 선언한 재해에 의해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동산의 대체물로 취득 또는 신축한 모든 유사한 대체 부동산에 적용되며 1991–92

5

회계년도와 이후 2018–19 회계년도까지 기준년도 가치를 결정할 때 적용된다.

(2) (A) 본 절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f)목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대체 재산이 동등한지 여부 또는 대체 재산이 같은 카운티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입법부는 주지사가 선포한 재해로 의해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부동산을 대체하기 위해 동일 카운티 내에서 취득 또는 신축된 동등한 재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i)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가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의 차액을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에 더해서 환산한다.

(ii)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거나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로 나누고, 그 결과를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에 곱해서 환산한다.

(f) (e)호의 목적 상:

(1) 재해 발생 직전의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손된 것이다. 피해에는 재해 발생 때문에 접근 제한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감소가 포함된다.

(2) 대체 재산은 크기, 유용성 및 기능이 대체되는 재산과 유사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가 재해 이전의 대체된 부동산과 동등한 경우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손된 재산과 동등하다고 판단된다.

(g) (a)호의 목적상, “구매” 및 “소유권 변경” 이라는 용어에는 197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 간의 부동산 매입 또는 양도가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1) 배우자, 사망한 양도인의 생존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에게 양도하거나 그러한 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배우자 사망시 효력을 발생하는 배우자에 대한 양도.

(3) 부동산 분할 합의 또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에 관한 법령과 관련하여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양도.

(4) 배우자 사이에 한해 공동 소유자의 이익을 창출, 이전 또는 종료.

(5) 부동산 분할 합의 또는 이혼 또는 법적 별거와 관련하여 법인에서 배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에게 법인 재산을 분배하는 행위.

(h) (1) (a)호의 목적상, 입법부가 정의한 바에 따라 “매입” 및 “소유권 변경” 이라는 용어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입 또는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 주거지의 매입 또는 양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입법부가 정의한 바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른 모든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에서 처음 100만 달러 ($1,000,000)의 매입 또는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세목은 자발적 양도와 법원 명령 또는 사법적 판결로 인한 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2) (A) (B)목에 따라, 본 단락을 추가하는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매입 또는 양도부터 입법부가 정의한 바에 따라 (1)절에 의거한 배제는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부동산 매입 또는 양도에도 적용되며, 입법부가 정의한 바에 따라, 매입 또는 양도 날짜 기준으로 조부모의 자녀로서 자격을 가진 손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다른 자격을 갖는다.

(B) (1)항에 따라 배제 가능한 다른 매입 또는 양도를 통해 양수인 손자도 주 거주지 또는 그 이자를 받은 경우, 주 거주지의 매입 또는 양도는 (A)목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배제 가능한 매입 또는 양도에 따라 손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주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판결 결과로 배제 대상이 되지 못한 주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는 (A)목의 목적상 (1)항에 명시된 100만 달러

($1,000,000) 전체 현금 가치 한도를 적용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

(i) (1) 본 섹션에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5)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입법부는 (2)항에 정의된 유자격 오염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하나만 적용한다.

(A) (i) *1998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ii)의 제한 조항에 따라, (b)호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조정된 적격 오염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교체 부동산이 적격 오염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이하의 공정 시장 가치를 지니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카운티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적격 오염 부동산에 대한 대체물로 취득 또는 신축된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해당 카운티의 관련 지역 기관과 협의 한 후 다른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간에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을 승인하는 결정을 도입한 경우 적격 오염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ii) 본 목은 적격 오염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각되거나 이전된 후 5년 이내에 취득되거나 새로 건설된 대체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B) 적격 오염 부동산에 대한 환경 문제의 개선이 그 부동산에 위치한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 또는 대체된 구조물의 크기, 효용 및 기능이 원래 구조물과 유사하다면 "신축"이란 용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환경 문제의 조치 이후에 수행된 실질적인 손상된 구조물의 수리, 또는 적격 오염 부동산에서 파손된 구조물을 대체하는 구조물의 건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본 호의 목적상, "적격 오염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의미한다.

(A)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부동산, 비거주 부동산의 경우 유독 물질의 존재를 포괄하는 자연적인 환경 문제나 부동산의 취득 및 건설 시점에 환경 문제의 존재가 소유자 또는 (3)절에 언급된 관련 개인이나 단체에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조치해도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 본 목의 목적상, 주거용 부동산은 환경 문제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인간의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주거 불능" 부동산이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환경 문제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점유하기에 건강상 좋지 않으며 부적절한 "불안정한" 부동산이다.

(B) California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유독성 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환경 정화 시설로 지정된 부지에 위치.

(C) 환경 정화 활동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조물이 환경 정화 활동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

(D) (A)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거주 가능하지 않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지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참여했거나 묵인한 상태의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해 부동산의 환경 문제 또는 환경 정화와 관련하여 주 정부 기관이 규정.

(3) 부동산 소유주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이나 태만을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을 거주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 또는 태만에 참여했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A) 해당 개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또는 형제자매이다.

(B) 해당 단체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이다.

(C) 해당 단체의 소유자이거나 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D) 해당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한다.

이 추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자는 (1)항 (A)목 또는 (B)목에 규정된 구제를 받지 못한다. 추정은 만족스러운 증거를 평가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추정이 극복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에 구애 받지 않아야 한다.

(4) 이 호는 1995년 1월 1일 및 이후에 취득 또는 건설된 대체 부동산과, 이 날짜 또는 그 후에 수행된 부동산 수리에만 적용된다.

(5) (A) 본 절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는 (1)항 (A)목의 (ii)조항에 있는 제한에 따라, 적격 오염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교체 부동산이 적격 오염 부동산의 공정 시장 가치 이하의 공정 시장 가치를 지니고 오염되지 않았는지 여부나 동일한 카운티 내에 위치하고 있지 여부에 상관 없이 적격 오염 부동산에 대한 대체물로 취득 또는 신축된 대체 부동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

(B) 본 항의 목적상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i)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조항에 따라 더 큰 가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의 차액을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에 더해서 환산한다.

(ii)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조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로 나누고, 그 결과를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에 곱해서 환산한다.

(j) 특별히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988년 1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본 조항의 개정안은 개정한 발효일 이후 발생한 소유권 변경 및 신축 공사에 적용된다. 특별히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988년 11월 1일 이후에 채택된 본 조항의 개정안은 개정한 발효일 당일 및 그 이후 발생한 소유권 변경 및 신축 공사에 적용된다.

3절.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69.5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69.5. (a) (1) 법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a)호에 의거하여, 55세 이상의 모든 사람, 또는 California 주 헌법 XIII 조 3절 (k)호 및 이후 218절에 의거한 주택 소유자 면제 자격이 되는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심한 영구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본 조항에 제공된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동일한 카운티 내에 위치하고 그 본인이 원래 부동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본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구입하거나 신축한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가치를 지닌 대체 주택으로 자신의 부동산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할 수 있다. 단, 원래 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없다.

(2) 원래 부동산과 대체 주택이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1)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우, 카운티 위원회가 카운티 경계 내의 지역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대체 주택이 해당 카운티에 위치하고 원래 주택이 해당 주 내의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에도 (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채택한 카운티에서는 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포함된 승인은 카운티 위원회가 채택한 조례가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카운티에서 적용된다.

(A) 카운티 경계 내에서 감독 위원회와 다른 지역의 모든 해당 기관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에만 채택된다.

(B) 다른 카운티에 소재한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다른 카운티로 이전하려는 요청은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a)호와 본 조항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C) 다른 카운티에 위치하고 그 평가사가 결정한 원래 재산의 모든 기준 연도 감정가는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에 대한 요청의 승인과 연계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D) 조항은 5년 이상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E) 조례는 그 조항의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를 명시한다. 단, 명시된 날짜는 1988년 11월 9일 이후이어야 한다. 지정된 적용 날짜는 카운티가 조례를 채택한 날짜보다 빠른 날짜일 수 있다.

(b) (a)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청구자가 원래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 또는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시점, 또는 대체 주택의 구매 또는 신축부터 2년 이내의 시점에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2) 원래 부동산은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 또는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시점, 또는 대체 주택의 구매 또는 신축부터 2년 이내의 시점에 청구자가 원래 거주지로서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한 결과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원래 부동산의 매각 시점에서 청구자 또는 청구자와 함께 거주하는 청구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거나 심각한 영구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4) (a)호에 규정된 세금 감면을 청구할 때 청구자가 대체 주택의 주인이고 해당 주택을 기본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은 현재 주택 소유자 면제 자격이 되거나 이전 소유주가 제기한 면제 청구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이미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 대상이다.

(5)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은 대체 주택의 매입 또는 신축 공사 후 2년 이내에 매각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거주지의 매입 또는 신축은 대체 건물, 구조물, 또는 청구자의 거주 장소를 구성할 기타 보호소가 위치하고 (g)호의 (3)항에 따라 대체 주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의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을 포함한다.

(6) (a)호의 (2)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5)항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의 부분을 포함하여 대체 주거지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원래 부동산과 동일한 카운티 내에 위치한다.

(7) 청구자는 청구자로서 이전에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 단, 이 절은 청구자로서 55세 이상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세금 감면 혜택을 승인 받은 이후 심각하고 영구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주에서 본 조항에 의거한 청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카운티 평가사는 평가사와 구제 조치를 받은 모든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허용한 모드 청구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의사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카운티 레코드와 (f)호에 따라 접수된 청구에서 가져온 정보를 주정부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정보가 청구자와 그 배우자의 성명과 사회 보장 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청구가 적용되는 대체 주거지의 신원과 위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정보는 데이터 처리 매체 또는 다른 매체 형태로, 그리고 카운티의 기록 관리 프로세스 및 주정부의 감사 절차와 호환 가능한 형식으로 요청될 수 있다.

(c)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 또는 대체 주거, 또는 둘 모두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1) 협동 주택 회사, 공동 주택 프로젝트,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또는 계획 유닛 개발에 속한 유닛 또는 부지. 해당 유닛 또는 부지가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 유닛의 단위 또는 부지의 기준년도 가치와 그 유닛 또는 부지의 부속물로 지정된 공동 구역에서 청구자의 지분만을 청구자의 대체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해당 유닛 또는 부지가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만 청구자 유닛 또는 부지와 해당 유닛 또는 부지의 부속물로 지정된 공동 구역에서 청구자의 지분으로 이전해야 한다.

(2)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기성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청구자 소유의 토지. 본 조항의 목적상, “청구자 소유의 토지”는 62.1절 (b)호에 따라 평가된 거주자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비례식 지분을 포함한다.

(A)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해당 토지가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대체 주택으로 이전된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 또는 기성 주택과 이것이 위치한 토지의 기준년도 가치를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로 이전해야 한다.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을 구성하는 기성 주택이 거주자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대한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기성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와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부동산에서 청구자의 지분을 청구자의 대체 주택에 이전해야 한다. (g)호 (4)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사는 원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토지 부분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하지 않는다.

(B)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해당 토지가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이것이 위치한 토지로 이전해야 한다.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를 구성하는 기성 주택이 거주자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대한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청구자의 기성 주택과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청구자의 지분으로 이전해야 한다. (g)호 (3)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사는 대체 주거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토지 부분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하지 않는다.

이 부는 (d)호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5

(d)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은 다음 제한에 따라 공동 세입자, 공동 부동산 소유자, 또는 신탁의 현재 수혜자로서 원래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자에게 제공된다.

(1) 하나의 대체 주거지가 모든 공동 소유자에 의해 매입 또는 신축되고 각 공동 소유자가 대체 주거지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청구자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가진다.

(2) 두 명 이상의 공동 주택 소유자가 두 개 이상의 대체 주거지를 별도로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한 명의 공동 소유자 만이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다. 이러한 공동 소유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중 하나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원래 부동산을 공동 부동산으로 보유한 두 명의 공동 소유자가 2개 이상의 대체 주거지를 별도로 매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 55세이거나 심각한 영구 장애를 가진 공동 소유자 만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가진다. 두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양 배우자는 어느 쪽이 자격이 있는 지를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원래 부동산이 다세대 거주지인 공동 소유자의 경우, (2)항 및 (3)항에 의해 부과된 제한은 (b)호 (2)항에 명시된 시점에서 원래 부동산 내의 동일한 주거 단위를 점유한 공동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e) 최초 부동산 매각시 평가사는 기존 소유자 또는 원래 부종산의 소유자가 이후에 대체 주거지를 매입 또는 신축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a)호 및 110.1절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본 조항, 69조 또는 69.3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부동산은 대체 거주지 또는 부동산의 자격이 되므로 원래 부동산의 양도가 (1) 해당 부동산이 110.1조 또는 5803조에 따라 현행 공정 시장 가치로 재평가 대상이 되거나 (2) 본 조항, 69조 또는 69.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준년도 가치가 되는 소유권 변경이 아닌 경우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f) (1) 주정부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규정하고 요청에 따라 평가사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청구자가 평가사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청구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 대체 주거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각 청구자와 청구자 배우자의 이름 및 사회 보장 번호.

(B) 청구자 또는 원래 부동산에서 청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자 배우자가 매각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심각한 영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증빙. 중증 및 영구 장애의 증명은 청구자가 심각한 영구 장애 상태임을 증언하는 유자격 의사 및 해당 외과 전문의가 서명한 증명서로 갈음된다. 55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자는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위증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심각한 영구 장애가 있는 청구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i) 유자격 의사 및 해당 외과 전문의가 서명을 받았으며 장애인 필수 시설을 대체 주거지로 옮겨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체 거주지의 입지 요건을 비롯한 장애 관련 요건을 명시한 증명서. 청구자는 대체 주거지가 장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대체

주거지로 이사하는 주된 이유가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청구자 또는 청구자의 배우자 또는 후견인이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대체 주거지 이전의 주된 목적은 파악된 장애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ii) 대체 주거지 이전의 주요 목적은 장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청구자의 입증. 청구자 또는 청구자의 배우자 또는 후견인이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대체 주거지 이전의 주된 목적은 장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C) 주소 및, 알고 있는 경우, 원래 부동산의 평가사 지번.

(D)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 매각일 및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 매입일 또는 신축일.

(E) 청구를 접수하는 날짜 기준으로 청구자가 대체 거주지를 기본 주거로 시설로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서

(F) (k) 또는 (m)호에 따라 본 조항에 의거한 모든 청구는 대체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또는 대체 주택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본 조항에 따라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에 대한 청구가 (1)항 (F)목에 규정된 접수 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 이 청구는 다음 모든 조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평가사에 의해 고려된다.

(A) 해당 청구에 따라 부여된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은 청구가 제기된 평가 연도의 유치 날짜부터 적용된다.

(B) (A)목에 명시된 평가 연도의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기준년도 가치가 (A)호에서 명시된 평가 연도로 이전되고 환산되는 기준년도 가치가 된다.

(i) 51조 (a)호 (1)항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인플레이션.

(ii) (h)호 (4)항의 (A) 및 (B)목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재산세 감면 자격이 없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후속 신축.

(g) 본 조항의 목적 상:

(1) “55세 이상인 사람”이라 함은 최초 부동산 매각 시점에서 55세 이상에 도달한 사람의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2)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라 함은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b)호와 110.1조 (f)호에 따라 조정이 허용되는 110.1조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년도 가치를 의미하며, 청구자가 원래 부동산을 매각한 날짜의 직전 날짜로 결정되거나,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되었지만 소유자가 원래 부동산을 재건하지 않은 경우에 불행이나 재난 직전 날짜로 결정된다.

원래 부동산을 이전한 후 대체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 이후 기간 동안 110.1절 (f)호에서 허용하는 인플레이션 요소 조정도 포함된다.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 연도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기본 연도 값이 이전되는 모든 부동산의 기본 연도로 간주된다.

(3) “대체 거주지”란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관계없이 청구자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를 구성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가 소재한 청구자 소유 대지를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대체 거주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지는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 만을 포함하며, “청구자 소유 대지”는 청구자가 61절 (c)호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술된 임차권을 가지는 대지를 포함한다. 다세대 거주지의 각 유닛은 별개의 대체 거주지로 간주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에는 비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이 거주지로서 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에 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지가 포함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청구자 소유의 토지”는 62.1절 (b)호에 따라 평가된

거주인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소유권 지분을 포함한다.

(4) "원래 부동산"이란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관계없이 청구자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를 구성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가 소재한 청구자 소유 대지를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원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지는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 만을 포함하며, "청구자 소유 대지"는 청구자가 61절 (c)호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술된 임차권을 가지는 대지를 포함한다. 다세대 거주지의 각 유닛은 별개의 원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에는 비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이 거주지로서 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에 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지가 포함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청구자 소유의 토지"는 62.1절 (b)호에 따라 평가된 거주인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소유권 지분을 포함한다.

(5) "동일하거나 낮은 가치"란 대체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가 다음 중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 원래 부동산의 매각일 이전에 거주지를 매입 또는 신축할 경우 원래 부동산의 현금 가치 총액의 100%.

(B) 원래 부동산의 매각일 후 1년 내에 거주지를 매입 또는 신축할 경우 원래 부동산의 현금 가치 총액의 105%.

(C) 원래 부동산의 매각일 후 2년 내에 거주지를 매입 또는 신축할 경우 원래 부동산의 현금 가치 총액의 110%.

본 조항의 목적상, (h)호 (4)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 거주지가 부분적으로 매입되고 부분적으로 신축된 경우, "대체 거주지가 매입 또는 신축된" 날짜는 매입일과 신축 완공일 중에서 늦은 날짜를 의미한다.

(6) "대체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란 매입 또는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와 매입 또는 신축 공사가 완료 이후에 110.1절에 따라 결정된 전체 현금 가치를 의미한다.

(7) "원래 부동산의 완전 현금 가치"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h)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e)호에 따라 결정되고 청구자가 매각한 날짜부터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XIII A조 2절 (b)호와 110.1절 (f)호에서 허용되는 조정을 한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

(B)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되었지만 소유자가 원래 부동산을 재건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평가사에 의해 불행이나 재난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h)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110절에 따라 결정되고 청구자가 매각한 날짜부터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XIII A조 2절 (b)호와 110.1절 (f)호에서 허용되는 조정을 한 전체 현금 가치.

(8) "매매"란 원래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을 의미한다.

(9) "청구자"란 이 절에 의해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을 청구하는 자를 의미한다. 청구자의 배우자가 대체 거주지의 기록 소유자인 경우, 배우자도 본 조항에 의거해서 배우자가 제기한 미래 청구에서 (b)호의 (7)항에 명시된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구자이다.

(10) "주택 소유자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주 거주지이며 205.5절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1) "당사자"란 개인을 의미하지만, 어떤 종류의 회사, 파트너십, 협회, 기업,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나 조직도 포함하지 않는다. "당사자"를 현재 신탁 수혜자인 개인을 포함한다.

(12) "심각한 영구 장애"이란 74.3절 (b)호에 설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13) 본 조항의 목적상, 토지 또는 개선 조치가 불행이나 재난 직전의 토지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전체 현금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토지나 부동산은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손해에는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발생했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결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감소가 포함된다.

(h) (1) (f)호 (1)항 (F)목에 기술된 청구를 적시에 접수하는 경우, 평가사는 본 조항에 따라 대체 주거지의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조정해야 한다. 이 조정은 다음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에 이루어져야 한다.

(A) 원래 부동산이 매각된 날짜.

(B) 대체 거주지를 매입한 날짜.

(C) 대체 거주지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

(2) 대체 거주지의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에 근거하여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대체 거주지에 부과된 모든 세금 및 이에 대한 허용 가능한 연간 조정은 조정된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될 때 납부할 금액을 세금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거나 청구자에게 환불된다.

(3) 75.10절에도 불구하고, 원래 부동산의 매각 이전에 취득한 대체 거주지의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3.5장(75절 이하)이 본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본 조항에 따른 청구가 적시에 접수 및 승인되고,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 후에 대체 거주지에 신축이 진행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은 개선된 대체 거주지에 적용되므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축 완료시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A) 신축이 원래 부동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되고 소유주는 완공 후 6개월 이내에 신축 완료를 서면으로 평가사에게 알린다.

(B) 완공일에 신축 건물의 공정 시장 가치와 인수일에 대체 거주지의 현금 가치가 원래 청구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g)호 (7)항에 따라 결정된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i) 청구자는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b)호 (7)항의 목적상 구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취소 통지서가 평가사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평가사는 취소를 승인해야 한다.

(1) 원래 신청자인 청구자가 서명한 취소 통지서가 원래 청구를 접수한 평가사 사무실로 전달된다.

(2) (A) 본 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감면의 결과 카운티가 대체 거주지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한 환불 수표를 최초 발행하는 날짜 이전에 취소 통지서가 평가사 사무실로 전달된다. 감면 조치로 재산세가 환급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구제에 따라 대체 거주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최초 지불 이전에 통지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구제에 따라 대체 거주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또는 그 일부가 미납되는 최초 날짜 이전에 통지서가 전달되어야 한다.

(B) 본 부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주택 소유자 면제를 계속 받을 거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래 청구가 접수된 후 90일 내에 대체 부동산이 청구자의 주 거주지로 비워진 경우 감면이 승인된 후 6년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 통지서가 평가사 사무실에 전달될 수 있다. 취소로 인해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가 증가하거나, 주택 소유자 면제가 잘못 허용된 경우, 506절에 규정 된 이자를 포함하여 적절한 철회 평가 또는 보충 평가가 부과된다. 철회 평가 또는 보충 평가의 제한 기간은 취소 통보가 평가사 사무실에 전달되는 평가 연도의 7월 1일까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3) 간접비, 인건비, 소모품, 자재, 사무 공간 및 컴퓨터 등과 같은 직접 비용과 개발 및 간접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이 취소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예상되는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통지시 평가사가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이 수반된다.

(j) (1)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거주지로 이전함에 있어서, 본

절은 (3) 또는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6년 11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된 경우 대체 주택에 적용된다.

(2)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거주지로 이전함에 있어서, 본 절은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 거주지가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a)호 (2)항 (E)목에 따라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된 대체 거주지에 적용되나, 1988년 11월 9일 이전에 매입 또는 신축된 경우 대체 거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심각한 영구 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하는 경우, 이 절은 1990년 6월 6일 및 그 이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대체 거주지에만 적용된다.

(4) 본절을 추가하여 (e)호를 개정한 것은 69절에 따라 1991년 10월 20일 및 이후에 취득 또는 신축된 대체 거주지에만 적용되며 1991-92년 회계 연도부터 시행된다.

(k) (1) 카운티가 조례의 채택일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진 날짜를 정하는 (a)호 (2)항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조례를 채택한 날 이전으로 3년이 넘은 대체 거주지를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청구 시점에서 배제된 청구자는 조례가 채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본 조항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카운티 평가사가 198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거주자 소유의 이동 주택 단지에 대한 소유권 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기준년도 가치를 수정한 경우, 62.1절의 (b)호 (4)항에 따라, 정정 3년 전에 대체 거주지를 매입 또는 신축해서 적시에 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된 청구자는 소유권의 비율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년도 가치의 수정 통지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적시에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은 본 조항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이 호는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대체 거주지를 양도 한 청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본 항에 의해 제공되지만 이 호에 의거하여 청구된 재산세 감면은 청구가 제기된 평가 연도의 유치 날짜부터 시작하여 전향적으로만 적용된다. 청구가 제기된 날짜 이전에 세금 환급이나 취소는 없다.

(*l*) 이 절에 따른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이 기준년도 가치의 카운티간 이전을 승인하는 만료된 조례에 따라 감사자에 의해 잘못 부여된 경우, 철회 평가는 부과되지 않는다.

(m) (1) 2001년 헌법 613장에 의거하여 본 절 (b) 및 (g)호의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A)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동일한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거주지로 이전함에 있어서, 1986년 11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된 경우 대체 거주지에 적용된다.

(B)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다른 카운티에 위치한 대체 거주지로 이전함에 있어서, 대체 거주지가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a)호 (2)항 (E)목에 따라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된 대체 거주지에 적용되나, 1988년 11월 9일 이전에 매입 또는 신축된 경우 대체 거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심각한 영구 장애가 있는 사람이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하는 경우, 이 절은 1990년 6월 6일 및 그 이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대체 거주지에 적용된다.

(2) 본 항에 의해 제공되지만 이 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청구가 제기된 평가 년도의 유치 날짜부터 시작하여 전향적으로만 적용된다. 청구가 제기된 날짜 이전에 세금 환급이나 취소는 없다.

(n)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청구는 공개 서류가 아니며 공개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청구는 청구자 또는 청구자의 배우자, 청구자 또는 청구자 배우자의 법적 대리인, 청구자 또는 청구자 배우자가 현재 수혜자인 신탁의 수탁자, 그리고 청구자 또는 청구자의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o) 본 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따라 본 항에 개정된 사항은 2012-13 회계 연도의 유치 날짜부터 적용된다.

(p) 이 항은 2019년 1월 1일 화요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부터는 폐지된다.

4절. 69.5절은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69.5. (a) (1)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a)호에 의거하여, 55세 이상의 사람 또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California 주 헌법 XIII 조 3절 (k)호와 218절에 따라 주택 소유자 면제 자격이 되는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본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체 거주지의 가치 또는 대체 거주지가 동일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해당인이 원래 부동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자신의 주 거주지로 매입 또는 신축한 대체 거주지로 이전된다. 단,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대체 거주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2) 대체 거주지의 기준년도 가치를 계산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 원래 재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원래 부동산의 매각 후 2년 내에 더 큰 가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주택의 전체 현금 가치의 차액을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에 더해서 환산한다.

(B) 원래 재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원래 부동산의 매각 후 2년 내에 동일하거나 낮은 가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한 경우, 대체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원래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로 나누고, 그 결과를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에 곱해서 환산한다.

(b) (a)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이 조에 의해 제공되는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당사자가 원래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 또는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시점, 또는 대체 주택의 구매 또는 신축부터 2년 이내의 시점에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2) 원래 부동산은 부동산이 매각된 시점, 또는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된 시점, 또는 대체 주택의 구매 또는 신축부터 2년 이내의 시점에 당사자가 원래 거주지로서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한 결과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원래 부동산의 매각 시점에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함께 거주하는 당사자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거나 심각한 영구 장애를 가지고 있다.

(4) (a)호에 규정된 세금 감면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대체 거주지의 주인이고 해당 주택을 기본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은 현재 주택 소유자 면제 자격이 되거나 이전 소유주가 제기한 면제 청구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이미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 대상이다.

(5) 당사자의 원래 부동산이 대체 거주지의 매입 또는 신축 공사 후 2년 이내에 매각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거주지의 매입 또는 신축은 대체 건물, 구조물, 또는 당사자의 거주 장소를 구성할 기타 보호소가 위치하고 (g)호의 (3)항에 따라 대체 주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의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을 포함한다.

(c) (1) 당사자의 원래 부동산 또는 대체 거주지, 또는 둘 모두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A) 협동 주택 회사, 공동 주택 프로젝트,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또는 계획 유닛 개발에 속한 유닛 또는 부지. 해당 유닛 또는 부지가 당사자의 원래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당사자 유닛의 단위 또는 부지의 기본 연도 가치와 그 유닛 또는 부지의 부속물로 지정된 공동 구역에서 당사자의 지분만을 당사자의 대체 거주지로 이전해야 한다. 해당 유닛 또는 부지가 당사자의 대체 주거지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당사자의 원래 부동산의 기본 연도 가치만 당사자 유닛 또는 부지와 해당 유닛 또는 부지의 부속물로 지정된 공동 구역에서 당사자의 지분으로 이전해야 한다.

(B)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기성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 소유의 토지. 본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

소유의 토지"는 62.1절 (b)호에 따라 평가된 거주인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비례식 지분을 포함한다.

(i)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해당 토지가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당사자의 대체 주택으로 이전된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 또는 기성 주택과 이것이 위치한 토지의 기준년도 가치를 당사자의 대체 주거지로 이전해야 한다. 당사자의 원래 부동산을 구성하는 기성 주택이 거주자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경우, 평가사는 당사자의 기성 주택의 기준년도 가치와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부동산에서 당사자의 지분을 당사자의 대체 주택에 이전해야 한다. (g)호 (4)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사는 원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토지 부분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하지 않는다.

(ii)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해당 토지가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기성 주택 또는 기성 주택과 이것이 위치한 토지로 이전해야 한다. 청구자의 대체 주거지를 구성하는 기성 주택이 거주자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 대한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 평가사는 청구자의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청구자의 기성 주택과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청구자의 지분으로 이전해야 한다. (g)호 (3)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사는 대체 주거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토지 부분의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하지 않는다.

(2) 이 호는 (d)호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d)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은 다음 제한에 따라 공동 세입자, 공동 부동산 소유자, 또는 신탁의 현재 수혜자로서 원래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인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1) 하나의 대체 주거지가 모든 공동 소유자에 의해 매입 또는 신축되고 각 공동 소유자가 대체 주거지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가진다.

(2) 2개 이상의 대체 거주지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주에 의해 별도로 매입 또는 신축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주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기준년도 가치를 이전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경우, 모든 공동 소유주는 원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비례하여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대체 거주지로 이전해야 한다.

(3) 원래 부동산을 공동 부동산으로 보유한 두 명의 공동 소유자가 2개 이상의 대체 주거지를 별도로 매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 55세이거나 심각한 영구 장애를 가진 공동 소유자 만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가진다. 양쪽 배우자가 모두 55세를 초과한 경우,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는 원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비례하여 대체 거주지로 이전되어야 한다.

(4) 원래 부동산이 다세대 거주지인 공동 소유자의 경우, (2)항 및 (3)항에 의해 부과된 제한은 (b)호 (2)항에 명시된 시점에서 원래 부동산 내의 동일한 주거 단위를 점유한 공동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e) 최초 부동산 매각시 평가사는 기존 소유자 또는 원래 부종산의 소유자가 이후에 대체 주거지를 매입 또는 신축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a)호 및 110.1절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본 절, 69절 또는 69.3절에 의거하여 결정된 부동산은 대체 거주지 또는 부동산의 자격이 되므로 원래 부동산의 양도가 (1) 해당 부동산이 110.1절 또는 5803절에 따라 현행 공정 시장 가치로 재평가 대상이 되거나 (2) 본 절, 69절 또는 69.3절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준년도 가치가 되는 소유권 변경이 아닌 경우에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f) (1)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주정부 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서 규정하고 대체 거주지가 현재의 공정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될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대체 거주지를 매입할 때 평가사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부동산에 거주하고 주택 소유자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각 당사자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

(B) 당사자 또는 원래 부동산에서 당사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 배우자가 매각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심각한 영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증빙. 중증 및 영구 장애의 증명은 청구자가 심각한 영구 장애 상태임을 증언하는 유자격 의사 및 해당 외과 전문의가 서명한 증명서로 갈음된다. 55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위증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심각한 영구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i) 유자격 의사 및 해당 외과 전문의가 서명을 받았으며 장애인 필수 시설을 대체 주거지로 옮겨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체 거주지의 입지 요건을 비롯한 장애 관련 요건을 명시한 증명서. 당사자는 대체 주거지가 장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대체 주거지로 이사하는 주된 이유가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후견인이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대체 주거지 이전의 주된 목적은 파악된 장애 관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ii) 대체 거주지 이전의 주요 목적은 장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입증.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후견인이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대체 거주지 이전의 주된 목적은 장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C) 주소 및, 알고 있는 경우, 원래 부동산의 평가사 지번.

(D) 당사자의 원래 부동산 매각일 및 당사자의 대체 거주지 매입일 또는 신축일.

(E) 청구를 접수하는 날짜 기준으로 당사자가 대체 거주지를 기본 주거로 시설로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

(2) 본 목에 의해 요청된 양식은 대체 거주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또는 대체 거주지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가 본 조항에 규정된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 이 청구는 다음 모든 조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평가사에 의해 고려된다.

(A) 해당 신청에 따라 부여된 기준 년도 가치의 이전은 신청서가 제기된 평가 연도의 유치 날짜부터 적용된다.

(B) (A)호에 명시된 평가 연도의 대체 부동산의 전체 현금 가치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기준년도 가치가 (A)호에서 명시된 평가 연도로 이전되고 환산되는 기준년도 가치가 된다.

(i) 51절 (a)호 (1)항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인플레이션.

(ii) (h)호 (4)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재산세 감면 자격이 없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후속 신축.

(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 "55세 이상인 사람"이라 함은 최초 부동산 매각 시점에서 55세 이상에 도달한 사람의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2) (A)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라 함은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b)호와 110.1절 (f)호에 따라 조정이 허용되는 110.1절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년도 가치를 의미하며, 청구자가 원래 부동산을 매각한 날짜의 직전 날짜로 결정되거나,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되었지만 소유자가 원래 부동산을 재건하지 않은 경우에 불행이나 재난 직전 날짜로 결정된다.

(B) 원래 부동산을 이전한 후 대체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한 경우,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 이후 기간 동안 110.1절 (f)호에서 허용하는 인플레이션 요소 조정도 포함된다.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기본 연도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기본 연도 값이 이전되는 모든 부동산의 기본 연도로 간주된다.

(3) "대체 거주지"란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를 구성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가 소재한 당사자 소유 대지를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대체 거주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지는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 만을 포함하며, "당사자 소유 대지"는

당사자가 61절 (c)호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술된 임차권을 가지는 대지를 포함한다. 다세대 거주지의 각 유닛은 별개의 대체 거주지로 간주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에는 비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이 거주지로서 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에 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지가 포함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 소유의 토지"는 62.1절 (b)호에 따라 평가된 거주인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소유권 지분을 포함한다.

(4) "원래 부동산"이란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에 관계 없이 당사자가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를 구성하는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보호소가 소재한 당사자 소유 대지를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원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지는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 만을 포함하며, "당사자 소유 대지"는 당사자가 61절 (c)호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술된 임차권을 가지는 대지를 포함한다. 다세대 거주지의 각 유닛은 별개의 원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거주지로 사용되는 적절한 크기의 구역"에는 비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이 거주지로서 거주 용도로의 부동산 사용에 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지가 포함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당사자 소유의 토지"는 62.1절 (b)호에 따라 평가된 거주인 소유의 이동식 주택 단지에서 소유권 지분을 포함한다.

(5) "대체 거주지의 전체 현금 가치"란 매입 또는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와 매입 또는 신축 공사가 완료 이후에 110.1절에 따라 결정된 전체 현금 가치를 의미한다.

(6) "원래 부동산의 완전 현금 가치"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h)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e)호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가 매각한 날짜부터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XIII A조 2절 (b)호와 110.1절 (f)호에서 허용되는 조정을 한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

(B) 원래 부동산이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되었거나 파괴되었지만 소유자가 원래 부동산을 재건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평가사에 의해 불행이나 재난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 2절 (h)호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110절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가 매각한 날짜부터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해 XIII A조 2절 (b)호와 110.1절 (f)호에서 허용되는 조정을 한 전체 현금 가치.

(7) "매매"란 원래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을 의미한다.

(8) "당사자"란 본 조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개인을 의미하지만, 어떤 종류의 회사, 파트너십, 협회, 기업,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나 조직이 아니다. "당사자"는 현재 신탁 수혜자인 개인을 포함한다.

(9) "주택 소유자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주 거주지이며 205.5절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0) 토지 또는 개선 조치가 불행이나 재난 직전의 토지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한 전체 현금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토지나 부동산은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손해에는 불행이나 재난으로 인해 접근 제한이 발생했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영구적인 결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감소가 포함된다.

(h) (1) (f)호에 기술된 청구를 적시에 접수하는 경우, 평가사는 본 조항에 따라 대체 주거지의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조정해야 한다. 이 조정은 다음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에 이루어져야 한다.

(A) 원래 부동산이 매각된 날짜.

(B) 대체 거주지를 매입한 날짜.

(C) 대체 거주지의 신축 공사가 완료된 날짜.

(2) 대체 거주지의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에 근거하여 본 조항에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대체 거주지에 부과된 모든 세금 및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에 대한 허용 가능한 연간 조정은 조정된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될 때 납부할 금액을 세금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거나 당사자에게 환불된다.

(3) 75.10절에도 불구하고, 원래 부동산의 매각 이전에 취득한 대체 거주지의 새로운 기준년도 가치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3.5장(75절 이하)이 본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본 절에 따른 신청서가 적시에 접수되고, 기준년도 가치의 이전 후에 대체 거주지에 신축이 진행되는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은 개선된 대체 거주지에 적용되므로 신축이 원래 부동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되고 소유주는 완공 후 6개월 이내에 신축 완료를 서면으로 평가사에게 알린 경우에 신축 완료시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i) 원래 부동산의 기준년도 가치를 본 조항이 적용되는 대체 주택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2019년 1월 1일 화요일 또는 그 이후에 매입 또는 신축된 경우 대체 주택에 적용된다.

(j) 본 절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개 서류가 아니며 공개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서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 당사자 또는 당사자 배우자의 법적 대리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 배우자가 현재 수혜자인 신탁의 수탁자, 그리고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k) 본 절은 2019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한다.

5절. 이 발의안의 법 조항은 개정안이 법안의 의도와 충분히 일치하는 한, 각 입법부의 2/3 찬성표와 주지사의 서명으로 개정될 수 있다.

6절. 이 법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이 법의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인 경우,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6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California Constitution)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1절. 발견 및 목적 진술서.

(a) California의 휘발유 및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세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b) 이 세금은 주민의 동의 없이 증세되었다.

(c) 따라서, 주민들은 2017년 헌법 5장에 의해 제정된 휘발유 및 자동차 세금의 최근 인상과 향후 휘발유 및 자동차 세금 인상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수정한다.

2절. 휘발유 및 자동차 세금 인상을 위한 유권자 승인.

2.1. 3.5절은 California 주 헌법 XIII A조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3.5절. (a)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자동차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의 판매, 저장, 사용 또는 소비, 또는 California 주민이 공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코치를 운행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제안된 세금이 유권자에게 제출되고 다수 표결로 승인되기 전까지 3절에 정의된 세금을 부과, 증세 또는 확대해서는 안 된다.

(b) 이 조항은 자동차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 또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코치의 운행 특권에 대해 2017년 1월 1일 발효된 요율로 정해진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시된 세금 인상률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유권자가 승인할 때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발의안 7

California 헌법 제 II조의 10절에 따라 2017–2018 정기 의회(2018년 헌법 60장)의 의회 법안 807호로 상정된 이 법안을 주민에게 제출한다.

본 발의안은 정부법(Government Code)에 조항을 추가하고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을 폐기한다.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제안된 조항은 ~~가로줄~~로 표시되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새로 제안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상정된 법안

1절. 연방법이 일광 절약 시간제를 연중 적용하도록 주 정부에 허가하고 입법부가 이러한 적용을 채택하도록 고려하는 경우, 입법부가 California와 다른 주 사이, 그리고 California와 Mexico 사이에 있는 경계를 따라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연중 일광 절약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2절. 6808절은 정부법(Government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6808. (a) 주의 표준 시간은 연방법이 지정한 5차 시간대로 태평양 표준시(15 USC Secs.261 및 263)이다.

(b) 주의 표준 시간은 매년 3월 두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시작하여 11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2시에 끝나는 일광 절약 시간제 기간 동안 한 시간 앞당겨진다.

(c) (b)호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연방법에 따라 2/3 찬성표를 통해 이 조항을 개정해서 일광 절약 시간제의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정부가 연중 일광 절약 시간제를 적용하도록 연방법이 승인하는 경우, 주의회는 2/3 찬성표를 통해 본 조항을 개성해서 이러한 적용을 시행할 수 있다.

3절.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의 1절을 폐기한다.

~~1절. 이 법안은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4절.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의 2절을 폐기한다.

~~2절. 아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주 표준 시간은 그리니치에서 서쪽으로 경도 120도이며, 현재 의회제정법(Act of Congress)에 의해 "미국 표준 태평양 표준시"로 알려지고, 설명되고, 지정되어 있다.~~

5절.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의 3절을 폐기한다.

~~3절. 4월 마지막 일요일의 오전 1시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의 오전 2시까지, 이 주에서 정한 표준 시간은 현재 미국 태평양 표준시로 표준 시간보다 1 시간 앞당겨진다.~~

6절.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의 4절을 폐기한다.

~~4절. 이 주 또는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타운 또는 지구의 임원 또는 부서가 행동하는 수행 시간과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명령, 법령, 규칙 및 규정에서, 국가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공립학교 및 이 주에 있는 다른 모든 기관에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거나 결정할 권리, 행위가 수행되거나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 기간, 카운티, 시 및 군, 시, 타운 또는 지구로 제한되며 이 주에서 행해지거나 수행되는 행위에 대한 모든 계약 또는 선택에 있어서, 시간은 이 법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그렇게 이해되고 의도되어야 한다.~~

7절. 일광 절약 시간법(Daylight Saving Time Act)의 5절을 폐기한다.

~~5절. 이에 상충하는 모든 법은 폐지된다.~~

발의안 8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1절. 이름.

이 법은 "공정한 투석 가격 법(Fair Pricing for Dialysis Act)"으로 알려져야 한다.

2절. 발견 및 목적.

California 주 주민들에 의해 채택된 이 법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a)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1) 신장 투석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신체 외부에 있는 기계를 통해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을 제거한 다음 환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이다. 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고품질의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사망하게 된다.

(2) California 주에서는 최소 66,000명의 California 주민이 투석 치료를 받는다.

(3) California의 투석 클리닉 중 거의 3/4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단 2개의 다국적 영리 법인이 California 투석 환자의 약 70%를 치료한다. 이 2개의 다국적 기업은 California에서만 매년 약 4억 달러($400,000,000)를 비롯하여, 투석 치료에서만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4) 연방법에 따라 민간 건강 보험 회사가 투석을 제공하고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 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2개의 다국적 투석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5)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석 회사는 민간 의료 보험을 받는 환자에게 동일한 투석 치료에 대해 Medicare에 청구하는 금액의 4배를 부과하여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6) 단 2개의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California는 투석에 대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7) 다른 주에서는 이 2개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8) California 주 신장 투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California 입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7년 상반기에만 60만 달러($600,000)를 로비한 투석 회사에 의해 새크라멘토(Sacramento)에서 방해를 받았다.

(b) 목적:

(1) 이 법의 목적은 외래 신장 투석 진료소가 말기 신장병 환자에게 양질의 저비용 환자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이 법안은 주정부가 예산적 중립으로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절. 1226.7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26.7. (a) 만성 투석 클리닉아 환자 치료에 부과하는 합리적 한계; 공정한 치료 지불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의 환급.

(1) 본 조항의 목적상, "공정한 치료비 지불 금액"은 관리 기관 및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 부과하는 모든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 비용과 모든 건강 치료 품질 개선 비용 총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마다, 관리 기관 및 만성 투석 진료소는 매년 다음과 같이 지불 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A) 관리 기관은 모든 관리 기관의 만성 투석 진료소가 제공한 치료 수익이 공정한 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인 "불공정한 초과 청구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8

(B) 관리 기관 또는 그 만성 투석 진료소는 지불된 금액과 합리적으로 지불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이러한 금액이 치료 수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한 초과 청구 금액의 총액을 지불자 (Medicare 또는 다른 연방, 주, 카운티, 시 또는 지방 정부 지불자 이외의 다른 지불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C) 관리 기관 및 만성 투석 진료소는 환급이 관련된 회계 연도 종료 후 90일 이상 210일 이내에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D) 특정 회계 연도에, 관리 기관이나 만성 투석 클리닉이 단일 지불자에게 지불해야 환급액이 $20 미만일 경우, 관리 기관 또는 만성 투석 클리닉은 해당 환급액을 지불하지 않고 본 호에 의거하여 지불되지 않은 총액을 (B)목에 따라 다른 지불자에게 환급한다.

(E)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각 회계 연도에 대해, 지불자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민법(Civil Code) 3298절 (b)호에 명시된 이자율로 지불자의 지불 날짜부터 계산된 이자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3)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마다, 관리 기관은 (2)항에 따라 요구된 환급액이 적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출 기간의 각 사안과 그 이유 및 상황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2)항에 따라 지급된 모든 환급액에 대한 보고서를 부서가 정한 형식과 일정에 따라 부서에 보관하고 제공해야 한다. 관리 기관의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수석 책임자는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 조항에 의거하여 부서에 제출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4) 관리 기관 또는 그 만성 투석 진료소이 본 조항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경우, 벌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회계 연도 종료 후 210일 이내에 해당 관리 기관은 불공정한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해당 부서에 지불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만성 투석 진료소을 규율하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사용된다.

(5)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이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 목 또는 제(b)호의 규정에 따른 벌금을 또는 행정 벌금을 평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은 10 근무일 내에 131071절에 의거하여 공청회를 요청한다.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은 모든 절소가 처리되고 부서가 승소한 경우 모든 행정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6) 관리 기관 또는 만성 투석 진료소가 법원 소송에서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에 본 조항을 적용하면 이 주 헌법 또는 미국 헌법에 따라 특정 회계 연도에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개인 부동산의 취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당 회계 연도에 관해 관리 기관이나 만성 투석 진료소에 대한 조항의 적용이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개인 부동산의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115"라는 숫자는 해당 조항에 나타날 때마다 가능한 가장 낮은 정수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면 문제가 되는 조항은 관리 기관이나 만성 투석 진료소에 적용된다. 모든 민사 소송에서, 관리 기관이나 만성 투석 진료소는 대체 번호를 제안하고 제안된 대체 번호보다 낮은 모든 번호로 "115"를 대체하면 해당 회계 연도에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개인 부동산의 취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증명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다.

(b) 만성 투석 진료소의 준수 보고.

(1)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마다, 관리 기관은 California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모든 만성 투석 진료소에 대해 다음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모두 유지하고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 수행된 치료 횟수.

(B)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 비용.

(C) 건강 관리 품질 개선 비용.

(D) 대금이 청구되었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금액과 추정 가능한 실현 가능 수익의 차액을 포함한 치료 수익.

(E) 공정한 치료 지불 금액.

8

(F) 불공정한 과다 청구 금액.

(G) 개별 환자가 환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고유한 식별자만을 사용하여 식별되는 경우, 각 지불자의 환급액(해당되는 경우).

(H) 개별 환자가 환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고유한 식별자만을 사용하여 식별되는 경우, (a)호 (2)항 (D)목에 따라 환급되지 않은 지불자의 명단 및 미지불 금액.

(2) 유지 관리가 요구되는 정보와 본 호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각각 미국 공인 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감사 기준 위원회(Auditing Standards Board)의 기준에 따라 공인 회계사가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가 (1)호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정보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당 공인 회계사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3) 관리 기관은 이 목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부서가 지정한 일정, 형식 및 양식으로 매년 제출해야 한다. 단, 관리 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후 210일 이내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 기관의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수석 책임자는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1)항에 의거하여 부서에 제출된 보고서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4) 부서가 판단하기에 만성 투석 진료소나 관리 기관이 정보를 관리하지 못했거나 본 목의 (1)항 또는 (a)호의 (3)항에 요구되는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본 목의 (1)항에 따라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이 보고한 금액이나 비율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또는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이 (a)호에서 요구하는 환급액 전액을 적시에 환불하지 못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성 투석 진료소 또는 관리 기관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서는 위반의 심각성,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의 중요성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의 강도(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벌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만성 투석 진료소을 규율하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사용된다.

(c) 정의. 본 조항의 목적 상:

(1) "직업 환자 치료 서비스 비용"은 California의 만성 투석 진료소를 운영하고 California 주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 비용에는 각 환자가 투석을 받는 장소와 상관 없이 (i) 급여, 임금 또는 혜택이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 직접 지불되거나 관리 기관, 독립 인력 파견 기관, 의사 그룹, 또는 만성 투석 진료소와 의사 그룹 사이의 제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제휴 또는 비제휴 제3자와의 약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투석 환자에게 직접 치료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 직원을 포함하는 일반 만성 투석 진료소 직원의 급여, 임금 및 혜택, (ii) 직원 교육 및 개발, (iii) 의약품 및 의료 용품, (iv) 임대료, 유지 보수 및 유틸리티를 포함한 시설 비용, (v) 실험실 테스트, (vi) 건물의 감가 상각과 할부 상환, 임차권 개선, 환자 용품, 장비 및 정보 시스템 등만 포함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일반 만성 투석 진료소 직원"은 간호사, 기술자 및 연수생, 사회 복지사, 등록된 영양사, 그리고 일반 행정 직원 등을 비롯하여 투석 환자를 직접 돌보는 모든 진료소 직원을 포함하지만 시설 관리자와 같은 관리 직원은 제외된다.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 비용의 범주는 규정을 통해 부서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2) "관리 기관"이라 함은 해당 개인 또는 단체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가 발급된 만성 투석 진료소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개인, 회사, 조합, 제휴사, 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3) "건강 관리 품질 개선 비용"은 직접적인 환자 간호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 만성 투석 환자에 대한 치료 제공과 관련되고 실제로 California에서 전자 건강 정보를 유지, 액세스 또는 교환하고, 건강 정보 기술을 지원하고, 직접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일반 만성

투석 진료소 직원을 교육하고, 환자 중심의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실제로 확장된 비용을 의미한다. 비용이 만성 투석 진료소에서 만성 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실제로 지출되며 건강 품질을 향상시키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와 성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건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활동에 지출되는 경우, 추가 비용은 규정을 통해 부서에서 파악될 수 있다.

(4) "지불자"란 특정 환자에게 제공된 치료비를 지불했거나 재정적으로 지불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Medicare 및 기타 연방, 주, 카운티, 시 또는 기타 지방 정부 지불자를 비롯하여 환자 또는 다른 개인, 1차 보험사, 2차 보험사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5) "치료"는 만성 투석 진료소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6) 특정 회계 연도의 "치료 수익"은 해당 회계 연도에 제공된 치료에 대해 실제로 수령한 모든 금액과 실현 가능한 수익을 의미한다. 실현 가능 추정 수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야하며 (i) 관리 기관 또는 진료소가 공식 계약을 맺은 상업적 의료 플랜 하에 보장을 받는 환자에 대한 계약 조건, (ii)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근거한 Medicare, Medicaid 및 Medi-Cal의 수입과 정부 납부자, 상업적 건강 관리 플랜 2차 보험, 환자 및 기타 납부자로부터 궁극적으로 징수 가능한 추정 금액, 그리고 (iii) 기존 추징 경험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추정치이어야 한다.

4절. 1226.8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26.8. (a) 만성 투석 진료소는 지불자가 환자, 개인 또는 보험사, Medi-Cal, Medicaid 및 Medicare 라는 이유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지불자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를 차별하거나, 치료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b) 만성 투석 진료소는 본 장에 의해 부과된 요구 사항에 근거해서 Medi-Cal, Medicaid 또는 Medicare 의 보장을 받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계약에 따른 치료를 종료, 축소, 수정, 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5절. 1266.3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266.3. California 납세자가 공정한 투석 가격 법 (Fair Pricing for Dialysis Act)의 이행 및 시행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1266절에 따라 만성 투석 진료소에 부과된 수수료를 계산, 평가 및 수집함에 있어서 부서는 1226.7 및 1226.8절의 이행 및 시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6절. 이 법안의 어떠한 내용도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250절 (a), (b) 또는 (f)호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절. 주 보건국은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발효한다.

8절. California 주 헌법 II조 10절 (c)호에 의거하여, 본 법안은 주 전역 선거에서 주민 투표로 제안된 후속 법안 또는 입법부가 합법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단, 법안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9절. 이 법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이 법의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인 경우,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10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민법(Civil Code)에서 조항을 폐지하고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제안된 조항은 ~~카로줄~~로 표시되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새로 제안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상정된 법안

서민 주택 법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절. 표제.

이 법안은 "서민 주택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2절. 발견 및 선언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최근 몇 년간 주택 임대료가 급증했다. California의 평균 임대료는 다른 어느 주보다 높으며, 50개 주 중에서 California는 임대료는 4번째로 높다.

(b) Apartment List의 조사에 따르면 California에 있는 1 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1,410로, 단 1년 만에 4.5% 증가했다. Los Angeles에 있는 1 베드룸 아파트는 월 $1,350이 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450이 다. 샌디애고에서는 $1,560이다.

(c) 연방 정부는 세입자가 소득의 30%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California 주에서는 California 주 임대 가구 중 절반 이상(300 만)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임대 가구 중 1/3(150만 이상)은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d) 전국저임금주택협회(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에 따르면 평균 1 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California 주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매주 92시간 일해야 한다.

(e) 주 발표에 따르면 California 주 전체 주택 소유율이 194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California 주 주민(580만 가구)이 이전보다 더 많이 임대하고 있다. 장년 밀레니얼 세대(25–34세)는 1/4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미국 통계국)

(f) California 간호사 협회(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서비스 직원 국제 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및 California 교사 협회(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와 같은 주 전역의 노동 조합은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California 도심의 교사들은 급여의 40-70%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1시간 이상 초과로 근무하고 있다.

(g) 미국 전체 인구에 비해 3배나 많은 California 주민이 과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

(h) California 주는 전체 미국 인구의 단 12%에 불과하지만, California에는 미국 전체 노숙자의 22%가 거주한다.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

(i) 노숙자 문제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이다. 노숙자를 위한 국립 보건 협의회(National Health Care for the Homeless Council)에 따르면 노숙자는 조기 사망할 확률이 3-4배 높으며 전염병에 걸릴 확률은 더 높다.

(j)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주택 고급화로 인해 취약한 인구의 평균 수명이 단축되고 암 발병률이 높아지며 선천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k)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직장인이 더 먼 거리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통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Pew Charitable Trusts의 보고서에 따르면 편도 90분 이상 통근하는 California 주민의 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40%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직장 근처의 서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l) California 주거 위기의 주요 원인은 코스타 호킨스 임대 주택 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으로 알려진 20년된 법률이다. 코스타-호킨스(Costa-Hawkins)는 1995년 이후 건축된 건물에서 임대료를 원하는 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주거용 아파트 및 주택 소유주에게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을

금지하는 현지 법률에도 불구하고, Los Angeles의 건물주는 1978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그리고 San Francisco의 건물주는 1979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원하는 대로 인상할 수 있다.

(m) 또한 코스타-호킨스(Costa-Hawkins)는 1995년 이전에 건축된 모든 건물에 대해 공실이 되었을 때 시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물주가 시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n) 코스타 호킨스(Costa-Hawkins)는 시가 주민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3절. 목적과 의도.

California 주 주민은 본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도를 선언한다.

(a) 세입자가 해당 관할 지역에서 적절한 주택을 찾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California의 시 및 카운티에 권한을 회복한다.

(b) 수백만 California 세입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각한 주거 문제와 노숙자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California 주민 수를 줄인다.

(c) 코스타 호킨스 임대 주택 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을 폐지한다.

4절. 민법(Civil Code) 1954.50, 1954.51, 1954.52 및 1954.53절을 폐지하여 서민 주택법(Affordable Housing Act)을 성문화한다.

4.1절. 민법(Civil Code) 1954.50절을 폐지한다.

~~1954.50. 이 장은 코스타 호킨스 임대 주택 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4.2절. 민법(Civil Code) 1954.51절을 폐지한다.

~~1954.51. 이 장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동등 유닛"은 거의 동일한 생활 공간을 가지고, 같은 침실 수를 가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 위치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동등한 편의 시설 및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 유닛을 의미한다.~~

~~(b) "소유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이동식 주택 단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이동식 주택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대한 이해 관계에 있어서 전소유주가 포함된다.~~

~~(c) "현행 시장 임대료"라 함은 42 U.S.C.A. 1437(f)에 따라 승인된 임대료로서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타이틀 24, 888편에 의거하여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d) "공공 단체"는 정부법(Government Code) 811.2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e)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 또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유닛을 포함한다.~~

~~(f) "임차"는 부동산의 합법적인 점유를 포함하며 임대 또는 전대 계약을 포함한다.~~

4.3절. 민법(Civil Code) 1954.52절을 폐지한다.

~~1954.52. (a)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유닛에 대한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 1995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점유 허가서를 가지고 있다.~~

~~(2) 신축된 유닛에 대한 지방 면제 조항에 따라, 1995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례로부터 이미 면제되었다.~~

~~(3) (A) 사업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1004.5절의 (b), (d) 또는 (f)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권과 별도로 타 주거 유닛으로 양도 가능하거나 목에서 세분화된 지분이다.~~

~~(B) 본 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 선행 임차가 소유주에 의해 1946.1절에 따른 통지를 통해 종료되거나 827절에 따라 통지된 임차 조항 변경에 따라 종료된 주택 또는 유닛.~~

~~(ii) 부동산 업자가 주택 가치를 위해 선의의 구매자에게 별도로 판매되지 않은 콘도미니엄 주택 또는 유닛. 본 장의 목적상, 임대료 금액이 이 장의 다른 조항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한, 유닛의 최초 임대료는 2001년 5월 7일에 유효한 합법적 임대료가 된다. 그러나, 콘도미니엄 주택 또는 유닛이 (a)호 (1) 또는 (2)호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하나의 주택 또는 유닛을 제외한 모든 주택 또는 유닛이 제3자에 의해 선의의 구매자에게 주택 가치를 위해 별도로 매각되었고 부동산 업자가 나머지 비매각 콘도미니엄 주택 또는 유닛을 최소 1년 이상 자신의 주 거주지로 거주한 경우, 비매각된 콘도미니엄 주택이나 유닛에 (3)호 (A)호가 적용된다.~~

~~(C)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따라 최초 또는 후속 임대료가 규율되는 주택 또는 유닛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i) 본 조항에 기술된 부동산 소유주는 1999년 1월 1일 및 이후 날짜에 시행되는 임차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작성된 경우 1999년 1월 1일 및 이후 날짜의 모든 기존 및 신규 임차에 대해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ii) 1999년 1월 1일부터는 본 조항에 기술된 부동산 소유주는 이전 임차가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경우 새로운 모든 임차에 대해 최초 및 모든 후속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iii)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규율되는, 본 조항에 설명된 주택 또는 유닛은 1999년 1월 1일까지 1954.53절 (c)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설명된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1999년 1월 1일까지 세입자가 민사 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161절 (2) 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비웠거나, 떠났거나, 퇴거된 경우에 한해 주택 또는 유닛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b) (a)호는 소유주가 직접적인 재정적 기부나 정부법(Government Code) 7편 1부 4.3장(65915절 이하)에 명시된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하여 공공 기관과 계약함으로써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본 조항의 어느 부분도 퇴거의 근거를 규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 본 조항은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급 한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심각한 건강, 안전, 화재 또는 건물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주택 또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러한 사항이 해당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재해로 인해 발생했고 집을 비운 후 6개월 이상 수그러들지 않은 재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4.4절. 민법(Civil Code) 1954.53절을 폐지한다.

~~1954.53. (a)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또는 유닛에 대한 최초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1) 선행 임차가 소유주에 의해 1946.1절에 따른 통지를 통해 종료되거나 법에서 임대료 또는 수수료 금액으로 허용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827절에 따라 통지된 임차 조항 변경에 따라 종료되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대한 소유자의 계약 종료 또는 비갱신은 827절에 따라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해석된다.~~

~~(A)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의거하여 주거 또는 유닛에 대한 임대료를 통제하는 관할권에서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소유주는 계약 또는~~

10

~~합의의 해지 또는 비갱신일 이후 3년간 최초 임대료를 설정할 수 없다. 3년 기간에 새로 체결된 임차의 경우, 비워진 주택 또는 유닛에 설정된 신규 임차에 대한 임대료는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종료 또는 비갱신에 따른 임대료와 동일한 임대료에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종료 또는 취소 이후에 승인된 인상분을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B) (A)항은 해당 주택 또는 유닛의 기존 공실이 해당 목에 규정된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의 비갱신 또는 취소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적격 임차인에게 임대료 제한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록된 합의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12개월 이상의 신규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유주가 직접적인 재정적 기부나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7, 1부 4.3장(65915절 이하)에 명시된 다른 형태의 지원을 고려하여 공공 기관과 계약함으로써 달리 합의했다.~~

~~(3)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규율되는 주택 또는 유닛은 1999년 1월 1일까지 (c)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 (a)호는 동일 세입자, 임차인, 인가된 승계인 또는 인가된 전차인이 초기 임대에 설정된 임대료로 전체 입주 기간에 대해 초기 임대를 갱신할 때 적용된다.~~

~~(c) 1995년 1월 1일에 시행된 조례 또는 헌장 조항에 따라 초기 임대료가 규율되는 주택 또는 유닛의 임대료는 1999년 1월 1일까지 본 목에 따라 설정된다. 기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비웠거나, 떠났거나, 민사 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161절 (2)호에 따라 퇴거된 경우,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주거 또는 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2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직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보다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동등한 유닛에 대한 현행 시장 임대료의 70%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목에 따라 설정된 초기 임대료는 법에 따라 달리 승인된 임대료 인상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d) (1) 본 조항 또는 기타 다른 조항은 임대 유닛이 전대 대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임대료에 대한 리스 또는 임대의 명시적인 체결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어느 부분도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의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소유주와의 임대 계약서에 의거하여 주택 또는 유닛을 점유한 원래의 거주자가 영구적으로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하지 않은 합법적인 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본 조항에서 허용되는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3) 이 호는 1명 이상의 이상의 거주자가 위에 명시된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 또는 유닛의 합법적입 소유 상태로 점유하는 거주자로 남아 있거나, 또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 또는 유닛에 거주한 전차인 또는 양수인이 주택 또는 유닛에 대한 합법적입 소유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 또는 유닛의 점유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전대 또는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의 당사자이며 이후 임대를 승인한 세입자로부터 소유자가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유주가 임대를 승인하는 것은 권리 포기로 간주되거나 달리 전대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초기 임대료를 설정하는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e) 본 조항의 어느 부분도 퇴거의 근거를 규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본 조항은 주택 또는 유닛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주택 또는 유닛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7920.3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난에 의한 위반은 제외하고 심각한 건강, 안전, 화재 또는 건물 법규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당 정부 기관의 검사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2) 공실일 최소 60일 전에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3) 이전 세입자가 비워서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지적된 위반이 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60일의 기간은 소환장을 발부한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5장. 서민 주택법(Affordable Housing Act)은 1954.54절을 민법(Civil Code)에 추가함으로써 성문화되어야 한다.

5.1절. 1954.54절은 민법(Civil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954.54. (a)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는 주택 또는 주거 유닛에 대한 임대료를 설정하고 인상할 수 있는 건물주의 권리를 통제하는 지방 전세 조항,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

(b) California 법에 따라 부동산의 공정한 수익률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에서 축소되지 않는다.

6절. 자유해석주의.

이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된다.

7절. 수정 및 삭제.

California 주 헌법 II조 10절 (c)호에 의거하여, 주의회는 저널에 입력된 출결 투표를 통해 2/3의 찬성표를 얻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각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본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 본 법에 따라 주거용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복원된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법령은 유권자 다수가 승인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8절. 분리 가능성.

이 법의 조항 또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적용이 무효인 경우, 무효 조항은 법에서 무효 조항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9절. 상충되는 발의안.

이 법안과 지방 정부 기관이 주거용 임대료를 책정하는 권한을 다루는 기타 발의안이 동일한 주 전체 선거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경우,다른 법안 또는 발의안이 본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안이 다른 법안보다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안은 무효이다.

10절. 법적 방어.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이 유권자의 승인을 거쳐 이 법률의 합헌성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 지지자는 주 법원인지 연방 법원인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재판이 절소 법원에 있는지 또는 California 주 대법원이나 미국 대법원의 재량에 의한 재심사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의 합헌성에 도전하는 모든 법원의 조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변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은 California 주 법무부에 책정된 자금에 청구되며, 이러한 사항에 즉시 만족해야 한다.

11절. 발효일.

본 법률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발의안 11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2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노동법(Labor Code)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 상정되는 추가 조항은 그것이 새로운 조항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된다.

상정된 법안

1절. 7장(880절 이하)은 노동법(Labor Code) 2부 2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7장. 구급차 서비스

1조. 표제

880. 이 법안은 구급차 직원 안전 및 대비법 (Emergency Ambulance Employee Safety)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2절. 발견 및 선언

881.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California는 미국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3번째로 큰 대륙이며, 지진, 산불 및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 훈련된 구급차 구급 인력이 필요하다.

(b) California 주에서는 민간 기업이 주 응급 의료 기술자(EMT)와 구급 의료 서비스를 주 거주자의 74%에게 제공한다. 불행하게도 자연 재해, 많은 총기 사고 및 대형 사망 사고와 같은 재앙이 주 전역과 전국에서 너무 자주 발생한다. 다른 모든 응급 처치 요원과 마찬가지로 EMT 및 구급 요원과 같은 구급차 직원은 모든 유형의 위기 및 도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c) EMT 및 구급 요원과 같은 응급 구급차 직원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은 천재 지변 이외에도 총기 사고 및 대형 사망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례 보완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d) EMT 및 구급 요원과 같은 응급 구급차 직원으로 하루 24시간 동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보호하며 구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화된 인력이 필요한다. EMT 및 구급 요원과 같은 응급 구급차 직원은 종종 외상 사건을 목격한다. 고용주는 응급 구급차 직원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 EMT 및 구급 요원과 같은 응급 구급차 직원은 힘든 일을 하며 구명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비번인 경우에도 언제든지 호출되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려면 충분한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조. 목적 선언문

882. 구급차 직원 안전 및 대비법(Emergency Ambulance Employee Safety and Preparedness Act)의 목적은 EMT 및 구급 요원과 같은 응급 구급차 직원이 적절한 훈련, 식사 및 휴식 시간 및 정신 건강 혜택을 받고 절상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911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4조. 응급 구급차 직원 안전 및 대비

883. 훈련.

(a) 다른 최소 고용 자격 및 인증 외에도 모든 응급 구급차 직원은 매년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총기 사고 및 대형 사망 사고에 대한 대응.

(2) 천재 지변에 대한 대응.

(3) 응급 구급차 직원 및 환자에 대한 폭력 예방.

(b) (a)호에서 요구하는 훈련은 응급 구급차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구급차 직원은 (a)호에서 요구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시간당 정상 급여를 받아야 한다.

(c)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훈련은 연방 비상 사태 관리 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비상 사태 관리국(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또는 전국 훈련 및 교육과 (N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Division)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제공하는 과목의 내용, 범위 및 품질 면에서 대체로 유사해야 한다.

884. 정신 건강.

(a) 모든 구급차 직원은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신 건강 및 건강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신

건강 및 건강 교육을 받게 된다. 정신 건강 및 건강 교육은 응급 구급차 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정신 건강 치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일반적인 정신 건강 질환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모든 응급 구급차 직원은 직원 보조 프로그램(EAP)을 통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EAP 보험은 1년 당 최대 10건의 정신 건강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c)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구급차 직원은 장기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d) 본 조항에서 "문제"란 스트레스, 우울증, 슬픔, 상실, 관계 악화, 약물 남용, 육아 문제 및 EAP에 기술된 기타 정신 건강 상태와 같은 정신 건강 상태의 증상을 의미한다.

885. 식사 및 휴식 기간.

(a) 모든 구급차 직원은 산업 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가 달리 지정해 놓은 식사 및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다.

(b) 응급 구급차 직원은 식사 및 휴식 기간 동안 정규 시간 급여를 받아야 한다.

886. 식사 시간을 위한 인력 배치.

(a) (1) 응급 구급차 회사는 업무 교대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시간에 구급차 직원이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구급차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여러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응급 구급차 회사는 응급 구급차 직원이 본 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 교대에서 충분한 비번 간격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

(b) (a)항의 (1)호를 준수하지 않는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식사 시간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

887.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 소통.

상반되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a)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급차 직원은 각 업무 시간 전체에서 휴대용 통신 장치로 연락이 닿을 수 있어야 한다.

(b) 식사 또는 휴식 기간 중에 구급차 직원에게 연락을 취한 경우, 해당 식사 또는 휴식 기간은 근무 시간 중의 식사 및 휴식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c) 식사 또는 휴식 기간 중에 구급차 직원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식사 또는 휴식 기간은 근무 시간 중의 식사 및 휴식 기간으로 계산된다.

888.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정의가 모두 적용된다.

(a) "구급차 직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 구급차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응급 의료 기술자(EMT), 운전자, 구급 요원 또는 기타 면허 또는 인증된 구급 운송 요원이다.

(2) 응급 구급차 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

(b) (a)호 (1)항에 있는 설명을 충족하는 사람의 직업적인 고용주로서 능력을 가진 "구급차 회사"란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를 의미하며 주 또는 이에 따른 정치적 하부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다.

(c) "연락된"은 응답이 필요한 휴대용 통신 장치를 통해 메시지 또는 지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휴대형 통신 장치를 휴대할 수 있고 접속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서 "연락된" 것은 아니다.

(d) "휴대용 통신 장치"는 호출기, 라디오, 스테이션 긴급 연락함, 인터콤, 휴대 전화 또는 기타 통신 방법을 의미한다.

(e) "근무 시간"이란 구급차 직원이 지정된 시작 시간과 퇴근 시간, 식사 또는 휴식 기간을 포함하여 지정된 업무 시간을 의미한다.

889. 상반되는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887절과 888절은 기존 California 법을 선언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California 산업 법령(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타이틀 8, 11090절(산업 복지위원회(IWC) 명령 No. 9-2001) 또는 개정법, 후속법 또는 대체법이나 IWC 명령의 위반을 주장하는 2017년 10월 25일 현재 계류 중이거나 그 이후에 개시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5조. 개정

890. 입법부는 법령이 이 장과 일치하고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한다는 전제 하에, Journal에 입력된 출결 투표로 4/5의 동의를 통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이 장을 개정할 수 있다. 이 장을 개정하려는 법안은 법안이 인쇄되어 입법부 구성원에게 배포되고 입법부에서 통과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최소 12일간(영업일 기준)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되거나 법령이 될 수 없다.

2절. 자유해석주의.

이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3절. 상충되는 발의안.

(a) 구급차 직원의 근무 조건과 관련되어 이 발의안과 다른 발의안이 동일한 주 선거 투표 용지에 표시되는 경우, 다른 발의안은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의안이 더 많은 찬성 투표수를 얻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다른 발의안의 조항은 무효이다.

(b) 이 발의안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다른 상충적인 발의안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대체되고, 그러한 상충적인 발의안이 나중에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이 법안이 자체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4절. 분리 가능성.

이 법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이 법의 부분, 절, 항, 목,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이 무효화된 경우, 그 결정은 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alifornia 주 주민들은 이 법령의 일부 또는 적용이 이후에 무효로 선언될 것일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효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되지 않은 이 법령과 모든 부분, 절, 항, 목, 조항, 문장, 구절, 단어 또는 적용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한다.

5절. 법적 방어.

이 법안이 California 주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주 또는 연방 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 주지사와 법무 장관 모두가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a) 정부법(Government Code) 타이틀 2, 3부 2편 6장(12500절 이하)에 포함된 내용과 상반되는 조항이나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법무 장관은 California 주를 대신하여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을 변호할 독립적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b) 법무 장관은 독립 법률 고문을 지명하거나 이후에 대체하기 전에 독립 법률 고문의 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사를 실시하고 독립 법률 고문으로부터 이 법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을 변호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 확인서는 요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c) California 주를 대신하여 이 법안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도록 독립 법률 고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회계 연도에 관계 없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관리자(Controller)로 지속적으로 책정된다.

발의안 12

본 발의안은 California 주 헌법 II조 8절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제출된다.

본 발의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서 조항을 개정하고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제안된 조항은 ~~카로줄~~로 표시되고 새로 추가된 조항은 새로 제안된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상정된 법안

California 주 주민은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한다.

1절. 이 법은 농장 동물 학대 방지법(Prevention of Cruelty to Farm Animals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2절. 이 법안의 목적은 농장 동물에 대한 극심한 감금 방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금 방식은 California 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식인성 질환 및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재정 영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3절.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990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5990. 금지 사항. 법의 기타 관련 조항에 추가하여~~,~~*:*

(a) ~~사람~~ *주 내의 농장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농장에서* 사육 동물을 ~~거의 하루 종일 다음과 같은 행동이 불가능하도록 묶어 놓거나 감금해서~~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감금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a) 눕거, 서거, 사지 완전히 펴거~~

~~(b) 자유롭게 돌거~~

(b) 사업주 또는 운영자는 주 내에서 의도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1) 사업주 또는 운영자가 잔인한 방식으로 감금된 사육 동물의 고기로 알고 있는 완전 송아지 고기.

(2) 사업주 또는 운영자가 잔인한 방식으로 감금된 사육 동물의 고기, 또는 잔인한 방식으로 감금된 사육 동물에게서 태어난 새끼의 고기로 알고 있는 완전 돼지 고기.

(3) 사업주 또는 운영자가 잔인한 방식으로 감금된 사육 동물의 산물로 알고 있는 계란.

(4) 사업주 또는 운영자가 잔인한 방식으로 감금된 사육 동물의 산물로 알고 있는 액상란.

4절.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991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5991. 정의. 이 장에서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a) "씨돼지"란 6개월 이상이거나 임신한 상태로서 상업 육종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돼지 종의 암컷 돼지를 의미한다.

(b) "사업주 또는 운영자"는 사업의 운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c) "닭장이 없는 양계장"은 산란계를 위한 실내 또는 실외 사육 환경으로 닭이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최소한 스크래치 영역, 횃대, 둥지 박스 및 사욕 영역을 포함한 자연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 제공되며, 농장 직원이 암탉이 돌아 다니는 바닥 공간 내에 서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닭장이 없는 양계장은 본 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도까지 다음을 포함한다.

(1) 플랫폼 상하 모두에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을 제공하는 다층 플랫폼에서 암탉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다층 양계장.

(2) 분뇨가 바닥을 통해 아래의 구덩이 또는 깔짚 제거 벨트로 떨어도록 상승된 수평 플랫폼에 암탉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슬랫 시스템.

(3) 암탉이 상승된 수평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제한되고 모두 깔짚으로 덮여 있는 단층의 완전 깔개 바닥 시스템.

(4) 이 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모든 미래 시스템.

~~(a)~~*(d)* "송아지 고기용 송아지"란 송아지 고기라고 하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한 소 종의 송아지를 의미한다.

(e) "잔인한 방법으로 감금"이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동물이 눕기, 서기, 사지 완전히 펴기, 자유롭게 돌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사육 동물을 가두는 행위.

(2) 2019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43평방 피트 미만에서 송아지 고기용 송아지를 가두는 행위.

(3)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24평방 피트 미만에서 씨돼지를 가두는 행위.

(4) 2019년 12월 31일 이후, 암탉 한 마리당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144 평방 인치 미만에서 산란계 암탉을 가두는 행위.

(5) 2021년 12월 31일 이후, 미국 계란 생산사 연합 (United Egg Producers)에서 발간한 Animal Husbandry Guidelines for U.S. Egg-Laying Flocks: Guidelines for Cage-Free Housing의 2017년판에서 요구하는 암탉 한 마리당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 미만이나 닭장 없는 양계장 시스템 이외의 우리에 암탉을 가두는 행위.

~~(b)~~*(f)* "사육 동물"이란 ~~수태 상태의 돼지,~~ 송아지 고기를 위해 사육한 송아지, *씨돼지,* 또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를 의미한다.

~~(c)~~*(g)* "산란계 암탉"이란 알을 낳기 위해 사육하는 암컷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뿔닭~~ 뿔닭을 의미한다.

~~(d)~~*(h)* "우리"란 사육 동물 또는 동물을 가두기 위해 사용되는 ~~케이지, 우리 또는 기타~~ 구조물~~(돼지의 경우 "돼지 우리", 송아지의 경우 "송아지 우리", 또는 산란계 암탉의 경우 "닭장"이라고 하는 것 포함)~~을 의미한다.

~~(e)~~*(i)* "농장"이란, 살아있는 동물 시장은 포함되지 않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음식이나 섬유에 사용되는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상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지원 시설, 및 기타 장비, 연방 육류 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21 USC Sec.601 et seq.)에 따라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연방 계란 제품 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21 USC Sec.1031 et seq.)에 따라 의무 검사가 관리되는 공식 플랜트를 의미한다.

(j) "농장주 또는 운영자"는 농장의 운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f)~~*(k)* "사지를 완전히 편다"는 것은 우리의 벽 또는 다른 동물에 닿지 않고도 사지를 완전히 뻗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산란계 암탉의 경우 우리의 벽이나 다른 산란계 암탉 또는 다른 동물에 닿지 않고도 양쪽 날개를 완전히 펼 수 있음을~~ 의미한다.

(l) "액상란"이란 산란계 암탉이 낳은 계란의 껍질을 깨서 나온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음식에 사용되고 노른자와 흰자는 자연적인 비율로 되어 있거나, 노른자와 흰자가 분리, 혼합 또는 섞인 것이다. 액상란는 액상 계란에 설탕, 소금, 물, 조미료, 착색료, 향료, 방부제, 안정및 이와 유사한 식품 첨가물로 구성된 팬케이크 믹스, 케이크 믹스, 쿠키, 피자, 쿠키 반죽, 아이스크림 또는 유사한 가공 또는 조리 식품을 비롯한 혼합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g)~~*(m)* "개인"이란 개인, 회사, 편너십, 합작 투자, 협회, 유한 책임 회사, 법인, 부동산, 신탁, 수령인 또는 신디케이트를 의미한다.

~~(h) "수태한 돼지"란 번식을 주요 목적으로 사육한 수태한 돼지를 의미한다.~~*(n) "돼지 고기"는 2017년 8월 현재 California 산업 법령(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3편 900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간의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돼지 종의 돼지에서 얻은 고기를 의미한다.*

(o) "판매"란 이 장에서 다루는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나, 연방 육류 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21 USC Sec.601 et seq.)에 따라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연방 계란 제품 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21 USC Sec.1031 et seq.)에

따라 의무 검사가 관리되는 공식 플랜트에서 실행되는 판매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판매는 25990절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물리적으로 소지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p) "계란"은 껍질 형태로 암탉이 낳은 껍질 형태 달걀의 완전한 란을 의미하며 인간의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i)~~*(q)* "자유롭게 돌기"란 끈을 비롯한 어떠한 모든 방해물도 없고, 우리의 측면이나 다른 동물을 건드리지 않고 완전한 원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r) "조리되지 않은"이란 인간이 섭취하기 전에 조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s)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란 우리에 있는 동물에 제공된 바닥 면적의 총 평방 피트를 해당 우리에 있는 동물의 수로 나눈 값으로 각 사육 동물에게 제공되는 바닥 면적을 의미한다. 산란계의 경우,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은 암탉이 앉을 수 있는 지상 공간과 상승된 수평 플랫폼을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횃대 또는 경사로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t) "송아지 고기"란 2017년 8월 현재 California 산업 법령(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3편 900절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간의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송아지로 사육한 송아지의 고기를 의미한다.

(u) "완전 돼지 고기"는 베이컨, 햄, 촙, 갈비, 갈빗대 끝살, 허릿살, 정강이 살, 다릿살, 로스트, 양지머리, 스테이크, 등심, 또는 커틀릿을 포함하여 조미료, 경화제, 착색제, 향신료, 방부 및 이와 유사한 육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돼지 고기로만 구성된 조리되지 않은 모든 돼지 고기살을 의미한다. 완전 돼지 고기는 돼지 고기 이외에 조미료, 경화제, 착색료, 향신료, 방부제 및 이와 유사한 육류 첨가제로 구성된 스프, 샌드위치, 피자, 핫도그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 식품이나 조리된 식품을 포함한 혼합 식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v) "완전 송아지 고기"는 촙, 갈비, 갈빗대 끝살, 허릿살, 정강이 살, 다릿살, 로스트, 양지머리, 스테이크, 등심, 또는 커틀릿을 포함하여 조미료, 경화제, 착색제, 향신료, 방부 및 이와 유사한 육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송아지 고기로만 구성된 조리되지 않은 모든 송아지 고기살을 의미한다. 완전 송아지 고기는 송아지 고기 이외에 조미료, 경화제, 착색료, 향신료, 방부제 및 이와 유사한 육류 첨가제로 구성된 스프, 샌드위치, 피자, 핫도그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 식품이나 조리된 식품을 포함한 혼합 식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5절.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992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5992. 예외. 이 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a) ~~과학 또는 농업~~ *의학*연구 중.

(b) 수의학적 목적상 검사, 테스트, 개별 치료 또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c) 운송 중.

(d) 로데오 박람회, 주 또는 카운티 박람회, 4-H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박람회 중.

(e) 인간이 시행하는 도살 방법에 관한 식품 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9목 3부 6장(19501절 이하)의 규정, 또는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사육 동물을 도살하는 동안.

(f) 씨돼지의 예상 출산일 전 ~~7~~일 5일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씨돼지가 새끼에게 수유하는 날에 씨돼지에 대해.

(g) 가축 사육을 위한 일시적인 기간으로 24시간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30일에 총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6절.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25993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5993. 시행. *(a) 식품 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와 주 보건 서비스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는 2019년 9월 1일까지 본 법 시행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공동 제정하여 공포한다.*

(b) 이 장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시 1,000 달러($1,000) 이하의 또는 180일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이러한 벌금형 및 징역형에 모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5990절 (b)호을 위반하는 행위는 사업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200절에 정의된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되며, 사업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7부 2편 5장 (17200절 이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c) 사육 동물의 잔혹한 감금 및 제품 판매에 관한 본 조항은 California 산업 법령(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타이틀 22편, 2부 6호의 6장(40601절 이하)에 있는 상충되는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상충되는 규정보다 우선한다.

7절. 25993.1절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5993.1. 해당되는 완전 송아지 고기, 완전 돼지 고기, 계란 또는 액상란이 잔혹한 방법으로 감금된 사육 동물로부터 얻어지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감금된 씨돼지의 새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공급자의 서면 인증서를 사업주 또는 운영자가 성실히 신뢰한 경우에는 25990절 (b)호를 시행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방어권이 된다.

8절. 이 법은 주의회 양당 구성원의 4/5 찬성으로 승인된 법령에 의해서만 개정된다. 이 법에 대한 개정은 이 법안의 목적과 일관되고 그 목적을 증진해야 한다.

9절. 이 법의 조항 또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적용이 무효이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이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법에서 무효이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 적용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귀하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나의 유권자 등록 상태

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s)의 나의 유권자 등록 상태 페이지 ***VoterStatus.sos.ca.gov***에서 귀하의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 및 투표 장소나 투표 센터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유권자 등록 상태 페이지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유권자 등록 여부 확인하기, 이미 등록이 된 경우 관할 카운티 확인하기
- 나의 선호 정당 확인하기
- 투표 장소 찾기
- 투표 센터 찾기 (Madera, Napa, Nevada, Sacramento, 및 San Mateo 카운티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해당)
- 나의 지역에서 다가오는 선거 찾아보기
- 각 주 전역의 선거 전에 이메일로 주 유권자 정보 안내(VIG) 받기
- 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연락처 찾기
- 나의 우편 투표 또는 잠정적 투표 상태 확인하기

선거일에 관한 정보

투표 장소 및 투표 센터는 11월 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오후 8시 이전에 줄을 서시면 당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투표 장소 또는 투표 센터 찾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우편으로 보내드린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온라인으로 *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 또는 *VoterStatus.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GOVOTE (468683)로*Vote*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Vote California" 모바일 앱(iOS 또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이용 가능)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어떤 위원회(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지출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투표 법안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며 최소 $1,000,000를 모으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상위 기부자 10인을 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FPPC)에 보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상위 기부자 10인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상위 10

해당 목록은 FPPC 웹사이트 *http://www.fppc.ca.gov/transparency/top-contributors.html*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재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성함,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셨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고자 하시면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국무 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 으로 전화하시면 우편으로 등록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은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 및 자치주 정부 기관, 카운티 선거 사무소 및 California 국무 장관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권자 등록

등록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선거일 14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 사무실이나 투표 센터를 방문하여 조건부 투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조건부 유권자 등록 (Conditional Voter Registration, CVR)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센터를 방문하십시오—카운티 연락처 전체 목록은 *http://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county-elections-offic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유권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시거나 *RegisterToVote.ca.gov*에서 온라인 등록하십시오
3.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 또는 투표 센터에서 CVR 잠정적 투표를 하십시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등록 진술서를 처리한 후, 귀하가 등록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귀하의 정보를 인증하면 등록이 확정되어 귀하의 CVR 잠정적 투표가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sos.ca.gov/elections/voter-registration/conditional-voter-reg/*를 방문하십시오

투표 센터는 Madera, Napa, Nevada, Sacramento, 및 San Mateo 자치주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법 및 투표 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VotersChoice.sos.ca.gov*를 방문하시거나 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Safe at Home 비밀보호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특정 유권자들은 비밀보호 유권자 신분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무 장관의 Safe at Home 비밀보호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시거나 *www.sos.ca.gov/registries/safe-home/*을 방문하십시오.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정보는 선거 관리 공무원이 귀하께 투표 장소 위치, 투표 용지에 기재될 사안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같이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국무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상정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차원의 목적을 위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 상에 기재된 귀하의 운전면허 번호, 신원 번호 또는 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권자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국무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575-1558 으로 전화하십시오.

CALIFORNIA
VOTER'S CHOICE ACT

California 투표의 미래

2018년부터 Madera, Napa, Nevada, Sacramento, 및 San Mateo 카운티의 모든 등록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참여 카운티의 유권자는 세 가지 투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투표 용지를 받으시는 대로 작성한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드롭 박스: 투표 용지를 받으시는 대로 작성한 투표 용지를 카운티 드롭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드롭 박스 이용 시 우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표 센터: 투표 센터가 투표소를 대체하게 됩니다. 관할 자치주의 어느 투표 센터에서든지 직접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11일 간 운영됩니다.

모든 투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

- 직접 투표
- 투표 등록 또는 등록 갱신
- 작성한 투표 용지 제출
- 다른 투표 용지 수령
- 편의용 투표 기계를 이용한 투표
- 여러 언어로 도움을 받거나 여러 언어로 된 투표 관련 자료 수령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California 유권자 선택법은 투표를 더욱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2016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 방법, 투표 일시 또는 투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는 선거일로부터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관할 카운티의 드롭 박스에 넣거나 투표 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유권자의 직접 선거를 위해 선거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11일 간 운영됩니다.

드롭 박스나 투표 센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VotersChoice.sos.ca.gov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카운티의 투표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카운티 선거 관리 직원에게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본인이 참여 카운티에 속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유권자 선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경우, 작성된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 국무 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http://voterguide.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인쇄본으로 받기 원하시면,

- **주 국무장관 앞으로 이메일(*vigfeedback@sos.ca.gov*)로 문의하십시오.**
- **주 국무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문의하십시오.**

장애인 투표자를 위한 지원

해당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카운티의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해당 투표 장소가 장애인 투표자도 접근 가능한 곳이라면 휠체어 기호가 표시됩니다.

음성 또는 큰 활자체 버전 유권자 정보 안내서

본 안내서는 영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되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

- 주 국무장관의 유권자 무료 핫라인 (866) 575-1558으로 문의하십시오.
- *http://voterguide.sos.ca.gov/audio/ko*에서 MP3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하십시오.
- *http://voterguide.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주 선거 결과 웹사이트

2018년 11월 6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California 주 국무장관의 선거 결과 웹사이트 ***https://vote.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카운티에서 주 국무 장관에게 보고되는 결과대로 선거일 밤, 매 5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오후 8시 선거 마감 후 반공식 선거 결과를 국무 장관 웹사이트로 내보내고 모든 선거일 투표 결과가 산출될 때까지 최소 2시간마다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2018 년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선거 결과 웹사이트는 매일 오후 5시까지 업데이트되며, 각 카운티는 나머지 투표 결과를 계산합니다.

선거의 공식 결과는 2018년 12월 14일까지 *www.sos.ca.gov/elections/*에 게시됩니다

중요한 일자를 기억하세요!

★ ★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8년 10월 8일
우편 투표 시작일

2018년 10월 22일
투표 등록 마감일.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는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용지 신청을 수락하는 마지막 날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8년 11월 6일
선거일!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Elections Division
1500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NONPROFIT
U.S. POSTAGE
PAID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OFFICIAL ELECTION MAIL
Authorized by the U.S. Postal Service

CALIFORNIA

총선거

귀하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voterstatus.sos.ca.gov*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상정된 법안 내용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꼭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10월 8일
우편 투표 시작일

10월 22일*
투표 등록 마감일

10월 30일
자치주 선거 관리 공무원이
유권자의 우편 투표 신청을 수락하는 마지막 날

아래의 언어로 된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English: (800) 345-VOTE (8683)
TTY/TDD: (800) 833-8683
Español/Spanish: (800) 232-VOTA (8682)
中文**/Chinese:** (800) 339-2857
हिन्दी**/Hindi:** (888) 345-2692
日本語**/Japanese:** (800) 339-2865
ខ្មែរ**/Khmer:** (888) 345-4917
한국어**/Korean:** (866) 575-1558
Tagalog: (800) 339-2957
ภาษาไทย**/Thai:** (855) 345-3933
Việt ngữ**/Vietnamese:** (800) 339-8163

GOVOTE(468683)로 *Vote*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귀하의 투표 장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15일 간의 유권자 등록일 마감 후에는 "조건부로" 등록하시고 귀하의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입법부에서는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투표하는 가정 당 1권만 보내고 상정된 법안 내용 사본은 요청 시 제공하도록 주 및 카운티에 인가하였습니다. 추가 사본은 귀하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KOREAN

OSP 18 145828